

근로 소득 세액공제 (EIC)

2024 세금 신고서 작성에 사용



목차

2024년의 새로운 정보	3
알림	3
챕터 1.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칙	4
규칙 1-조정총소득 (AGI) 한도	4
규칙 2-유효한 사회 보장 번호 (SSN)가 있어야 합니다	4
규칙 3-배우자와 별거했고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특정 규칙에 반드시 부합해야 합니다	5
규칙 4-연중 미국 시민 또는 거주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5
규칙 5-양식 2555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규칙 6-투자 소득이 반드시 \$11,600 이하여야 합니다	5
규칙 7- 반드시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7
챕터 2. 적격 자녀가 있는 경우의 규칙	8
규칙 8- 귀하의 자녀는 반드시 관계, 연령, 거주 및 공동 신고서 테스트를 충족해야 합니다	9
규칙 9- 귀하의 적격 자녀를 두 명 이상의 사람이 EIC 청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11
규칙 10-귀하는 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13
챕터 3. 적격 자녀가 없는 경우의 규칙	14
규칙 11- 나이 요건에 반드시 부합해야 합니다	14
규칙 12- 귀하를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14
규칙 13-귀하는 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15
규칙 14- 1년 중 절반 이상 미국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16
챕터 4. EIC 산정 및 청구	16
규칙 15-근로 소득 한도	16
IRS가 귀하를 위해 EIC를 산정해줄 것입니다	17
EIC를 본인이 직접 산정하는 방법	17
챕터 5. EIC 불허	17
챕터 6. 상세한 예시	19
EIC 적격성 점검표	20
세금 관련 도움을 얻는 방법	19
2024 EIC표	24
색인	35

향후 진전 사항

간행물 출판 이후에 제정된 법률을 비롯한 이 간행물 596의 진전 사항에 관한 최신 정보는 [IRS.gov/Pub596](https://www.irs.gov/Pub596)을 참고하십시오.

EIC란 무엇입니까?

EIC는 근로 소득이 \$66,819 미만인 특정 사람들을 위한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귀하가 더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EIC는 또한 귀하에게 환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EIC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정 규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규칙은 표 1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표 1. 근로 소득 세액공제 요약

먼저 이 열에 있는 모든 규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둘째, 아래 중 한 열의 모든 규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셋째, 이 열의 규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1장.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칙		2장. 적격 자녀가 있는 경우의 규칙	3장. 적격 자녀가 없는 경우의 규칙	4장. EIC 산정 및 청구하기
1. 귀하의 조정총소득 (AGI)은 다음보다 적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한 사회 보장 번호 (SSN)를 보유한 적격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9,899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66,819), •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2명인 경우 \$55,768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62,688), •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한 명인 경우 \$49,084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56,004) 또는 •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없는 경우 \$18,591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25,511). 	2. 2024년 신고 기한 (연장일 포함)까지 유효한 SSN이 있어야 합니다. 3. 귀하의 배우자와 별거 중이며 공동 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연중 미국 시민 또는 거주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5. 양식 2555 (해외 근로 소득 관련)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귀하의 투자 소득은 \$11,600 이하여야 합니다. 7. 반드시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8. 귀하의 자녀는 자녀와의 관계, 연령, 거주 및 공동 신고서 테스트를 충족해야 합니다. 9.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귀하의 적격 자녀를 EIC 청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 귀하는 다른 사람의 적격 자녀일 수 없습니다.	11. 연령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2. 귀하는 다른 사람의 부양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13. 귀하는 다른 사람의 적격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14. 반드시 1년 중 절반 이상 미국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15. 귀하의 근로 소득은 다음보다 낮아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9,899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66,819), •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2명인 경우 \$55,768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62,688), •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한 명인 경우 \$49,084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56,004) 또는 •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없는 경우 \$18,591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25,511).

이 간행물이 필요합니까?

양식 1040 또는 1040-SR을 제출하는 특정 사용자는 EIC를 적격 여부를 확인할 때 양식 1040 지침의 2단계 대신 이 간행물의 작업표 1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 중 2024년도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작업표 1을 사용해야 합니다.

- 스케줄 E (양식 1040)를 제출함.
- 거래 또는 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개인 자산의 대여로 인한 소득을 신고함.
- 양식 8814 (자녀의 이자 및 배당금 신고에 대한 선택과 관련된)의 스케줄 1 (양식 1040) 라인 8z에 소득을 신고함.
- 피동적 활동에 대한 소득 또는 손실이 있음.
- 양식 4797의 금액이 포함된 양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7에 금액을 신고함.

위의 설명 중 어느 것도 귀하에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귀하의 세금 양식의 지침에 EIC를 청구하고 EIC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간행물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간행물을 통해 EIC 적격 여부와 EIC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EIC에 적격하려면 자녀가 있어야 합니까?

아니요. 최소 만 2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이며 근로 소득이 \$18,591 미만이라면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25,511) 적격 자녀 없이 EIC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3장](#)을 보십시오.

EIC 금액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EIC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IRS가 세액공제를 산정하도록 하거나 본인이 직접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산정하려면 제출하는 양식에 대한 지침에 따라 작업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IRS가 산정하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4장](#)을 보십시오.

특정 정보를 신속하게 찾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색인을 사용하여 특정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색인 줄은 제목, 표 또는 작업표를 가리킵니다.

온라인에 도움말이 있습니까?

네.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IRS.gov/EITC](https://www.irs.gov/EITC)에서 EITC 자격 도우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ITC 자격 도우미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의 새로운 정보

근로 소득 액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소득의 한도가 증가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3명 이상이고 \$59,899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66,819) 미만의 소득을 벌었을 경우.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2명이고 \$55,768(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62,688) 미만의 소득을 벌었을 경우.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한 명이고 \$49,084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56,004) 미만의 소득을 벌었을 경우.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없으며 \$18,591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25,511) 미만의 소득을 벌었을 경우.

귀하의 AGI 또한 위에 나열된 해당 금액보다 반드시 낮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칙 1](#) 및 [15](#)를 참고하십시오.

투자 소득 금액. 귀하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최대 투자 소득 금액은 \$11,600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칙 6-투자 소득이 반드시 \\$11,600 이하여야 합니다](#)를 참고하십시오.

알림

단독 EIC. 귀하의 적격 자녀가 타이브레이커 규칙에 따라 2024년에 다른 사람의 적격 자녀로 취급되는 경우, 3장에 나오는 적격 자녀가 없는 납세자에 대한 규칙을 사용하면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격 자녀가 있다면 스케줄 EIC (양식 1040) 를 제출하십시오. EIC 청구 목적의 조건을 갖춘 한명 이상의 적격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가 유효한 SSN이 없더라도, 스케줄 EIC를 작성하여 양식 1040 또는 1040-SR에 첨부하십시오. 적격 자녀가 유효한 SSN이 없을 경우 스케줄 EIC를 작성하는 방법을 비롯한 더 자세한 정보는 스케줄 EIC를 참고하십시오.

특정 공동 신고서에 대한 증가된 EIC.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혼자는 소득은 같지만 납세자 구분이 다른 사람보다 EIC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부부 공동 신고하는 경우는 다른 사람들과 EIC 표에서 사용하는 열이 다릅니다. EIC 표에서 귀하의 EIC를 찾을 때, 본인에게 해당하는 납세자 구분 및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 수에 맞는 올바른 열을 사용해야 합니다.

별거하는 부부. 기혼이지만 공동 신고를 하지 않는더라도 EIC를 청구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칙 3-배](#)

[우자와 별거했고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특정 규칙에 반드시 부합해야 합니다](#),를 참고하십시오.

EIC는 특정 복지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방 프로그램 또는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연방 기금을 조달한 주/지방 프로그램에 따라 귀하 또는 다른 사람의 혜택이나 지원 적격 여부 또는 지원 금액을 결정할 때, EIC로 인해 받는 모든 환급은 소득으로 계산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빈곤 가정 임시 지원 (TANF).
- 메디케이드.
- 보충적 사회 보장 수당 (SSI).
-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푸드 스탬프).
- 저소득층 주택.

또한, 자격 여부를 판단할 때, 환급금은 이를 수령한 후 최소 12개월 동안은 자산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환급이 추후 각종 다른 혜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려면 현지 혜택 지급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메디케이드 포기 지급금. EIC 목적 상 메디케이드 포기 지급금이 처리되는 방식이 변경에 대한 내용은 [근로 소득](#)을 참고하십시오.

주 세액공제를 간과하지 마십시오. 연방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EIC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주 또는 지방 소득 신고에서도 이와 유사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 EIC를 제공하는 주 목록은 [IRS.gov/EITC](https://www.irs.gov/EITC)를 참고하십시오.

IRS가 의문을 제기한 EIC. IRS는 EIC 청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하도록 귀하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서를 보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출생증명서, 학교 기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간행물 596의 스페인어 버전. 간행물 596(SP) Crédito por Ingreso del Trabajo는 스페인어로 번역된 간행물 596입니다. [IRS.gov/Pub596SP\(영어\)](https://www.irs.gov/Pub596SP(영어))를 참고하십시오. 또는 [양식 및 간행물 주문](#)이나 [세금 관련 도움을 받는 방법](#)을 추후에 참조하여 이 양식 및 기타 IRS 양식 및 간행물을 주문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실종 아동 사진. IRS는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NCMEC\)\(영어\)](https://www.nccmec.org/) (국립 실종 및 학대 아동 센터)와 협력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센터에서 선택한 실종 아동의 사진은 이 간행물의 비어 있는 페이지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고 아동을 알아보는 경우 800-THE-LOST (800-843-5678)로 전화하여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의견 및 제안. 이 간행물에 대한 의견과 향후 버전에 대한 제안을 환영합니다.

[IRS.gov/FormComments\(영어\)](https://www.irs.gov/FormComments(영어))를 통해 의견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는 IRS 세금 양식 및 간행물 부서에 서신을 보낼 수 있습니다. 주소: 1111 Constitution Ave. NW, IR-6526, Washington, DC 20224.

접수된 각 의견에 개별적으로 응답할 수는 없지만, 귀하의 의견과 제안에 감사드리며 세금 양식, 지침 및 간행물을 수정 시 귀하의 의견을 검토할 것입니다. 위의 주소로 세금 질문, 세금 신고서 또는 납부금을 보내지 마십시오.

세금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받기. 이 간행물 또는 이 간행물 끝부분의 [세금 관련 도움 얻는 방법](#) 섹션에서 세금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경우, IRS 인터랙티브 세금 도우미 페이지 [IRS.gov/Help/ITA\(영어\)](https://www.irs.gov/Help/ITA(영어))에서 검색 기능을 사용하거나 나열된 카테고리를 보고 주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금 양식, 지침 및 간행물 받기. [IRS.gov/Forms\(영어\)](https://www.irs.gov/forms/eng)로 이동하여 최신 및 이전 연도 양식, 지침, 간행물을 다운로드합니다.

세금 양식, 지침, 간행물 주문하기. [IRS.gov/OrderForms](https://www.irs.gov/orderforms)로 이동하여 최신 양식, 지침 및 간행물을 주문합니다. 이전 연도의 양식 및 지침을 주문하려면 800-829-3676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IRS는 최대한 신속하게 양식 및 간행물의 주문을 처리할 것입니다. 이미 전송된 요청을 다시 제출하지 **마십시오**. 온라인에서 더 빠르게 양식 및 간행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칙

이 장에서는 규칙 1에서 7에 대해 다룹니다. EIC를 받으려면 7가지 규칙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7가지 규칙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나머지 간행물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장의 7가지 규칙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장 또는 3장 (해당 사항)을 읽어 더 많은 규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규칙 1-조정총소득 (AGI) 한도

귀하의 조정총소득 (AGI)은 다음보다 낮아야 합니다.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59,899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66,819),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55,768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62,688),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한 명일 경우, \$49,084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56,004),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없을 경우, \$18,591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25,511).

조정총소득 (AGI). AGI는 양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11의 금액입니다.

AGI가 위에 나열된 해당 한도 이상이면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간행물의 나머지 부분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시-AGI가 한도를 초과함. 귀하의 AGI는 \$53,000이며, 미혼이고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AGI가 \$49,084 이상이기 때문에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납세자 구분이 부부 공동 신고이고 AGI가 \$56,004 미만이면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 재산. 기혼이지만 별거 중인 기혼 납세자에 대한 특별 규칙에 따라 세대주 또는 부부 개별 신고로서 제출할 자격이 있으며 ([규칙 3](#) 참조), 부부 공동 재산법이 있는 주에서 거주하는 경우, 총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 귀하와 배우자의 임금이 모두 AGI에 포함됩니다. 이는 아래 [규칙 7](#)에 적용되는 부부 공동 재산 규칙과는 다릅니다.

규칙 2-유효한 사회 보장 번호 (SSN)가 있어야 합니다

EIC를 청구하려면, 귀하 (및 귀하의 배우자,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2024년 신고서 마감일 (연장일 포함)까지 사회 보장국 (SSA)에서 발급한 유효한 SSN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적격 자녀가 신고서 마감일 (연장일 포함)까지 반드시 유효한 SSN이 있어야 귀하가 이 자녀를 통해 보다 높은 EIC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IC 청구 목적의 조건을 갖춘 한명 이상의 적격 자녀가 있지만, 이 자녀가 2024년 세금 신고서 마감일 (연장일 포함)까지 유효한 SSN이 없더라도, EIC 대한 자격이 있다면 단독 EIC를 청구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격 자녀가 세금 신고서 마감일까지 유효한 SSN이 없을 경우 스케줄 EIC를 작성하는 방법을 보려면 스케줄 EIC를 참고하십시오.

SSN이 2024년 신고서 마감일 (연장일 포함)이후에 발급되었거나, 오직 연방 지원 혜택을 신청 또는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발급되었거나, 취업에 유효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곤 SSN은 유효합니다. 연방에서 지원하는 혜택의 예는 메디케이드입니다.

TIP *귀하, 배우자 또는 자녀가 “Not valid for employment” (고용에 유효하지 않음)가 인쇄된 사회 보장 카드를 갖고있으며, 귀하, 배우자 또는 자녀의 이민 신분이 현재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변경됐을 경우, 이 기호가 없는 사회 보장 카드를 SSA에 요청하십시오.*

미국 시민권자. SSN을 발급받을 당시 미국 시민권자였다면 유효한 SSN이 있는 것입니다.

INS의 승인 또는 DHS의 승인을 받은 취업에만 유효합니다. 사회 보장 카드에 “Valid for work only with INS authorization” (INS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취업에 유효) 또는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DHS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취업에 유효)하다고 쓰여 있는 경우, 유효한 SSN이 있지만, 그 승인이 유효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SSN.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의 SSN이 세금 신고서에서 누락되었거나 부정확한 경우, EIC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가 2024년 신고서 마감일 (연장 포함) 또는 그 이전에 유효한 SSN이 없었고, 나중에 유효한 SSN이 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서에 누락된 경우, 귀하는 EIC를 청구하기 위한 수정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나 배우자가 EIC에 유효하지 않은 SSN을 발급받았으나 2024년 신고서 마감일 (연장 포함)전에 귀하나 배우자가 “Not valid for employment” (고용에 유효하지 않음) 이 인쇄되지 않은 사회 보장 카드에 적격하다면, 2024년 신고서 마감일 (연장 포함) 전까지 사회 보장 카드가 업데이트되지 않았더라도 원본 또는 수정된 2024년 신고서에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납세자 식별 번호. SSN이 아닌 본인 (또는 배우자,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ITIN)가 있으면 EIC를 받을 수 없습니다. ITIN은 IRS에서 SSN을 발급 받을 수 없는 비시민권자에게 발급됩니다.

SSN 없음. 2024년 신고서 마감일 (연장일 포함) 또는 그 이전에 유효한 SSN이 없는 경우, 라인 27 (양식 1040 또는

1040-SR) 옆의 점선에 'No'를 입력하십시오. 기존 또는 수정된 2024년 신고서에서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SSN 받기. 귀하 (또는 배우자,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게 SSN이 없는 경우, SSA에 양식 SS-5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식 SS-5를 온라인 [SSA.gov/forms/ss-5.pdf\(영어\)](https://ssa.gov/forms/ss-5.pdf), 해당 지역의 SSA 사무소에서, 또는 SSA에 800-772-1213로 전화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마감일 다가왔는데도 여전히 SSN이 없는 경우. 제출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SSN이 아직 없는 경우, 신고서 마감일에 대한 자동 6개월 연장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연장은 양식 4868,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간 자동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식 4868의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양식 4868을 제출하는 대신, 신고서 마감일까지 전자 결제로 자동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규칙 3-배우자와 별거했고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특정 규칙에 반드시 부합해야 합니다

기혼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EIC 청구를 위해 반드시 공동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별거하는 부부에 대한 특별 규칙이 존재합니다.

별거한 부부에 대한 특별 규칙. 기혼이지만 공동 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2024년에 적격 자녀와 반년 이상을 함께 살았고 아래의 보기 중 하나라도 적용이 된다면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24년의 마지막 6개월을 배우자와 별거했음, 혹은
- 서면 별거 합의 또는 별거 유지령에 의해 주법상으로 법적 별거 중이며 2024년 말에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음.

이 요건들에 부합하다면 스케줄 EIC (양식 1040) 맨위에 있는 박스에 체크 표시를 하십시오.



귀하의 적격 자녀(들)를 명단에 올리려면 스케줄 EIC를 작성하고 귀하의 신고서에 첨부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EIC 청구 목적의 적격 자녀 조건을 갖춘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가 유효한 SSN이 없더라도 단독 EIC를 청구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규칙 4—연중 미국 시민 또는 거주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연중 일정 기간 동안 비거주 외국인였던 경우, 납세자 구분이 부부 공동 신고가 아니라면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 외국인이고 미국 거주자로 간주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만 해당 납세자 구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 선택을 하는 경우, 귀하와 배우자의 전 세계 소득이 과세됩니다. 이 선택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간행물 519를 참고하십시오. 귀하가 연중 일정 기간 동안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그리고 납세자 구분이 부부 공동 신고가 아닐 경우 “No”를 라인 27 (양식 1040 또는 1040-SR) 옆의 점선에 입력하십시오. 양식 1040 지침에 있는 *비거주 외국인 및 이중 신분 외국인*에서 전체 과세 연도 동안 비거주 또는 이중 신분 외국인 배우자를 미국 거주자로 취급하기로 하는 선택을 포함한 자세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규칙 5—양식 2555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양식 2555, '해외 근로 소득'을 제출하면 근로 소득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양식을 제출하여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총소득에서 제외하거나 외국 주택 비용을 공제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토는 외국이 아닙니다. 추후에, 간행물 54에서 자세한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규칙 6-투자 소득이 반드시 \$11,600 이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투자 소득이 \$11,600 이하여야만 근로 소득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 소득이 \$11,600를 초과하는 경우 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장에서 작업표 1을 사용하여 투자 소득을 산정하십시오.

양식 1040 또는 1040-SR을 제출할 때 이 작업표를 사용하여 EIC에 대한 투자 소득을 산정하십시오.

이자 및 배당금	
1. 양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2b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1. _____
2. 양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2a의 모든 금액과 양식 8814, 라인 1b의 모든 금액을 모두 입력합니다	2. _____
3. 양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3b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3. _____
4. 신고서에 자녀의 이자 및 배당금 소득을 신고하기 위해 해당 양식을 제출하는 경우 스케라인 1 (양식 1040), 양식 8814, 라인 8z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자녀가 알래스카 영구 기금 배당금을 받은 경우, 이 장에서 작업표 2를 사용하여 이 라인에 입력할 금액을 산정합니다.)	4. _____
자본 이득 당기순이익	
5. 양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7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 라인의 금액이 손실이면 -0-을 입력합니다	5. _____
6. 양식 4797, '사업 자산 매각' 라인 7의 이득을 입력합니다. 그 라인의 금액이 손실이면 -0-을 입력합니다. (단, 양식 4797의 라인 8과 라인 9를 완료한 경우, 라인 9의 금액을 대신 입력합니다.)	6. _____
7. 이 작업표의 라인 5에서 이 작업표의 라인 6을 차감합니다. (결과가 0보다 작으면 -0-을 입력합니다.)	7. _____
개인 자산의 로열티 및 임대 소득	
8. 스케줄 E (양식 1040), 라인 23b의 로열티 소득과 스케줄 1 (양식 1040) 라인 8i에 표시된 개인 자산의 임대 소득을 모두 입력합니다	8. _____
9. 스케줄 E (양식 1040), 라인 20으로부터 로열티 소득 관련 지출과 스케라인 1 (양식 1040) 라인 24b에 공제된 개인 자산의 임대 지출을 모두 입력합니다	9. _____
10. 이 작업표 라인 9의 금액에서 라인 8 금액을 차감합니다. (결과가 0보다 작으면 -0-을 입력합니다.)	10. _____
피동 활동	
11. 피동 활동 (예: 스케줄 E, 라인 26, 29a ((h)열), 34A ((d)열) 또는 라인 40에 포함된 소득, 또는 양식 4797, 라인 10의 "FPA"로 식별되는 일반적인 이득)의 당기순이익을 입력합니다. (라인 11 및 12에 대한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11. _____
12. 피동 활동 (예: 스케줄 E, 라인 26, 29b ((g)열), 34b ((c)열) 또는 라인 40에 포함된 손실, 또는 양식 4797, 라인 10의 "PAL"로 식별되는 손실)의 손실을 입력합니다. (라인 11 및 12에 대한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12. _____
13. 이 작업표의 라인 11 및 12에 있는 금액을 합합니다. (결과가 0보다 작으면 -0-을 입력합니다.)	13. _____
14. 라인 1, 2, 3, 4, 7, 10 및 13에 금액을 추가합니다. 합계를 입력합니다. 이것이 귀하의 투자 소득입니다	14. _____
15. 라인 14의 금액이 \$11,600보다 큼니까? <input type="checkbox"/> 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라인 27에 대한 양식 1040 지침 3단계를 이동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간행물을 사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규칙 7로 이동합니다).	
라인 11 및 12에 대한 설명. 라인 11 및 12에 입력할 금액을 계산할 때, 스케줄 E의 라인 26에 포함된 로열티 수입 (또는 손실) 또는 근로 소득에 포함된 소득 (또는 손실) 또는 이 작업표의 라인 1, 2, 3, 4, 7 또는 10에 포함된 소득 (또는 손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스케줄 E의 라인 26 또는 라인 40의 소득이 피동 활동에서 비롯됐는지 알아보려면 스케줄 E의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스케줄 E, 라인 26에 포함된 임대 부동산 소득 (또는 손실) 중 수동적인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경우, "NPA"를 입력하고 그 소득 (또는 손실) 금액을 라인 26 옆의 점선에 기입하십시오.	

양식 8814에 알래스카 영구 기금 배당금이 포함된 경우에만 이 작업표를 작성합니다.

참고. 각 양식 8814에 대해 별도의 작업표 2를 작성합니다.		
1.	양식 8814, 라인 2a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1. _____
2.	양식 8814, 라인 2b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2. _____
3.	라인 1에서 라인 2를 차감합니다	3. _____
4.	양식 8814, 라인 1a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4. _____
5.	라인 3과 4를 추가합니다	5. _____
6.	자녀의 알래스카 영구 기금 배당금 금액을 입력합니다	6. _____
7.	라인 6을 라인 5로 나눕니다. 결과를 소수점으로 입력합니다 (최소 세 자리 반올림)	7. _____
8.	양식 8814, 라인 12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8. _____
9.	라인 7과 라인 8을 곱합니다	9. _____
10.	라인 8에서 라인 9를 차감합니다. 작업표 1의 라인 4에 결과를 입력합니다	10. _____
(양식 8814를 두 개 이상 제출하는 경우, 작업표 1의 라인 4에 모든 작업표 2의 라인 10에 있는 금액의 총합을 입력합니다.)		

규칙 7— 반드시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일을 하고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액공제는 “근로 소득” 세액공제라고 불립니다. 기혼자며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배우자 중 한 명 이상이 일하고 소득이 있는 경우 이 규칙을 충족합니다. 귀하가 직원인 경우, 근로 소득에는 고용주로부터 받는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이 포함됩니다.

규칙 15에 근로 소득 금액을 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가 자영업자이거나 법정 직원인 경우, EIC 작업표 B 양식 1040의 지침에서 귀하의 근로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

근로 소득에는 다음 모든 유형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 임금, 급여, 팁 및 기타 과세 대상 직원 급여. 직원 급여는 과세 대상인 경우에만 근로 소득입니다. 특정 부양 가족 보육 혜택 및 입양 혜택과 같은 비과세 직원 급여는 소득이 아닙니다. 하지만 비과세 전투 수당을 근로 소득에 포함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며, 이에 대해선 이 장의 후반부에서 설명할 것입니다.
- 자영업 순이익.
- 법정 직원으로써 받은 총소득.

임금, 급여, 양식(들) W-2 박스 1에 신고된 팁. 일을 해서 받은 임금, 급여, 팁은 양식 W-2의 박스 1에 신고됩니다. 양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1a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종류의 근로 소득 양식 W-2 박스1에 신고되지 않은 다른 종류에 소득에는 가사 노동자 소득, 고용주에게 신고되지 않은 팁 소득, 비과세 지급금을 EIC 청구 목적상 근로 소득에 포함하기로 선택했을 경우 특정 메디케이드 포기 지급금, 과세 대상 부양 가족 케어 혜택, 양식 8839에서의 고용주 제공 입양 혜택, 양식 8919에서의 급여 및 다른 근로 소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들을 양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1b에서 1h에 신고하십시오.

비과세 전투 수당 선택. EIC에 대한 근로 소득에 비과세 전투 수당을 포함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전투 수당 금액은 양식 W-2의 박스 12에 코드 Q와 함께 표시되어야 합니다. 근로 소득에 비과세 전투 수당을 포함하도록 선택하면 EIC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장에서 [비과세 전투 수당](#)을 참고하십시오.

자영업 순이익. 다음과 같은 경우 자영업 순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자신의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거나,
- 귀하는 목사 또는 종교 교단 구성원일 경우.

목사 주택. 목사 급여의 일부로 목사에게 제공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임대료는 일반적으로 소득세의 대상이 아니지만 자영업의 순이익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EIC의 근로 소득에 포함됩니다 (단, 추후의 [승인된 양식 4361 또는 양식 4029](#)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

법정 직원. 귀하가 법정 직원 박스 (박스 13)가 체크된 양식 W-2를 받았다면 귀하는 “법정 직원”입니다. 귀하는 스케줄 C (양식 1040)에 법정 직원으로서 소득과 비용을 신고하십시오.

파업 및 폐쇄 혜택. 현금 및 다른 자신의 (사실상 증거가 아닌) 공시가를 비롯한 파업 및 폐쇄 혜택으로서 귀하에게 지급된 혜택은 일반적으로 귀하에게 과세 대상입니다. 파업 및 폐쇄 혜택이 과세 대상이라면, 이 혜택은 일반적으로 근로 소득입니다. 양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1h에 이 파업 및 폐쇄 혜택의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승인된 양식 4361 또는 양식 4029

이 섹션은:

- 양식 4361, ‘목사, 종교 교단 구성원, 크리스찬 사이언스 종사자의 자영업세 면제 신청서’, 또는
- 양식 4029,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 면제 신청 및 혜택 포기 신청서’가 있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각 승인된 양식은 사회 보장 세금에서 특정 소득을 면제합니다. 각 양식은 EIC의 근로 소득 여부와 관련하여 논의됩니다.

양식 4361. 승인된 양식 4361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원으로서 종무를 수행하여 받은 금액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는 임금, 급여, 팁 및 기타 과세 대상 직원 보수가 포함됩니다.

승인된 양식 4361이 있는 경우, 비과세 주택 지원금 또는 주택의 비과세 임대료는 근로 소득이 아닙니다. 또한, 직원이 아닐 때 종무를 수행하여 받은 금액은 근로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식 주례비용과 연설 사례비 등이 있습니다.

양식 4029. 승인된 양식 4029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임금, 급여, 팁 및 기타 과세 대상 직원 보수는 근로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개인 자영업자로서 받은 금액은 근로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 소득을 계산할 때 양식 1040 또는 1040-SR의 라인 1a에서 1h에 신고되는 임금에서 스케줄 C 또는 F의 손실을 제하지 마십시오.

장애 혜택

장애로 인해 은퇴한 경우, 고용주의 장애 은퇴 플랜에 따라 받는 과세 대상 혜택은 최소 은퇴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근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최소 은퇴 연령은 일반적으로 귀하가 장애가 없는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빠른 연령입니다. 최소 은퇴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과세 대상 장애 급여를 양식 1040 및 1040-SR의 라인 1h에 신고해야 합니다.

최소 은퇴 연령에 도달한 다음 날부터 받는 급여는 연금으로 과세되며 근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양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5a 및 5b의 과세 대상 연금 지급금을 신고합니다.

장애 보험금. 귀하가 보험료를 납입한 장애 보험에서 받은 지급금은 근로 소득이 아닙니다. 최소 은퇴 연령에 도달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이 고용주를 통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W-2 양식의 12번 박스에 코드 J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이 아닌 소득

근로 소득이 아닌 항목의 예로는 이자 및 배당금, 연금, 사회 보장 및 철도 퇴직 혜택(장애 혜택 포함), 위자료 및 자녀 양육비, 복지 혜택, 근로자 상해보험 혜택, 실업 수당(보험), 비과세 위탁 혜택 및 VA 재활 혜택을 포함한 보훈 급여가 있습니다. 근로 소득에 이런 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소 기간중 소득. 수감자가 교도소에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받은 금액은 EIC를 계산할 때의 근로 소득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비과세 근로장려금은 EIC의 근로 소득이 아닙니다. TANF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공적 구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주 또는 지방 기관에서 특정인이 (1) 민간 부문 고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직장 체험 활동(공공 주택 리모델링 또는 수리 포함) 또는 (2)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그램 활동과 같은 특정 업무 활동에 대한 대가로 받는 현금 지급금입니다.

부부 공동 재산. 기혼이지만 별거 중인 기혼 납세자에 대한 특별 규칙에 따라 세대주 또는 부부 개별 신고로서 신고할 자격이 있으며(참조 [규칙 3](#)), 부부 공동 재산법이 있는 주에서 거주하는 경우, 귀하의 EIC 근로 소득에는 해당 법에 따라 귀하의 소유로 취급되는 배우자의 모든 수입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소득 신고에 총소득으로 포함해야 하더라도 EIC에 대한 근로 소득이 아닙니다. 주의 부부 공동 재산법에 의해 일부가 배우자의 소유로 취급되더라도, 귀하의 근로 소득에는 귀하가 번 금액 전체가 포함됩니다.

네바다, 워싱턴, 그리고 캘리포니아 동거자. 네바다주, 워싱턴주 또는 캘리포니아주의 등록된 동거자의 경우,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EIC의 근로 소득에는 동거자의 수입이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근로 소득에는 귀하가 번 금액 전체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55를 참고하십시오.

CRP(보존유보플랜) 지급금. CRP 지급금을 받았을 때 사회 보장 퇴직 급여 또는 사회 보장 장애 급여를 받고 있었다면 CRP 지급금은 EIC의 근로 소득이 아닙니다.

비과세 군 급여. 군인의 비과세 급여는 EIC의 근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군인 급여의 예로는 전투 수당, 주택기본수당(BAH), 부식기본수당(BAS)이 있습니다. 추후에, 간행물 3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TIP 전투 수당. EIC 근로 소득에 비과세 전투 수당을 포함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장에서 [비과세 전투 수당](#)을 참고하십시오.

2.

적격 자녀가 있는 경우의 규칙

1장의 모든 규칙을 충족했다면, 이 장을 사용하여 적격 자녀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장에서는 [규칙 8~10](#)에 대해 다룹니다. 적격 자녀를 가지고 EIC를 받으려면 1장 및 4장의 규칙 외에도 세 가지 규칙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IC 청구 목적의 조건을 갖춘 한명의 적격 자녀가 있다면, 귀하에게 EIC 자격을 부여하는 이 자녀가 2024년 신고서 마감일(연장 포함)까지 유효한 SSN이 없더라도 이 규칙을 따르십시오.

양식 1040 또는 1040-SR을 제출할 때, EIC 청구 목적의 조건을 갖춘 한명 이상의 적격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가 신고서 마감일(연장 포함)까지 유효한 SSN이 없더라도 스케줄 EIC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적격 자녀가 유효한 SSN이 없을 경우 스케줄 EIC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스케줄 EIC를 참고하십시오. 1장과 이 장의 모든 규칙을 충족하는 경우, 4장을 읽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십시오.

적격 자녀 없음. 만약 [규칙 8](#)을 충족하지 못하면, 귀하에게는 적격 자녀가 없습니다. 3장을 읽고 적격 자녀 없이 EIC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TIP 자녀가 귀하의 적격 자녀가 되기 위한 테스트를 충족하지만 다른 사람의 적격 자녀가 되기 위한 테스트도 충족하는 경우, 오직 한 사람만 이 자녀를 실제 적격 자녀로 취급하여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타이브레이커 규칙에 따라 적격 자녀 청구를 하는 경우 다른 적격 자녀가 없는 한 납세자로서 적격 자녀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격 자녀 없이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규칙 8— 귀하의 자녀는 반드시 관계, 연령, 거주 및 공동 신고서 테스트를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가 네 가지 테스트를 충족하는 경우 귀하의 자녀는 적격 자녀입니다. 네 가지 테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계,
2. 나이,
3. 거주지, 그리고
4. 공동 신고서.

다음 단락은 각 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계 테스트

적격 자녀가 되려면 자녀가

- 아들, 딸, 의붓 자녀, 위탁 자녀 또는 그중 한 명의 자녀 (예: 귀하의 손주) 또는
- 형제, 자매, 남동생, 여동생, 의붓 형제, 의붓 자매 또는 이들 중 어느 한 사람의 자녀 (예: 귀하의 조카)를 말합니다.

다음 정의는 관계 테스트를 명확히 합니다.

입양 자녀. 입양된 자녀는 항상 귀하의 자녀로 취급됩니다. 용어 “입양 자녀”는 법적 입양을 위해 적법하게 귀하에게 맡겨진 자녀를 포함합니다.

위탁 자녀. EIC의 경우, 자녀가 공인 알선 기관 또는 판결, 법령 또는 관할 법원의 기타 명령에 의해 귀하에게 맡겨진 경우 위탁 자녀입니다. 공인 알선 기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
- 국가의 허가를 받은 면세 단체 및
- 인디언 부족 정부 또는 인디언 부족 정부가 인디언 아이들을 맡기도록 승인한 조직.

예. 12세인 단은 위탁 가정에 아이들을 맡기는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2년 전에 귀하의 위탁 가정에 맡겨졌습니다. 단은 귀하의 위탁 자녀입니다.

연령 테스트

귀하의 자녀는 반드시

1. 2024년 말 만 19세 미만이며 귀하 (또는 배우자, 공동 신고할 경우)보다 어려야 하며,
2. 2024년 말 만 24세 미만이며 학생이고, 귀하 (또는 배우자, 공동 신고할 경우)보다 어려야 하고;
3. 2024년 중 항상, 나이에 관계없이, 영구적이고 완전한 장애가 있어야 함.

다음 예시와 정의는 연령 테스트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예시 1-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귀하의 자녀 샘은 12월 10일에 만 19살이 되었습니다. 샘이 영구적이고 완전

히 장애가 있거나 학생이 아니라면, 적격 자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만 19세 미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시 2-자녀가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보다 어리지 않은 경우. 풀타임 학생이자 미혼인 만 23세의 형제자매 블레이크는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블레이크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귀하와 배우자 모두 만 21세이며, 공동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블레이크가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보다 어리지 않기 때문에 귀하의 적격 자녀가 아닙니다.

예시 3-자녀가 배우자보다 어리지만 귀하보다 어리지 않은 경우. 이 예시는 예 2와 같지만 배우자가 만 25세라는 점은 다릅니다. 블레이크가 배우자보다 어리므로 귀하보다 어리지 않더라도 적격 자녀입니다.

학생에 대한 정의. 학생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려면 자녀는 보통 연도 중 각 5개월의 일부 기간 동안 반드시

1. 정규 교직원, 연구 과정 및 정규 학생 기관이 있는 학교의 풀타임 학생; 또는
2. (1)에서 설명된 학교 또는 주, 카운티 또는 지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풀타임 농업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연속적인 5개월 일 필요는 없습니다.

풀타임 학생은 학교가 풀타임 출석으로 고려되는 시간 또는 과정에 등록된 학생입니다.

학교에 대한 정의.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칼리지, 대학이나 기술, 무역 또는 기계 학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 훈련 과정이나 통신 교육 학교, 또는 인터넷 강의만 제공하는 학교는 EIC의 학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직업 고등학교 학생. 학교의 강의 및 실습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민간 업계의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학생은 풀타임 학생으로 간주됩니다.

영구적이고 완전한 장애.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 자녀에게 영구적으로 완전한 장애가 있습니다.

1. 귀하의 자녀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조건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2. 의사는 병태가 지속되었거나 적어도 1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단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활동.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활동은 급여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동안 합리적인 기간에 걸쳐 유의미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 또는 일반적으로 급여나 이윤을 얻기 위해 하는 일을 말합니다. 최소한 최저 임금에 대한 경쟁적 근로 상황에서 풀타임 (또는 고용주의 편의에 따라 수행되는 파트타임)은 자녀가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활동에 종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활동은 자신이나 집을 돌보는 일이 아닙니다. 취미, 기관 치료 또는 교육, 학교 출석, 클럽, 사교 프로그램 및 유사한 활동에 대한 무급 근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일을 하는 것은 자녀가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한동안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자녀가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활동의 예에 대해서는, 스케줄 R (양식 1040)에 대한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거주지 테스트

귀하의 자녀는 2024년의 절반 이상 미국에서 귀하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귀하가 자녀의 생활비 대부분을 지불했다라도 일년 중 절반 이상 함께 살지 않은 자녀에 대해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IRS는 각 적격 자녀와 함께 살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보관할 수 있는 문서에는 학교와 택시 기록 및 자녀의 주소가 표시된 기타 기록이 포함됩니다.

아래의 단락은 거주지 테스트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미국. 미국은 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를 의미합니다. 푸에르토리코 또는 괌과 같은 미국 영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숙자 보호소. 귀하가 규칙적으로 주거하는 모든 장소가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집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한 곳 이상의 노숙자 보호소에서 반년 이상 함께 거주했다면 자녀는 거주지 테스트를 충족합니다.

미국 외 지역에서 복무하는 군인. 장기 현역 복무로 인해 미국 외 지역에서 복무하는 미군에 대해 EIC 목적상 해당 복무 기간 동안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장기 현역 복무 현역 복무 연장은 무기한 또는 90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역 복무를 시작하면 90일 이상 복무하지 않더라도 장기 현역 복무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녀의 출생 또는 사망. 2024년에 출생했거나 사망한 자녀에 대해 2024년의 절반 이상 귀하와 함께 산 것으로 간주됩니다. 귀하의 집이 자녀의 집인 경우 2024년에 자녀가 살아있던 시간의 절반 이상 동안 귀하와 함께 산 것으로 간주됩니다.

입양 자녀. 2024년에 자녀를 입양했으며, 2024년에 법적 입양을 위해 적법하게 귀하에게 맡겨졌거나 또는 이 자녀가 2024년에 귀하에게 맡겨진 적격 위탁 아동이었으며 2024년에 이 자녀 입양 또는 맡겨진 기간 중 반 이상이 귀하의 집이 자녀의 집이 있었던 경우, 이 자녀가 2024년에 귀하와 반년 이상 거주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유괴된 자녀. 만약 자녀가 유괴된 전날 또는 돌아온 연도의 절반 이상을 귀하와 함께 살았다면, 이 연도의 절반 이상을 귀하와 함께 산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 집행 기관은 자녀가 귀하의 가족이나 자녀의 가족이 아닌 사람에 의해 유괴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러한 취급은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모든 해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취급이 적용될 수 있는 마지막 연도는 다음 상황이 발생하기 전 연도입니다.

1. 자녀가 사망했다는 판정을 받은 해, 또는
2.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해.

적격 자녀가 유괴되어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KC” 를 스케줄 EIC의 라인 6에 있는 숫자 대신 입력합니다.

공동 신고서 테스트

이 테스트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자녀는 해당 연도의 공동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예외.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가 원천징수된 소득세 또는 납부된 추정세의 환급만을 청구하기 위해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 신고 테스트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예 1—자녀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귀하는 만 18세인 자녀를 부양했고, 자녀의 배우자가 군대에 있는 동안 귀하의 자녀는 일년 내내 귀하와 함께 살았습니다. 자녀의 배우자는 한 해 동안 \$25,000를 벌었습니다. 자녀의 부부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이 자녀는 귀하의 적격 자녀가 아닙니다.

예 2—자녀가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만 18세인 자녀와 만 17세인 자녀의 배우자는 파트타임로 \$800의 임금을 받고 있고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둘 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은 급여에서 공제되었으므로 원천징수된 세금만 환급받기 위해 공동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공동 신고서 테스트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므로 다른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귀하의 자녀는 적격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 3—자녀가 미국인 기회 세액공제를 청구하기 위해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 사례는 예 2와 같지만 자녀의 급여에서 세금이 공제되지 않았다는 점이 다릅니다.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여 \$124의 미국인 기회 세액공제를 청구하고 해당 금액을 환급 받습니다. 미국인 기회 세액공제를 청구하는 것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이유이며, 원천징수된 소득세 또는 납부된 추정 소득세의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 신고서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자녀는 귀하의 적격 자녀가 아닙니다.

기혼 자녀. 자녀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자녀가 연말전에 결혼한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격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1. 귀하가 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2.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없는 사유가 나중에 설명할 이혼 또는 별거 중인 부모 (또는 따로 사는 부모)를 위한 특별 규칙에 따라 자녀의 다른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인 경우.



사회 보장 번호 (SSN). 적격 자녀를 근거로 더 높은 EIC 세액공제를 청구하려면 이 적격 자녀는 2024년 신고서 마감일 (연장일 포함) 또는 그 이전에 유효한 SSN이 있어야 하며, 2024년에 출생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자녀의 출생증명서, 사망 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을 보여주는 병원 기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적격 자녀를 근거로 더 높은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적격 자녀의 SSN이 세금 신고서에서 누락되었거나 부정확한 경우;
2. 적격 자녀의 사회 보장 카드에 “Not valid for employment” (고용에 유효하지 않음) 이라고 쓰여 있고 연방 자금 혜택 수급에 사용하기 위해 발급된 경우, 또는
3. SSN 대신 적격 자녀가
 - a. SSN을 발급받을 수 없는 비시민권자에게 발급되는 ITIN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또는

- b. 입양 납세자 식별 번호 (ATIN)는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입양될 자녀에 대한 SSN을 발급받을 수 없는 입양 부모에게 발급됩니다.

적격 자녀가 두 명 이상이고 유효한 SSN이 하나만 있는 경우, 해당 자녀 한 명에 대해서만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SS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칙 2](#)를 참고하십시오.

TIP 귀하의 자녀가 “Not valid for employment” (고용에 유효하지 않음)가 인쇄된 사회 보장 카드를 갖고 있으며, 자녀의 이민 신분은 현재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변경됐을 경우, 이 기호가 없는 사회 보장 카드를 SSA에 요청하십시오.

TIP EIC 청구 목적의 조건을 갖춘 한명의 적격 자녀가 있지만, 이 자녀가 유효한 SSN이 없더라도 귀하에게 단독 EIC를 청구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규칙 9— 귀하의 적격 자녀를 두 명 이상의 사람이 EIC 청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한명의 자녀가 두 명 이상의 사람의 적격 자녀가 되기 위한 테스트에 충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 중 오직 한 명만이 실제로 자녀를 적격 자녀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한 명만 자녀를 적격 자녀로 사용하여 다음 세금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1. 자녀 세액공제, 기타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추가 자녀 세액공제.
2. 세대주 납세자 구분
3. 자녀 및 부양가족 케어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4. 부양가족 케어 혜택의 제외.
5. EIC.

상대방은 이 적격 자녀를 근거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귀하와 상대방은 이러한 세금 혜택을 나누는 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다른 적격 자녀가 없는 한 이러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타이브레이커 규칙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동일한 적격 자녀를 둔 경우 누가 EIC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귀하의 배우자이며 귀하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타이브레이커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타이브레이커 규칙. 한 자녀를 방금 나열된 다섯가지 세금 혜택을 청구할 수 있는 적격 자녀로 간주할 수 있는 사람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 타이브레이커 규칙이 적용됩니다. 타이브레이커 규칙의 목적상 “부모”라는 용어는 어느 한 개인의 친부모 또는 양부모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이 개인을 입양하지 않은 한, 의붓부모 또는 위탁 부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두 사람 중 한 명만 자녀의 부모인 경우 자녀는 부모의 적격 자녀로 간주됩니다.
- 부모가 함께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고 자녀를 적격 자녀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자녀는 부모의 적격 자녀로 취급됩니다.

- 부모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부모 둘 다 자녀를 적격 자녀로 청구하는 경우, IRS는 자녀를 1년 중 더 오랜 기간 동안 거주한 부모의 적격 자녀로 취급합니다. 자녀가 각 부모와 함께 산 기간이 같을 경우, IRS는 자녀를 해당 연도의 AGI가 가장 높은 부모의 적격 자녀로 취급합니다.
- 부모가 자녀를 적격 자녀로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자녀는 해당 연도에 가장 높은 AGI를 보유한 사람의 적격 자녀로 간주됩니다.
- 부모가 자녀를 적격 자녀로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자녀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이 자녀는 해당 연도에 가장 높은 AGI를 보유한 사람의 적격 자녀로 취급되지만 자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녀 부모의 최고 AGI보다 그 사람의 AGI가 높은 경우에만 적격 자녀로 간주됩니다.

TIP 적격 자녀가 타이브레이커 규칙에 따라 2024년에 다른 사람의 적격 자녀로 간주되는 경우, 3장의 적격 자녀가 없는 납세자에 대한 규칙을 사용하여 EIC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타이브레이커 규칙에 따라 귀하와 상대방은 둘 중 누가 자녀를 적격 자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1](#)에서 [12](#)까지를 참고하십시오.

적격 자녀가 타이브레이커 규칙에 따라 2024년에 다른 사람의 적격 자녀로 취급되어서 EIC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적격 자녀를 사용해 EIC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3장의 적격 자녀가 없는 사람에 대한 규칙을 사용하여 EIC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EIC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귀하와 상대방이 동일한 적격 자녀를 두고 있지만 이 상대방이 자격이 없거나 소득 또는 AGI가 너무 높은 이유로 EIC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귀하가 이 자녀를 적격 자녀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예시 6](#)와 [7](#)을 참고하십시오. 그러나 상대방 이 자녀를 통해 이 장에서 앞서 나열된 다른 다섯 가지 세금 혜택을 청구하는 경우 귀하는 이 자녀를 EIC를 청구할 수 있는 적격 자녀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예시. 다음 예는 귀하와 다른 사람이 동일한 적격 자녀를 둔 경우 EIC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 1—자녀가 부모 및 조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귀하와 만 2세 자녀 샘은 일년 내내 귀하의 부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귀하는 만 25세, 미혼이며 AGI는 \$9,000입니다. 귀하의 유일한 소득은 파트타임으로 번 \$9,000이었습니다. 귀하의 부모님의 유일한 소득은 직장에서 받은 \$22,000 이었고 AGI는 \$22,000입니다. 샘의 다른 부모는 귀하나 샘과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설명할 이혼 또는 별거 중인 부모 (또는 따로 사는 부모)를 위한 특별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샘은 귀하와 귀하의 부모와의 관계, 연령, 거주 및 공동 신고서 테스트를 각각 충족하기 때문에 귀하와 귀하 부모의 적격 자녀입니다. 그러나, 둘 중 한 명만 EIC (그리고 적격한 사람인 경우 이 장에서 앞서 나열된 다른 세금 혜택도)를 청구할 수 있는 적격 자녀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샘은 샘의 다른 부모를 포함하여 다른 누구의 적격 자녀도 아닙니다. 귀하가 샘을 EIC 또는 앞서 나열된 다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 자녀로 청구하지 않는 경우, 귀하의 부모는 샘을 EIC를 청구할 수 있는 적격 자녀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예시 2—부모가 조부모보다 AGI가 더 높은 경우. 이 사례는 [예시 1](#)과 같지만 AGI가 \$25,000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귀

하 부모의 AGI가 귀하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귀하의 부모는 샘을 적격 자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귀하만 샘을 적격 자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3—두 명이 같은 자녀를 청구하는 경우. 이 사례는 예시 1과 같지만 귀하와 귀하의 부모 모두 샘을 적격 자녀로 청구하는 점이 다릅니다. 이 경우, 귀하가 자녀의 부모로서 EIC 및 앞서 나열된 다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 자녀로 샘을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부모가 됩니다. IRS는 귀하의 부모가 EIC에 청구하는 것과 샘을 앞서 나열된 다른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을 불허할 것입니다. 귀하의 부모의 AGI가 \$18,591을 초과하기 때문에 적격 자녀가 없는 납세자를 위한 EIC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4—적격 자녀를 두 사람이 나누는 경우. 이 사례는 예시 1과 같지만 단, 귀하에게는, 귀하와 귀하의 부모 모두에게 적격 자녀인 다른 두 명의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둘 중 한 명만 각 자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부모의 AGI가 귀하보다 높으면 귀하의 부모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청구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한 명의 자녀를 청구하는 경우, 귀하의 어머니는 다른 두 명의 자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5—납세자가 적격 자녀인 경우. 이 사례는 예시 1과 같지만 귀하가 만 18세라는 점이 다릅니다. 이는 귀하가 귀하의 부모의 적격 자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논의할 규칙 10으로 인해, 귀하는 EIC를 청구할 수 없으며 샘을 적격 자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부모만이 EIC를 청구할 수 있는 적격 자녀로 샘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부모가 EIC를 청구하기 위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귀하가 앞서 나열된 다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 자녀로 샘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귀하의 부모는 귀하와 샘을 EIC에 대한 적격 자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6—조부모의 근로 소득이 너무 높아 EIC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이 사례는 예시 1과 같지만 귀하의 부모가 근로 소득으로 \$50,000를 벌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귀하의 부모의 소득이 EIC를 청구하기에 너무 높기 때문에 오직 귀하만이 샘을 사용하여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7—부모의 근로 소득이 너무 높아 EIC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이 사례는 예시 1과 같지만 귀하의 근로 소득이 \$50,000이고 AGI가 \$50,500라는 점이 다릅니다. EIC를 청구하기에는 귀하의 소득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부모도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부모의 AGI가 귀하보다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시 8—부모가 별거 중인 경우.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 그리고 귀하의 만 10세 자녀, 조단은 2024년 8월 1일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그 후, 배우자는 이사 나갔습니다. 8월과 9월에 조단은 귀하와 함께 살았습니다. 남은 한 해 동안, 조단은 조단의 다른 부모인 귀하의 배우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조단은 귀하와 배우자 둘다의 적격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조단은 반년 이상 두 사람과 함께 살았으며, 두 사람의 관계, 연령 및 공동 신고서 테스트를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연말에, 귀하와 배우자는 여전히 이혼하지 않았고, 법적으로 분리되었으며, 또한 서면 분리 합의에 따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혼 또는 별거 중인 부모 (또는 따로 사는 부모)를 위한 특별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는 개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배우자는 귀하가 조단을 적격 자녀로 취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즉, 귀하의 배우자가 앞서 나열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

자녀로 조단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귀하에게 적격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 자녀로 조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2024년 마지막 6개월동안 별거하지 않았고 2024년 말에 별거 중 이었다라도 서면 별거 합의 또는 별거 유지령에 의해 주법상으로 법적 별거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EIC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특정 별거 중인 배우자가 EIC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규칙 3**을 참고하십시오. 또한 귀하의 납세자 구분이 부부 개별 신고이며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2024년의 마지막 6개월 동안 떨어져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귀하는 자녀 및 부양 가족 케어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간행물 503을 참고하십시오.

예시 9—별거 중인 부모가 같은 자녀를 청구하는 경우. 이 사례는 예시 8과 같지만 귀하와 배우자 모두 조단을 적격 자녀로 청구하는 점이 다릅니다. 이 경우 오직 배우자만이 조단을 적격 자녀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에 자녀는 귀하보다 배우자와 더 오래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귀하는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별거 중인 배우자이며 적격 자녀가 없는 이유로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납세자 구분 또한 부부 개별 신고이고,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2024년 마지막 6개월동안 별거하지 않았으며, 2024년 말에 별거 중 이었다라도 서면 별거 합의 또는 별거 유지령에 의해 주법상으로 법적 별거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귀하의 배우자 역시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배우자는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특정 별거 중인 배우자가 EIC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규칙 3**을 참고하십시오. 또한 배우자의 납세자 구분이 부부 개별 신고이며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2024년의 마지막 6개월 동안 떨어져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귀하의 배우자 역시 자녀 및 부양 가족 케어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간행물 503을 참고하십시오.

예시 10—미혼 부모의 경우. 귀하와 만 5세 자녀, 로건 그리고 로건의 다른 부모는 일년 내내 함께 살았습니다. 귀하와 로건의 다른 부모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로건은 귀하와 로건의 다른 부모와의 관계, 연령, 거주 및 공동 신고서 테스트를 각각 충족하기 때문에 귀하와 로건의 다른 부모의 적격 자녀입니다. 귀하의 소득과 AGI는 \$12,000이며, 로건의 다른 부모의 소득과 AGI는 \$14,000입니다. 두 사람 모두 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로건의 다른 부모는 귀하가 이 자녀를 적격 자녀로 취급하는 데 동의합니다. 즉, 로건의 다른 부모가 로건을 EIC 또는 앞서 나열된 다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 자녀 청구에 로건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로건을 EIC 및 앞서 나열된 다른 세금 혜택을 청구할 수 있는 적격 자녀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예시 11—미혼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청구하는 경우. 이 사례는 예시 10과 같지만 귀하와 L의 다른 부모 둘다 로건을 적격 자녀로 청구하는 점이 다릅니다. 이 경우 로건의 다른 부모만 로건을 적격 자녀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건의 다른 부모의 AGI인 \$14,000가 귀하의 AGI \$12,000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귀하는 적격 자녀 없이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12—아이가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 귀하와 형제자매의 자녀인 만 7세 모건은 일년 내내 귀하의 부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귀하는 만 25세이며 AGI는 \$9,300입니다. 귀하의 유일한 소득원은 파트타임 직장입니다. 귀하 부모의 AGI는 \$15,000입니다. 귀하 부모의 유일한 소득원은 직장입니다. 모건의 부모는 공동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AGI가 \$9,000 미만이며, 귀하 또는 M과 함께 살지 않습니다. 모건은 귀하와 어머니

의 관계, 연령, 거주 및 공동 신고서 테스트를 각각 충족하기 때문에 귀하와 귀하 부모의 적격 자녀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부모만이 모건을 적격 자녀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부모의 AGI인 \$15,000가 귀하의 AGI \$9,300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이혼 또는 별거 중인 부모 (또는 따로 사는 부모)를 위한 특별 규칙. 아래의 진술들이 모두 사실인 경우 자녀는 비양육권을 가진 부모의 적격 자녀로 취급됩니다.

1. 부모가
 - a. 이혼 했거나 별거 유지령에 의해 법적으로 분리된 경우;
 - b. 서면 별거 합의에 따라 분리된 경우; 또는
 - c. 2024년의 마지막 6개월 동안 계속 떨어져 살았을 경우.
2. 자녀는 부모로부터 한 해 동안 절반 이상을 지원받았을 경우.
3. 해당 아동은 2024년의 절반 이상을 한 명 또는 두 명의 부모에게 양육된 경우.
4. 다음 둘중 하나라도 사실인 경우.
 - a. 양육 부모는 양식 8332에 서명하거나 또는 자녀를 해당 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진술에 서명하고, 비양육 부모는 양식 또는 진술을 자신의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1984년 이후와 2009년 이전에 이혼 법령 또는 별거 합의가 발효된 경우, 비양육 부모는 양식 8332 대신 법령 또는 계약서의 특정 페이지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b. 2024년에 적용되는 1985년 이전 이혼 법령 또는 별거 유지 또는 서면 별거 합의로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비양육 부모는 2024년에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최소 \$600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01을 참고하십시오. 이혼 또는 별거 중인 부모 (또는 따로 사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 특별 규칙에 따라 자녀가 비양육 부모의 적격 자녀로 취급되는 경우 비양육 부모만 자녀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 또는 다른 부양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격한 경우 양육 부모 또는 다른 적격 납세자만 자녀를 EIC의 적격 자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예는 간행물 501에서 **이혼 또는 별거 중인 부모 (또는 따로 사는 부모)에 타이브레이커 규칙 적용**을 참고하십시오.

규칙 10-귀하는 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래의 진술들이 모두 사실인 경우 귀하는 다른 납세자 (예: 귀하의 부모, 보호자 또는 양부모)의 적격 자녀입니다.

1. 귀하는 해당 납세자의 아들, 딸, 의붓 자녀, 위탁 자녀 또는 이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또는 그 사람의 형제, 자매, 이복/이부/의붓 형제, 이복/이부/의붓 자매 또는 이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2. 귀하가:
 - a. 연말에 만 19세 미만이며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배우자, 공동 신고의 경우)보다 어린 경우,

- b. 연말에 만 24세 미만이며 학생이고,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배우자, 공동 신고의 경우)보다 어린 경우, 또는
- c. 연령에 상관없이 영구적이며 완전히 장애가 있는 경우.

3. 귀하는 그 사람과 함께 1년 중 절반 이상을 미국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4. 귀하는 해당 연도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람 (또는 오직 원천징수된 소득세 또는 납부된 추정 소득세의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만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입니다.

적격 자녀가 되기 위한 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칙 8](#)을 참고하십시오.

귀하가 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인 경우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귀하를 적격 자녀로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이 EIC를 청구하지 않거나 EIC를 청구하기 위한 모든 규칙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No”를 라인 27 (양식 1040 또는 1040-SR) 옆의 점선에 입력하십시오.

예시. 귀하와 귀하의 자녀는 일년 내내 귀하의 부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귀하는 만 22세이고, 미혼이며, 직업학교에 풀타임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귀하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고 \$5,700를 벌었습니다. 귀하는 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귀하는 관계, 연령, 거주 및 공동 신고서 테스트를 충족하기 때문에 귀하 부모의 적격 자녀입니다. 귀하의 부모는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 부모의 적격 자녀이기 때문에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귀하의 부모가 EIC를 청구할 수 없거나 청구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자녀. 귀하가 관계, 연령, 거주 및 공동 신고서 테스트를 충족한 사람이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는 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가 아닙니다 (따라서 EIC를 청구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 원천징수된 소득세 또는 납부된 추정 소득세의 환급을 위해서만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예시 1-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이 사례는 지난 예와 동일합니다. 단, 귀하의 부모는 총소득이 없었고 2024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2024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귀하는 부모의 적격 자녀가 아닙니다. 귀하는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2-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 사례는 [예 1과 같지만](#) 귀하의 부모는 \$1,500의 임금을 받았고, 부모의 임금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귀하의 부모는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환급을 위해서만 신고서를 제출하고 EIC 또는 기타 세금 공제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귀하는 부모의 적격 자녀가 아닙니다. 귀하는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3-EIC를 받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 사례는 [예 2와 같지만](#) 귀하의 부모가 신고서에서 EIC를 청구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부모가 EIC를 받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환급을 위해서만 신고서를 제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 귀하는 부모의 적격 자녀입니다. 귀하는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적격 자녀가 없는 경우의 규칙

적격 자녀가 없고 1장의 모든 규칙을 충족하는 경우 이 장을 사용하십시오. 이 장에서는 **규칙 11**에서 **규칙 14**를 설명합니다. 적격 자녀 없이 EIC를 받으려면 1장 및 4장의 규칙 외에도 네 가지 규칙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장과 이 장의 모든 규칙을 충족하는 경우, 4장을 읽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십시오.

적격 자녀가 있다면. 귀하가 **규칙 8**을 충족하면, 적격 자녀가 있습니다. 귀하가 **규칙 8**을 충족하고 적격 자녀와 함께 EIC를 청구하지 않으면, 적격 자녀 없이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TIP *귀하의 자녀가 귀하의 적격 자녀가 되기 위한 테스트를 충족하지만 다른 사람의 적격 자녀가 되기 위한 테스트도 충족하는 경우, 한 명만 자녀를 실제 적격 자녀로 취급하여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타이브레이크 규칙에 따라 적격 자녀 청구를 하는 경우 다른 적격 자녀가 없는 한 납세자로서 적격 자녀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격 자녀 없이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규칙 11— 나이 요건에 반드시 부합해야 합니다

귀하는 2024년 말에 반드시 최소 만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부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는 2024년 말에 반드시 최소 만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중 한명이 해당 나이 테스트에 부합하다면 그 배우자가 누구인지는 상관없습니다.

귀하가 1959년 12월 31일 이후, 그리고 2000년 1월 2일 이전에 출생했다면 나이 테스트에 부합합니다. 귀하가 부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가 1959년 12월 31일 이후, 그리고 2000년 1월 2일 이전에 출생했다면 나이 테스트에 부합합니다.

귀하나 배우자 둘다 나이 테스트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인 27 (양식 1040 또는 1040-SR) 옆의 점선에 "No"를 기입하십시오.

예시 1. 귀하는 만 28세이며 미혼입니다. 나이 테스트에 부합합니다.

예시 2—배우자가 나이 테스트에 부합함. 귀하는 기혼이며 부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귀하는 만 23세이며 귀하의 배우자는 만 27세입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최소 만 25세, 그러나 만 65세 미만이기 때문에 나이 테스트에 부합합니다.

배우자의 사망. 2024년에 사망한 배우자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귀하가 2024년 말에 최소 만 25세 이상, 65세 미

만였거나 귀하의 배우자가 사망 당시 나이가 최소 만 25세, 그러나 만 65세 미만이었다면 나이 테스트에 부합합니다.

귀하의 배우자는 자신의 25번째 생일 전날에 만 25세가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만 65에 이르는 규칙은 다릅니다. 귀하의 배우자는 65번째 생일이 되는 날에 만 65세가 됩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2000년 1월 2전에 출생했다더라도 사망 당시 나이가 최소 만 25세가 아니라면 2024년 말에 최소 만 25세가 되지 않은 것으로 고려됩니다.

예시 1. 귀하는 기혼이며 2024년 8월에 사망한 배우자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귀하는 만 67세입니다. 귀하의 배우자는 2024년 11월에 만 65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사망 당시 만세 65세 미만이었으므로, 귀하는 나이 테스트에 부합합니다.

예시 2. 귀하의 배우자는 1999년 2월 14일에 출생했고 2023년 2월 13일에 사망했습니다. 귀하의 배우자는 사망 시에 만 25세로 고려됩니다. 허나, 만약 귀하의 배우자가 2024년 2월 12일에 사망했다면, 사망 당시 만 25세가 아닌 것으로 고려되며 2024년 말에 최소 만 25세가 아닙니다.

납세자의 사망. 2024년에 사망한 납세자는 사망 당시 최소 만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었다면 연령 테스트를 충족합니다.

납세자는 본인의 25번째 생일 하루전에 만 25세가 된 것으로 고려됩니다. 그러나 만 65에 이르는 규칙은 다릅니다. 납세자는 본인의 65번째 생일이 되는 날에 만 65세가 됩니다.

납세자가 2000년 1월 2전에 출생했다더라도 사망 당시 나이가 최소 만 25세가 아니라면 2024년 말에 최소 만 25세가 되지 않은 것으로 고려됩니다.

규칙 12- 귀하는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귀하의 이름 하단에 "Someone can claim you as a dependent" (다른 사람이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음)이라는 확인란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 규칙을 충족합니다.

만약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Someone can claim you as a dependent" (다른 사람이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음) 또는 "Someone can claim your spouse as a dependent" (다른 사람이 귀하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음)이라는 확인란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 규칙을 충족합니다.

다른 사람이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간행물 501에서 부양가족 청구 규칙을 읽어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신고서에서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소득세 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혹은 오직 원청징수된 소득세 또는 납부한 추정세에 대한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귀하는 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시 1. 2024년에 귀하는 만 25세 미혼이고,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귀하는 일을 했고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귀하는 \$7,500를 벌었습니다. 귀하의 부모는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할 때 "Someone can claim you as a dependent" (다른 사람이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음) 확인란을 선택하지 않음

경우에, 이 규칙을 충족합니다.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귀하가 \$2,000를 벌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예 1과 동일합니다. 귀하의 부모는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 규칙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부모가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귀하는 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동 신고서. 기혼이며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와 배우자가 단지 원천징수된 소득세 또는 납부된 추정소득세의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공동 신고서에서 EIC를 청구하는 경우 귀하나 배우자 모두 다른 사람에 의해 부양가족으로 청구될 수 없습니다.

예시 1—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귀하는 만 26세입니다. 귀하와 배우자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파트타임으로 \$800의 임금을 받고 있고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둘 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하는 자녀가 없습니다. 세금은 급여에서 공제되었으므로 원천징수된 세금만 환급받기 위해 공동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귀하가 공동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귀하의 부모가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시 2—EIC를 받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귀하의 급여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예 1과 동일합니다. 또한, 귀하와 귀하의 아내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여 \$63의 EIC를 청구하고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는 이유이기 EIC를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된 소득세 또는 납부된 추정 소득세의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만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부모는 귀하 또는 귀하의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규칙 13-귀하는 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래의 진술이 모두 사실인 경우 귀하는 다른 납세자 (귀하의 부모, 보호자, 양부모 등)의 적격 자녀입니다.

1. 귀하는 해당 납세자의 아들, 딸, 의붓 자녀, 위탁 자녀 또는 그 중 한 명의 자녀입니다. 또는 그 사람의 형제, 자매, 이복/이부/의붓 형제, 이복/이부/의붓 자매 또는 그중 한 명의 자녀입니다.
2. 귀하가
 - a. 연말에 만 19세 미만이며 해당 납세자 (또는 공동 신고의 경우 그 사람의 배우자)보다 어린 경우.
 - b. 연말에 만 24세 미만이며 해당 납세자 (또는 공동 신고의 경우 그 사람의 배우자)보다 어린 경우.
 - c. 연령에 상관없이 영구적으로 완전히 장애가 있는 경우.
3. 귀하는 해당 납세자와 1년 중 절반 이상 미국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4. 귀하는 해당 연도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람 (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 또는 납부된 추정 소득세의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입니다.

적격 자녀가 되기 위한 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칙 8](#)을 참고하십시오.

귀하가 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인 경우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귀하를 적격 자녀로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이 EIC를 청구하지 않거나 EIC를 청구하기 위한 모든 규칙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인 27 (양식 1040 또는 1040-SR) 옆의 점선에 “No”를 입력합니다.

예시. 귀하는 일년 내내 부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귀하는 만 26세이고, 미혼이며, 영구적이고 완전한 장애가 있습니다. 귀하의 유일한 소득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일주일에 3일 전화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귀하는 일년 동안 \$5,000를 벌었고 본인 부양비의 절반 이상을 제공했습니다. 귀하는 관계, 연령, 거주 및 공동 신고서 테스트를 충족하기 때문에 귀하의 부모가 EIC를 청구할 수 있는 적격 자녀입니다. 귀하의 부모는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부모의 적격 자녀이기 때문에 본인은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모가 EIC를 청구할 수 없거나 청구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 신고서. 기혼이며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와 배우자가 단지 원천징수된 소득세 또는 납부된 추정 소득세의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귀하는 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공동 신고서에서 EIC를 청구하는 경우 귀하나 배우자 모두 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자녀. 귀하가 관계, 연령, 거주 및 공동 신고서 테스트를 충족한 사람이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는 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가 아닙니다 (따라서 EIC를 청구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 원천징수된 소득세 또는 납부된 추정 소득세의 환급을 위해서만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예시 1-신고서가 필요 없는 경우. 귀하는 일년 내내 부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귀하는 만 27세이고, 미혼이며, 영구적이고 완전한 장애가 있으며, \$13,000의 소득이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자녀가 없으며 본인 부양비의 절반 이상을 제공했습니다. 귀하의 부모는 총소득이 없었고 2024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2024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귀하는 부모의 적격 자녀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2—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귀하의 아버지가 \$1,500를 벌었고 임금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예시 1과 동일합니다. 아버지는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환급을 위해서만 신고서를 제출하고 EIC 또는 기타 세금 공제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귀하는 아버지의 적격 자녀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EI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3—EIC를 받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귀하의 부모가 신고서에서 EIC를 청구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예시 2와 동일합니다. 부모가 EIC를 받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환급을 위해서만 신고서를 제출하

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 귀하는 부모의 적격 자녀입니다. 귀하는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규칙 14— 1년 중 절반 이상 미국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귀하의 집 (과 배우자의 집,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이 일년의 절반 이상 미국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No” 를 라인 27 (양식 1040 또는 1040-SR) 옆의 점선에 입력합니다.

미국. 미국은 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를 의미합니다. 푸에르토리코 또는 괌과 같은 미국 영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숙자 보호소. 귀하의 집은 귀하가 규칙적으로 주거하는 모든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집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미국에서 한 곳 이상의 노숙자 보호소에서 반년 이상 거주했다면, 귀하는 이 규칙을 충족합니다.

미국 외 지역에서 복무하는 군인. 현역 복무의 연장으로 미국 외 지역에서 복무하는 미군 (2장의 설명 참조)에 대해 EIC는 해당 복무 기간 동안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EIC 산정 및 청구

EIC를 청구하려면 한 가지 규칙을 더 충족해야 합니다.

귀하가 이 장의 규칙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려면 귀하의 근로 소득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EIC를 산정을 위해서 해당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규칙 15-근로 소득 한도

귀하의 근로 소득은 다음보다 낮아야 합니다: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59,899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66,819),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55,768(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62,688),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한 명일 경우, \$49,084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56,004),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없을 경우, \$18,591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25,511).

근로 소득

근로 소득은 일반적으로 임금, 급여, 팁, 기타 과세 대상 직원 급여 및 자영업의 순이익을 의미합니다. 직원 급여는 과세 대상인 경우에만 근로 소득입니다. 특정 부양가족 혜택 및 입양 혜택과 같은 비과세 직원 급여는 소득이 아닙니다. 하지만 비과세 전투 수당에 대한 예외가 있어, 근로 소득에 포함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장에서 **규칙 7**을 참고하십시오.

근로 소득 산정. 귀하가 자영업자, 법정 직원, 또는 스케줄 SE (양식 1040)를 제출하는 성직자 또는 교회 직원인 경우, 라인 27에 대한 지침을 위해 양식 1040의 5단계에 있는 작업표와 양식 1040 설명에 있는 EIC 작업표의 파트 B를 작성하면 귀하의 근로 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5단계에 있는 작업표를 작성하기 전에 **성직자** 또는 **교회 직원** 둘 중 해당되는 내용 참조를 명심하십시오.

성직자. 귀하가 스케줄 SE를 제출하는 성직자이고 해당 스케줄 라인 2의 금액이 양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1z에 신고된 금액을 포함하는 경우, 양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1z의 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그 결과를 라인 27에 대한 양식 1040 지침, 5단계의 작업표 라인 1에 입력합니다. 라인 27 (양식 1040 또는 1040-SR) 옆의 점선에 “Clergy” (성직자)를 기입하십시오.

교회 직원. 교회 직원이란 교회 또는 적격 교회 관리 조직의 직원 (목사 또는 종교 교단 구성원 제외)을 의미하며, 고용주의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이 면제됩니다. 교회 직원으로 임금을 받았고 스케줄 SE의 라인 5a와 양식 1040, 라인 1a에 있는 금액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양식 1040 또는 1040-SR 라인 1a의 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그 결과를 라인 27에 대한 양식 1040 또는 1040-SR 지침 5단계의 작업표 라인 1에 입력하십시오.

메디케어 포기 지급금. 양식 1040 지침 라인 27의 5단계에 있는 작업표를 작성할 때, 스케줄 1 (양식 1040), 라인 8s의 소득에서 제외시킨 메디케어 포기 지급금을 입력하십시오. 만약 이것을 근로 소득에 포함시키도록 선택했다면 -0-을 입력하십시오. 이 지급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25를 참고하십시오.

TIP 귀하의 메디케어 포기 지급금은 이미 양식(들) W-2, 박스 12, 코드 II에 보고되었을 수 있습니다.

TIP 이번 연도에 귀하와 배우자 둘다 모두 메디케어 포기 지급금을 받았다면, 이 지급금 총액을 근로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닌 다른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귀하 또는 배우자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근로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은 메디케어 포기 지급금의 금액만을 입력하십시오. 비과세 메디케어 포기 지급금의 총액을 근로 소득에 포함시키려면 -0-를 입력하십시오.

비과세 전투 수당. EIC에 대한 근로 소득에 비과세 전투 수당을 포함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선택하는 경우, 귀하가 받은 모든 비과세 전투 수당을 근로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고 귀하와 배우자가 모두 비과세 전투 수당을 받은 경우, 각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둘 중 한 명이 선택하면 다른 한 명도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비과세 전투 수당 금액은 양식 W-2의 박스 12에 코드 Q와 함께 표시되어야 합니다.

근로 소득에 비과세 전투 수당을 포함하도록 선택하면 EIC가 증가 혹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기 전에 비과세 전투 수당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공제를 산정합니다. 선택이 귀하의 EIC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지 여부는 귀하의 총소득, 납세자 구분 및 적격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투 수당이 없을 때의 근로 소득이 자녀 수 아래에 표시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근로 소득에 비과세 전투 수당을 포함하도록 선택하

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두 가지 방법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전투 수당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의 근로 소득이 이 금액과 같거나 그 이상이면 근로 소득에 전투 수당을 포함했을 때의 혜택이 없습니다.

- 유효한 SSN을 가진 자녀가 없는 경우 \$8,260.
- 자녀가 한 명인 경우 \$12,370.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7,400.



비과세 전투 수당을 사용해 EIC를 산정하도록 선택한 다면, 이 금액을 양식 1040 또는 1040-SR, 라인1에 입력하십시오.

IRS가 귀하를 위해 EIC를 산정해줄 것입니다

양식 1040에 대한 지침에 있는 라인 27에 대한 지침을 따르면 IRS가 귀하를 위해 EIC를 산정해 줄 것입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IRS에 EIC 산정을 요청하지 마십시오. 자격이 되려면, 이 장의 규칙 15 와 1장의 규칙 및 2장 또는 3장의 규칙 중 귀하에게 적용되는 규칙에 부합해야 합니다. 1996년 이후 어느 한 연도에 라도 세액 공제가 감소되거나 불허된 경우, 5장의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IC를 본인이 직접 산정하는 방법

EIC를 본인이 직접 산정하려면 양식 1040의 지침에 있는 EIC 작업표를 사용하십시오. 적격 자녀가 있는 경우, 스케줄 EIC (이 장 후반의 논의되는)를 작성하여 세금 신고서에 첨부하십시오.

IRS는 귀하의 EIC를 산정하기를 원한다면, 이전의 [IRS가 귀하를 위해 EIC를 산정해줄 것입니다](#)를 참고하십시오.

특별 설명-EIC 작업표

EIC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EIC 작업표 A 또는 EIC 작업표 B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섹션은 이러한 작업표를 사용하는 방법과 신고서에서 EIC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EIC 작업표 A. 2024년에 자영업업을 한 적이 없고, 성직자, 스케줄 SE를 제출하는 교회 직원 또는 스케줄 C를 제출하는 법정 직원이 아닌 경우 EIC 작업표 A를 사용하십시오.

EIC 작업표 B. 2024년에 어느 시점이라도 자영업자였고 성직자, 스케줄 SE를 제출하는 교회 직원 또는 스케줄 C를 제출하는 법정 직원의 경우 EIC 작업표 B를 사용하십시오. 다음 중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단락을 읽고 EIC 작업표 B를 작성하십시오.

자영업의 순이익이 \$400 이상인 경우. 자영업 순이익이 \$400 이상인 경우 스케줄 SE (양식 1040)를 올바르게 작성하고 적절한 자영업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 자격이 있는 EIC의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의 순이익을 산정할 때는 허용된 사업 경비를 모두 청구해야 합니다.

순이익을 산정할때 선택적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시기. 스케줄 SE의 선택적 방법을 사용하여 자영업의 순이익을 산정하면 EIC 자격을 얻거나 더 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순이익 (선택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이 \$6,920 미만인 경우, 선택적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케줄 SE의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부부 두 사람 모두 자영업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모든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 EIC 작업표 B의 파트 1과 파트 2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1. 부부 공동 신고를 하는 경우.
2. 귀하와 배우자 모두 자영업 소득이 있습니다.
3. 귀하 또는 배우자는 스케줄 SE를 제출하고 둘 중 한 명은 스케줄 SE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법정 직원. 법정 직원은 스케줄 C에 임금과 경비를 신고합니다. 법정 직원은 스케줄 SE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법정 직원의 경우, EIC 작업표 B를 작성할 때 스케줄 C의 파트 3에 있는 라인 1에 금액을 입력하십시오.

스케줄 EIC

적격 자녀가 있고 EIC를 청구하는 경우, 스케줄 EIC를 작성하여 세금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스케줄 EIC는 적격 자녀에 대한 정보를 IRS에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자녀의 이름, 연령, SSN, 귀하와의 관계 및 자녀가 귀하와 한 해 동안 함께 살았던 시간이 포함됩니다.



스케줄 EIC를 작성하고 첨부해야 하지만 첨부하지 않은 경우, 환급 처리 및 지급에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귀하의 적격 자녀가 유효한 SSN이 없더라도 스케줄 EIC를 작성하고 세금 신고서에 첨부하십시오. 귀하의 적격 자녀가 유효한 SSN이 없을 경우 스케줄 EIC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스케줄 EIC를 참고하십시오.

5.

EIC 불허



1996년 이후 그 어느 연도에 EIC가 IRS에 의해 거부 (불허)되거나 감소된 경우, 2024년에 이 세액공제를 청구하려면 추가 양식을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은 1996년 이후 연도에 EIC가 IRS에 의해 거부되거나 감소된 사람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상황이 본인에게 적용되는 경우, 2024년 세액공제를 청구하기 위해 양식 8862, '불허 후 특정 세액공제를 청구하기 위한 정보'를 작성하고 2024년 신고서에 첨부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양식

8862를 첨부해야 할 상황의 예를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식 8862 및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이 장에서는 EIC가 거부되거나 감소한 후 여러 해 동안 EIC를 청구할 수 없는 특정 사람들을 위한 규칙도 설명합니다.

양식 8862

1996년 이후의 계산 또는 서류상의 오류 이외의 이유로 EIC가 거부되거나 감소된 경우, EIC를 청구하려면 반드시 양식 8862를 작성해서 다음 연도 세금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본 간행물에 설명된 모든 규칙을 충족하여 EIC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외 1. 아래의 (1) 또는 (2)가 사실인 경우 양식 8862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 이전 연도에 EIC가 감소되거나 불허된 후,
 - 귀하는 이후 연도에 양식 8862를 제출했고 이후 연도의 EIC가 허용된 경우, 그리고
 - 계산 또는 서류상의 오류 이외의 이유로 또 다시 EIC가 감소 또는 불허된 적이 없었던 경우.
- 2024년에 적격 자녀 없이 EIC를 청구하며, EIC가 이전 해에 감소되거나 불허된 유일한 이유는 스케줄 EIC에 나열된 자녀가 귀하의 적격 자녀가 아니라고 IRS가 판단했기 때문인 경우.

이 모든 경우에, EIC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식 8862를 제출하지 않아도 EIC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2. 양식 8862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EIC를

- 귀하의 EIC 청구가 무모하거나 의도적으로 EIC 규칙을 무시했다는 최종 결정이 내려진 이후 2년 동안 받지 않았을 경우, 또는
- 귀하의 EIC 청구가 사기 때문이라는 최종 결정이 내려진 이후 10년 동안 받지 않았을 경우.

추가 정보. 자세한 내용은 이 장에서 [여러 해 동안 EIC 청구가 금지되어 있습니까?](#)를 보십시오.

EIC가 거부된 날짜와 2024년 신고서를 제출한 날짜는, 양식 8862를 2024년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지 또는 이 다음 연도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예제는 양식 8862가 2024년 또는 2025년 중 언제 요구되는지 설명합니다.

예시 1 - 양식 8862가 2024년에 요구되는 경우. 귀하는 2024년 3월에 2023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적격 자녀를 포함한 EIC를 청구했습니다. IRS는 EIC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며, 귀하는 귀하의 자녀가 적격 자녀임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2024년 9월, 귀하는 90일 이내에 조세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세금이 부과된다는 법정 추정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귀하는 90일 이내에 이 고지서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 따라서, 귀하의 EIC는 2024년 12월에 거부되었습니다. 2024년 신고서에 적격 자녀를 포함한 EIC를 청구하려면 양식 8862를 작성하고 첨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4년 신고서에 적격 자녀 없이 EIC를 청구하려면 양식 8862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시 2 - 양식 8862가 2025년에 요구되는 경우. 이 사례는 2025년 2월에 법정 추정세 고지서를 받았다는 점을 제외하고

는 이전 사례와 동일합니다. 2024년 신고서를 제출할 준비가 되었을 때 법정 추정세 고지서에 언급된 90일의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024년 신고서에 양식 8862를 첨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2025년 신고서를 제출 시 적격 자녀를 포함하여 EIC를 청구하려면 그해에 양식 8862를 작성하고 첨부해야 합니다. 2025년에 적격 자녀 없이 EIC를 청구하려면 양식 8862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 또는 서류상의 오류에 대한 예외. EIC가 계산 또는 서류상의 오류로 인해 거부 또는 감소된 경우, 양식 8862를 다음 세금 신고서에 첨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계산이 부정확하면 IRS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SSN을 제공하지 않으면 IRS는 EIC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오류를 계산 또는 서류상의 오류라고 합니다.

양식 8862의 누락. 2024년 세금 신고서에 양식 8862의 첨부가 요구되지만 작성된 양식 8862를 첨부하지 않고 EIC를 청구하는 경우 이 청구는 자동으로 거부될 것입니다. 이는 계산 또는 서류상의 오류로 간주됩니다. 작성된 양식 8862 없이는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 정확하게 작성된 양식 8862를 첨부하더라도 청구한 EIC와 관련된 환급이 처리되기 전에 IRS에 추가 서류 또는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EIC 청구가 금지되어 있습니까?

1996년 이후에 EIC가 거부되고 귀하의 오류가 무모하거나 의도적으로 EIC 규칙을 무시한 것으로 판단되면 향후 2년 동안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기로 인해 오류가 발생한 경우 향후 10년 동안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IC가 거부된 날짜와 2024년 신고서를 제출한 날짜는 EIC 청구 금지 연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예시는 귀하의 EIC 청구 금지 연도를 보여줍니다.

예시 3 - EIC 청구가 2년 동안 금지된 경우. 귀하는 2024년 3월에 제출한 2023년 세금 신고서에서 EIC를 청구했습니다. IRS는 귀하가 EIC에 적격하지 않으며 귀하의 오류가 무모하거나 의도적으로 EIC 규칙을 무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24년 9월, 귀하는 90일 이내에 조세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세금이 부과된다는 법정 추정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귀하는 90일 이내에 이 고지서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 따라서, 귀하의 EIC는 2024년 12월에 거부되었습니다. 과세 연도 2024년 또는 2025년에 대한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신고서에 EIC를 청구하려면, 해당 연도의 신고서에 양식 8862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예시 4. 2023년에 대한 EIC가 2024년 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거부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면 예 3과 동일합니다. 과세 연도 2025년 또는 2026년에 대한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7년 신고서에 EIC를 청구하려면, 해당 연도의 신고서에 양식 8862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예시 5 - EIC 청구가 10년 동안 금지된 경우. 귀하는 2024년 2월에 제출한 2023년 세금 신고서에서 EIC를 청구했습니다. IRS는 귀하가 EIC에 적격하지 않으며 귀하의 오류가 사기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년 9월, 귀하는 90일 이

내에 조세 법원에 탄원을 제출하지 않는 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세금이 부과된다는 법정 추정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귀하는 90일 이내에 이 고지서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 다. 따라서, 귀하의 EIC는 2024년 12월에 거부되었습니다. 과세 연 도 2024년에서 2033년까지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34년 신고서에 EIC를 청구하려면, 해당 연도의 신고서에 양식 8862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EIC 청구가 금지된다는 IRS의 최종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이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양식 8862, *청구 불허 기간에 대한 항소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6.

상세한 예시

다음 페이지에는 EIC 청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도움 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자세한 예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시 1—재이미 스미스

재이미 스미스는 만 63세로 은퇴자입니다. 재이미는 한 해 동 안 \$7,000의 사회 보장 혜택을 받았고, 파트타임로 \$17,000를 받았습니 다. 또한, \$7,400의 과세 대상 연금을 받았습니 다. 재 이미는 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재이미의 AGI는 양식 1040, 라 인 11의 \$24,400 (\$17,000 + \$7,400)입니다.

재이미는 결혼하지 않았고 1년 내내 미국에서 혼자 살았습 니 다. 재이미는 다른 사람의 신고서 청구에 부양가족으로 청구 될 수 없으며 투자 소득이 없고 적격 자녀가 없습니다.

재이미는 양식 1040의 지침에서 자격 요건을 위한 단계를 읽습니 다. 재이미는 1단계 에서 자신의 AGI (\$24,400)가 \$18,591 보다 적지 않기 때문에 EIC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 게 됩니 다. 재이미는 나머지 양식 1040을 작성하여 IRS에 제 출합니 다.

예시 2—카메론과 조단 그레이

카메론과 조단 그레이는 만 10세와 만 8세인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카메론과 조단은 아이들과 2024년 내내 함께 살았습니 다. 카메론은 \$15,000, 조단은 \$18,030의 임금을 받 았습니 다. 그레이 부부는 저축 계좌에서 \$525의 이자를 받았 습니 다. 2024년에 그 외의 다른 소득이 없습니 다.

카메론과 조단은 2024년 양식 1040 및 지침을 가지고 있습 니 다. 그들은 EIC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양식 1040의 지침에 있는 라인 27에 대한 단계를 따릅니 다.

1단계. 카메론과 조단은 양식 1040, 라인 11에 입력한 금액 은 \$33,555였습니다. 둘 다 유효한 SSN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 다. 이들은 결혼했으며 공동 신고서를 제출할 것입니 다. 카메론과 조단은 둘 다 비거주 외국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1단계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들이 2단계로 진행하도록 허용합 니 다.

2단계. 그레이 부부의 유일한 투자 소득은 \$525의 이자 소득 입니 다. 해당 금액은 \$11,600를 넘지 않기 때문에 2단계의 두 번째 질문에 “No”라고 답변한 후 3단계로 이동합니 다.

3단계. 그들의 자녀는 관계, 연령, 거주 및 공동 신고서 테스 트를 충족하여 카메론과 조단의 적격 자녀가 됩니 다. 그래서 카메론과 조단은 3단계의 첫 번째 질문에 “Yes”라고 답변합니 다. 이들의 자녀는 다른 누구의 적격 자녀도 아닙니다. 두 아이 모두 출생 직후 발급받은 유효한 SSN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 메론과 조단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3단계의 두 번째 질문에 “Yes”라고 답변합니 다. 즉, 질문 3과 4단계를 건 너될 수 있으며 5단계로 이동합니 다.

5단계. 카메론과 조단은 자신들이 번 금액을 합산 입금인 \$33,030라고 산정했습니다. 이 금액이 \$62,688 보다 적기 때 문에 6단계로 이동하여 세액공제를 산정합니 다.

6단계. 카메론과 조단은 EIC를 직접 산정하고 싶어 하므로 양 식 1040 지침에서 EIC 작업표를 작성합니 다.

EIC 작업표 작성하기. 카메론과 조단은 다음과 같이 작업표를 작성합니 다.

1. 카메론과 조단은 총 근로 소득 (\$33,030)을 라인 1에 입력 합니 다.
2. 세액공제를 찾기 위해 EIC 표로 이동합니 다. 카메론과 조 단은 \$33,000에서 \$33,050 사이의 범위에서 그들의 소득 인 \$33,030를 찾습니 다. 두 자녀 모두 유효한 SSN이 있 기 때문에 이 줄을 따라 *부부 공동 신고 아래의 아동 2명용 열로 이동하여* \$6,247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라인 2 에 \$6,247를 입력합니 다.
3. 그들의 AGI (\$33,555)를 라인 3에 입력하고 라인 1의 금 액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합니 다.
4. EIC 표에서 \$33,555를 찾고 라인 5에 \$6,131를 입력합니 다.
5. 그들은 라인 6에 \$6,131를 입력합니 다. 이것은 라인 2의 금액 (\$6,247)과 라인 5의 금액 (\$6,131) 중 더 작은 값입 니 다.
6. 그레이는 양식 1040의 라인 27에 \$6,131를 입력합니 다. 이제 스케줄 EIC (나중에 설명)를 작성하여 신고서에 첨부 합니 다. 그들은 기록을 위해 EIC 작업표를 보관합니 다.

세금 관련 도움을 얻는 방법

세금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세금 신고서 작성에 도 움이 필요하거나, 무료 간행물, 양식 또는 지침을 다운로드하 려면 [IRS.gov](https://www.irs.gov)를 방문하여 즉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찾으 십시오.

세금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모든 임금 및 소득 명세서 (양식 W-2, W-2G, 1099-R, 1099-MISC, 1099-NEC 등), 실업 수당 명세서 (우편 또는 디지털 형식으로) 또는 기타 정부 지급 명세 서 (양식 1099-G), 은행 및 투자 회사로부터 이자, 배당금 및 퇴직 명세서 (양식 1099)를 받은 후,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서를 직접 준비하거나 무료 신고서 작성대행 자격을 충족하는 지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를 고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 습니 다.

EIC를 청구하려면, 아래의 모든 질문에 “네” 라고 답변해야 합니다.

- | | 네 | 아니오 |
|--|--------------------------|--------------------------|
| 1. 귀하의 AGI가 다음 금액보다 적습니까?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없는 경우 \$18,591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25,511),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한 명인 경우 \$49,084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56,004) 또는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2명인 경우 \$55,768(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62,688), 또는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9,899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66,819)
(규칙 1 참조.)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2.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공동 신고 한다면 2024년 신고서 마감일 (연장 포함)전에 발급된 유효한 SSN를 각각 가지고 있습니까?
(규칙 2 참조.)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3. 귀하의 배우자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별거하는 배우자에 대한 특별 규칙을 충족합니까? (규칙 3 참조.) 2024년에 기혼 이 아니었다면 “네”라고 대답하십시오.
주의사항: 귀하가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네” 라고 대답해야하는 상황은, 납세자 구분이 부부 공동 신고인 경우에 한합니다.
(규칙 4 참조.)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4. 양식 2555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네” 라고 답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라고 답변합니다”. (규칙 5 참조.)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5. 귀하의 투자 소득이 \$11,600 이하입니까? (규칙 6 참조.)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6. 귀하의 총 근로 소득은 \$1 이상이지만 다음보다 적습니다.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없는 경우 \$18,591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25,511),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한 명인 경우 \$49,084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56,004) 또는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2명인 경우 \$55,768(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62,688), 또는
• 유효한 SSN이 있는 적격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9,899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66,819)
(규칙 7 그리고 15 참조.)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7. 귀하가 (a) 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가 아니거나 (b) 공동 신고를 하는 경우 “네” 라고 답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 라고 답변합니다. (규칙 10 그리고 13 참조.)
정지: 귀하가 EIC에 대한 청구를 원하는 적격 자녀가 있는 경우, 8번과 9번 질문에 답하고 10~12번을 건너뛰십시오. 적격 자녀가 없거나 다른 사람이 규칙 9 에 설명된 타이브레이커 규칙에 따라 귀하의 자녀를 적격 자녀로 취급할 자격이 있을 경우, 8번과 9번 질문을 건너뛰고 10~12번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8. 귀하의 자녀가 적격 자녀에 대한 관계, 연령, 거주 및 공동 신고서 테스트를 충족합니까? (규칙 8 참조.)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9. 귀하만 귀하의 자녀를 적격 자녀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을 “네” 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a) 적격 자녀가 다른 사람의 적격 자녀가 되기 위한 테스트를 충족하지 않거나, (b) 적격 자녀가 다른 사람의 적격 자녀가 되기 위한 테스트를 충족하지만 규칙 9 에 설명된 타이브레이커 규칙에 따라 귀하에게 해당 자녀를 적격 자녀로 취급할 자격이 있는 경우입니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10. 귀하 (또는 배우자,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2024년 말 만 25세이상 만65세 미만이었습니까? (규칙 11 참조.)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11. (a) 다른 사람의 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청구될 수 없거나 (b)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답변을 “네” 라고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 라고 답변합니다. (규칙 12 참조.)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12. 귀하는 미국에 있는 귀하의 주 거주지 (및 배우자의 주 거주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서 반년 이상 거주했습니까?
(규칙 14 참조.)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귀하에게 적용되는 어느 한 질문에 라도 “아니오” 라고 답했다면: EI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세금 신고서 작성 무료 옵션. 온라인 또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다음을 포함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Direct File.** 직접 신고 (Direct File)은 개인 연방 세금 신고서를 IRS에 직접적이고 안전하게 온라인으로 무료로 제출할 수 있는 영구적인 옵션입니다. Direct File은 특정 유형의 소득을 보고하고 특정 세액공제 및 공제를 신청하는 비교적 간단한 세금 신고서를 보유한 참여 주에 있는 납세자를 위한 옵션입니다. Direct File은 주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지만, 참여 주에 거주하는 경우 주 세금 신고서를 무료로 작성하고 제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주 정부 지원 도구로 안내합니다. [IRS.gov/DirectFile\(영어\)](https://www.irs.gov/DirectFile(영어))에서 더 자세한 내용, 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자주 묻는 질문들을 보십시오.
- **Free File.**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소프트웨어 또는 무료 신고서 기입 가능 양식을 사용하여 연방 개인 소득세 신고

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 신고 (Free File)을 통한 주 세금 신고서 작성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RS.gov/FreeFile](https://www.irs.gov/FreeFile)을 방문하여 무료 온라인 연방 세금 신고서 작성, 전자 제출 및 직접 입금 또는 납부 옵션의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VITA.** 자원봉사 소득세 신고 지원 (VITA) 프로그램은 중하위 소득층, 장애인 및 제한적 영어 구사 능력을 가진 세금 신고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한 개인에게 무료로 세무 지원을 제공합니다. [IRS.gov/VITA](https://www.irs.gov/VITA)를 방문하여 무료 IRS2Go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800-906-9887로 전화하여 무료 세금 신고서 작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 **TCE.** 고령자를 위한 세무 상담 (TCE) 프로그램은 특별히 만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합니다. TCE 자원봉사자들은 고령자 특유의 연금 및 은퇴 관련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IRS.gov/TCE](https://www.irs.gov/TCE)을 방문 또는 무료 IRS2Go 앱을 다운로드하여 무료 세금 신고서 작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 **MilTax.** 미군과 적격 재향군인은 Military OneSource를 통해 국방부가 제공하는 무료 세금 서비스인 밀텍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보려면 [MilitaryOneSource\(영어\)](https://www.MilitaryOneSource.com) ([MilitaryOneSource.mil/](https://www.MilitaryOneSource.com)) [MilTax\(영어\)](https://www.MilTax.com)를 방문하십시오.

또한 IRS는 무료 기입 가능 양식을 제공합니다. 이 양식은 소득에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작성한 다음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에 도움이 되는 온라인 도구 사용하기. [IRS.gov/Tools](https://www.irs.gov/Tools)에서 아래에 있는 정보를 얻으십시오.

- [IRS.gov/DirectFile\(영어\)](https://www.irs.gov/DirectFile)은 적격성 검사기를 제공하여 Direct File이 귀하의 세금 신고 필요성에 적합한 선택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근로 소득 세액공제 지원 \(IRS.gov/EITCAssistant\)](https://www.irs.gov/EITCAssistant)에 따라 근로 소득 세액공제 (EIC) 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 [온라인 EIN 신청 \(IRS.gov/EIN\)](https://www.irs.gov/EIN)은 고용주 식별 번호 (EIN)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세금 원천징수 추정기 \(IRS.gov/W4App\(영어\)\)](https://www.irs.gov/W4App)는 고용주가 귀하의 급여에서 원하는 원천징수 금액을 추정하기 손쉽게 합니다. 이것을 세금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 원천징수가 귀하의 환급, 세후 급여 또는 세금 잔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 [첫 주택 구매자 세액공제 계정 조회\(영어\) \(IRS.gov/HomeBuyer\(영어\)\)](https://www.irs.gov/HomeBuyer) 도구는 상환 및 계정 잔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판매세 공제 계산기\(영어\) \(IRS.gov/SalesTax\(영어\)\)](https://www.irs.gov/SalesTax)는 스케줄 A (양식 1040)에 공제를 항목화할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표시합니다.

 **세금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받기.** IRS.gov에서 현재 시사 및 세법 변경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www.irs.gov/Help: 가장 흔한 세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 [IRS.gov/ITA\(영어\)](https://www.irs.gov/ITA): 대화형 세금 도우미는 귀하가 입력한 여러 세금 주제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 [IRS.gov/Forms\(영어\)](https://www.irs.gov/Forms): 양식, 지침 및 간행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최신 세금 변경 사항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대화식 링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전자 신고 소프트웨어에서 세금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서를 작성해줄 사람이 필요합니까? 등록된 세무사, 공인 회계사 (CPA), 회계사 및 자격증 무보유자 등 다양한 종류의 세무 대리인들이 존재합니다. 세무 대리를 의뢰하기로 선택했다면 대행업자를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유료 세무 대리인이란:

- 신고서의 전반적인 정확성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 필수적으로 신고서에 서명해야 하고,
- 대리인 세금 식별 번호 (PTIN)를 필수적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비록 세무대리인이 항상 신고서에 서명을 하지만 대리인이 정확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모든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할 궁극적인 책임과 신고서에 신고된 모든 사항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유료로 세무 대리를 하는 사람은 세무에 관한 깊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세무 대리인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RS.gov에서 [세무 대리인 선택 요령](#)을 확인하십시오.

고용주들은 사업체 서비스 온라인 사용을 위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회 보장국 (SSA)은 [SSA.gov/employer\(영어\)](https://www.SSA.gov/employer)에서 CPA, 회계사, 등록 대리인 및 양식 W-2, 임금 및 세금 계산서 및 양식 W-2c, '수정된 임금 및 세금 내역서'를 처리하는 개인이 신속, 무료이며 안전한 온라인 W-2 제출 옵션을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 세금 계정. 개인 사업자, 파트너십 또는 S 법인이라면, IRS에 기록된 세금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사업체 계정으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IRS.gov/BusinessAccount](https://www.irs.gov/BusinessAccount)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십시오.

IRS 소셜 미디어. [IRS.gov/SocialMedia\(영어\)](https://www.irs.gov/SocialMedia)를 방문하여 IRS가 세금 변경, 사기 경보, 이니셔티브,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데 사용하는 다양한 소셜 미디어 도구를 볼 수 있습니다. IRS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이 최우선 순위입니다. 당국은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여 사용자와 공공 정보를 공유합니다.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SSN 또는 기타 기밀 정보를 **게시하지 마십시오.**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사용할 때는 항상 신원을 보호하십시오.

다음 IRS YouTube 채널은 영어, 스페인어, ASL로 다양한 세금 관련 주제에 대한 짧고 유익한 동영상을 제공합니다.

- [Youtube.com/irsvideos\(영어\)](https://www.YouTube.com/irsvideos).
- [Youtube.com/irsvideomultilingua\(한국어 클릭\)](https://www.YouTube.com/irsvideomultilingua).
- [Youtube.com/irsvideosASL\(영어\)](https://www.YouTube.com/irsvideosASL).

IRS 동영상 시청. IRS 동영상 포털 ([IRSDemos.gov\(영어\)](https://www.IRSDemos.gov))에는 개인, 소규모 사업체, 세무 전문가를 위한 동영상 및 음성 프레젠테이션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언어로 온라인 세금 정보 받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면 [IRS.gov/MyLanguage](https://www.irs.gov/MyLanguage)에서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 통역 (OPI) 서비스. IRS는 OPI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한적인 영어 구사 능력 (LEP)이 있는 납세자들에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OPI 서비스는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며 납세자 지원센터 (TAC), 대부분의 IRS 사무실 및 모든 VITA/TCE 신고서 사무실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OPI 서비스는 350 가지 이상의 언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가 있는 납세자들을 위한 보조 전화 상담 서비스 사용 가능. 보조 전화 상담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납세자는 833-690-0598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보조 전화 상담 서비스는 대체 미디어 형식 (예시, 점자, 대형 활자, 오디오 등등)의 현재 및 미래 보조 품목과 서비스에 관한 질문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보조 전화 상담 서비스는 귀하의 IRS 계정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세법, 환급 또는 계정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IRS.gov/LetUsHelp](https://www.irs.gov/LetUsHelp)를 방문하십시오

대체 미디어 선호도. 양식 9000, '대체 미디어 선호도' 또는 양식 9000(SP)은 특정 종류의 서신을 아래와 같은 형식의 서식으로 받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 표준 활자.
- 큰 활자.
- 점자.
- 오디오 (MP3).
- 일반 텍스트 파일 (TXT).
- 점자 준비 파일 (BRF).

재난. [IRS.gov/DisasterRelief\(영어\)](https://www.irs.gov/DisasterRelief(영어))에서 사용가능한 재난 세금 경감에 대해 검토해 보십시오.

세금 양식 및 간행물 얻기. [IRS.gov/Forms\(영어\)](https://www.irs.gov/Forms(영어))에서 필요한 모든 양식, 지침 및 간행물을 보거나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IRS.gov/OrderForms](https://www.irs.gov/OrderForms)에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친화적 양식. 서명이 필요한 모바일 친화적인 양식을 작성하려면 IRS 온라인 계정 (Online Account-OLA)가 필요합니다. 양식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사본을 다운로드하여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제출을 증명하려면 문서를 스캔해야 합니다. [IRS.gov/MobileFriendlyForms\(영어\)](https://www.irs.gov/MobileFriendlyForms(영어))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십시오.

세금 간행물 및 지침 전자책 (eBook) 형식으로 얻기. [IRS.gov/eBooks\(영어\)](https://www.irs.gov/eBooks(영어))에서 대부분의 세금 간행물 및 지침 (양식 1040 의 지침도 포함)을 모바일 기기를 통해 eBook 으로 다운로드 및 볼 수 있습니다.

IRS eBook은 애플사의 아이패드의 iBook을 이용해 테스트 되었습니다. 당국의 eBook은 다른 eBook 읽기 도구로는 테스트되지 않았으며 eBook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정 (개인 납세자 전용)에 접속하기. [IRS.gov/Account](https://www.irs.gov/Account)에서 연방 세금 계정에 대한 정보에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연도별로 분류된 미납 세액 잔액을 보십시오.
- 납부 계획의 세부사항 보기 또는 새로운 납부 계획을 신청하십시오.
- 세금 납부, 지난 5년간의 납부 내역 및 계류 또는 예정된 납부금을 보십시오.
- 가장 최근 세금 신고서의 주요 데이터, 및 증명서 등을 포함한 귀하의 세금 기록에 접속하십시오.
- 선택된 몇가지 IRS 통지서의 디지털 사본을 보십시오.
- 세무 전문가가 보낸 정보 승인 요청을 승락 또는 거절을 하십시오.
- 주소 또는 선호하는 연락 방법을 업데이트 하십시오.

세금 신고서 증명서 얻기. 온라인 계정으로 세금 신고 시즌 동안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세금 증명서, 가장 최근에 제출된 세금 신고서 검토 및 조정총소득을 볼 수 있습니다. [IRS.gov/Account](https://www.irs.gov/Account)에서 계정을 생성하거나 온라인 계정에 접속하십시오.

세무 전문가 계정. 이 도구는 세무 전문가가 귀하의 개인 납세자 IRS OLA에 접속 허가 제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IRS.gov/TaxProAccount\(영어\)](https://www.irs.gov/TaxProAccount(영어))를 방문하십시오.

직접 입금 사용. 세금 환급을 받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전자 신고를 하고 직접 입금을 선택하여 안전하게 전자 방식으로 귀하의 환급 금액을 금융 계좌에 직접 전달받는 것입니다. 직접 입금을 통해 수표의 실종, 도난, 소멸 및 IRS의 우송 불가로 인해 환송될 가능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10 명 중 8 명이 환급을 받기 위해 직접 입금을 사용합니다. 은행 계좌가 없다면 [IRS.gov/DirectDeposit](https://www.irs.gov/DirectDeposit)를 방문해 온라인 계정을 개설할 수 있는 은행이나 신용 조합을 찾을 수 있는 곳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십시오.

세금 관련 신원 도용 문제 신고 및 해결.

- 세금 관련 신원 도용은 누군가가 개인 정보를 훔쳐 세금 관련 사기를 저질렀을 때 발생합니다. 사기성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환급 또는 세액공제를 청구하기 위해 SSN이 사용된 경우 귀하의 세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RS는 납세자의 개인 정보 또는 금융 정보를 인증 또는 요청하기 위해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간략한 링크도 포함), 전화 또는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개인 식별 번호 (PIN), 비밀 번호 또는 크레딧 카드, 은행 또는 기타 금융 계정 관련 유사 정보도 포함됩니다.
- [IRS.gov/IdentityTheft](https://www.irs.gov/IdentityTheft)에서 납세자, 세무사와 기업을 위한 신원 도용 및 데이터 보안 보호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SSN을 분실 또는 도난당했거나, 귀하가 세금 관련 신원 도용의 피해자라고 의심되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 신분 보호 PIN (IP PIN)을 받으십시오. IP PIN이란 사기성 세금 신고서에 SSN이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배정된 여섯자리 숫자를 뜻합니다. IP PIN을 소지하고 있으면, 타인이 귀하의 SSN을 도용해 세금 신고서 제출을 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IRS.gov/IPPIN](https://www.irs.gov/IPPIN)을 방문하십시오.

환급 상태 확인하는 방법.

- [IRS.gov/Refunds](https://www.irs.gov/Refunds)를 방문하십시오.
- 모바일 기기에 IRS2Go 무료 앱을 다운로드하여 환급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 환급 관련 자동 직통 전화 800 -829-1954로 전화하십시오.



IRS는 근로 소득 세액공제 (EIC) 또는 추가 자녀 세액공제 (ACTC)를 청구하는 신고서의 경우, 2월 중순 이전에 환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연은 해당 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만이 아닌 전체 환급에 적용됩니다.

세금 납부하기. IRS에 내는 미국 세금 납부금은 미국 달러로 내야합니다. **디지털 자산은 받지 않습니다.** [IRS.gov/Payments](https://www.irs.gov/Payments)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하여 납부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보십시오.

- **IRS Direct Pay.** 일반 계좌 또는 저축 계좌에 무료로 개별 세금 고지서 또는 추정세를 직접 납부하십시오.
- **직불카드, 신용카드 또는 디지털 지급.** 승인된 납부 처리자를 선택하여 온라인 또는 전화로 세금을 납부하십시오.
- **전자 자금 인출.** 세금 신고서 소프트웨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연방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납부를 스케줄하십시오.
- **전자식 연방 세금 납부 시스템.** 이것은 사업체에 가장 적합한 옵션입니다. 등록이 요구됩니다.

- **수표 또는 우편환**: 고지서 또는 지침에 열거된 주소로 납부 금액을 우편으로 보냅니다.
- **현금**: 참여 소매점에서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당일 송금**: 금융 기관에서 당일 송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금융 기관에 연락하여 사용 가능 여부, 비용 및 마감 시간을 문의하십시오.

현재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IRS.gov/Payments](https://www.irs.gov/Payments)에 방문하여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 현재 세금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온라인 납부 합의 (IRS.gov/OPA)**를 신청하여 월 할부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십시오. 온라인 절차를 완료하면 합의 승인 여부를 즉시 통보받게 됩니다.
- **세액 조정 제안 사전 자격 확인(영어)**를 사용하여 총 체납 세액 보다 적은 액수로 세금 부채 종결에 합의할 수 있을지를 확인하십시오. 세액 조정 제안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RS.gov/OIC](https://www.irs.gov/OIC)에서 확인하십시오.

수정된 신고서 제출. [IRS.gov/Form1040X](https://www.irs.gov/Form1040X)를 방문하여 업데이트 사항 또는 정보를 찾으십시오.

수정 신고서 현황 확인. [IRS.gov/WMAR](https://www.irs.gov/WMAR)를 방문하여 양식 1040-X 수정된 신고서의 현황을 추적하십시오.



당국의 시스템에 귀하가 제출한 수정된 신고서가 보여져야 하는 경우 이를 제출 후 최대 3 주가 소요될 수 있으며, 이의 처리는 최대 16 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우송받은 IRS 통지서 또는 서신 이해하기. [IRS.gov/Notices](https://www.irs.gov/Notices)를 방문하여 IRS 통지서 또는 서신의 응답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IRS Document Upload Tool. 문서 업로드 도구 (Document Upload Tool)를 사용하여 IRS.gov를 통해 요구되는 문서들을 안전하게 업로드하여 적격한 IRS 통지서 및 서신에 대해 디지털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IRS.gov/DUT\(영어\)](https://www.irs.gov/DUT(영어))를 참조하십시오.

스케줄 LEP. 스케줄 LEP (양식 1040), ‘언어 선호도 변경 요청’을 사용하여 IRS의 통지서, 서신, 또는 기타 서면 연락을 가능한 경우 대체 언어로 받기 선호한다는 것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요청한 언어로 즉시 서면 연락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LEP 납세자에 대한 IRS의 헌신은 2023년에 번역 제공 시작이 예정된 다년의 타임라인의 일환입니다. 고지서 및 서신을 비롯한 서면 연락들은 귀하가 선호하는 언어로 번역되기 전까지 영문으로 된 서신을 받을 것입니다.

현지 TAC 연락하기. TAC를 방문하지 않고도 IRS.gov에서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IRS.gov/LetUsHelp](https://www.irs.gov/LetUsHelp)를 방문하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주제에 대해 확인하십시오. 여전히 도움이 필요하고, 세금 문제를 온라인이나 전화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TAC에서 세금 관련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제 모든 TAC에서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오랜 대기 시간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IRS.gov/TACLocator\(영어\)](https://www.irs.gov/TACLocator(영어))에서 가장 가까운 TAC를 찾고 시간, 사용 가능한 서비스 및 예약 옵션을 확인하십시오. 또는 IRS2Go 앱의 연결 유지 탭에서 문의하기 옵션을 선택하고 'Local Offices' (현지 사무소)를 클릭하십시오.

다음은 국회가 설립한 독립 조직인 Taxpayer Advocate Service (납세자 보호 서비스)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납세자 보호 서비스 (TAS)가 도와드립니다 납세자 보호 서비스란 무엇입니까?

납세자 보호 서비스 (TAS)는 국세청 (IRS) 내 독립 기관입니다. TAS는 납세자를 돕고, 문제 방지 혹은 해결을 위해 행정 및 입법적 권고를 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본기관은 모든 납세자가 공정하게 대우받고 납세자 권리 헌장에 따른 귀하의 권리를 알고 이해하도록 일합니다. 본기관은 IRS에서 귀하의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TAS가 돕는 방법

TAS는 IRS에서 귀하 본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본인 스스로 IRS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먼저 시도한 다음에, 해결되지 않다면 TAS로 오십시오. 본기관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TAS는 개인, 기업 및 면세 단체를 포함한 모든 납세자 (및 그 대리인)들을 돕습니다. IRS 문제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했거나, IRS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지만 해결하지 못했거나, IRS 시스템, 절차 또는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경우 TAS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세금 주제에 대해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려면 [www.TaxpayerAdvocate.IRS.gov\(영어\)](https://www.TaxpayerAdvocate.IRS.gov(영어))를 방문하십시오. 이 사이트는 신고서에 실수가 있거나 IRS로부터 고지서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같은 일반적인 세금 문제 및 상황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TAS는 많은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체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www.IRS.gov/SAMS에서 시스템 문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 식별 정보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TAS 연락 방법

TAS의 사무소는 미국의 모든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지 보호관의 전화번호를 찾아보려면:

- [www.TaxpayerAdvocate.IRS.gov/Contact-Us\(영어\)](https://www.TaxpayerAdvocate.IRS.gov/Contact-Us(영어))를 방문하십시오;
- 현지 주소록, 또는
- TAS 수신자 부담 번호인 877-777-4778으로 전화하십시오.

납세자로서의 나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납세자 권리장전에는 IRS를 상대할 때 모든 납세자가 가지는 10가지 기본 권리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권리, 해당 권리가 귀하에게 의미하는 바, IRS를 상대할 수 있는 특정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TaxpayerAdvocate.IRS.gov/Taxpayer-Rights를 참조하십시오. TAS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IRS가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세법을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024년 근로 소득 세액공제 (EIC) 표 주의사항. 이것은 세율표가 아닙니다.

- 1. 세액공제를 찾으려면 “이상 - 미만” 열을 보고 EIC 작업표에서 조회하는 금액이 포함된 행을 찾습니다.
- 2. 그런 다음, 납세자 구분 및 이전에 정의된 SSN을 가지고 있는 자녀 수를 포함하는 열로 이동합니다. EIC 작업표에 있는 해당 열의 세액공제 금액을 입력합니다.
- 예. 납세자 구분이 미혼이고 적격 자녀가 한 명 있으며 EIC 작업표에서 조회하는 금액이 \$2,455인 경우 \$842를 입력합니다.

워크시트에서 조회한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그리고 귀하의 납세자 구분은—			
		미혼, 세대주 또는 적격 사별 배우자 배우자이고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0	1	2	3
이상	미만	귀하의 공제—			
2,400	2,450	186	825	970	1,091
2,450	2,500	189	842	990	1,114

이 작업표에서 찾고 있는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의 납세자 구분은—							
		미혼, 세대주, 또는 적격 생존 배우자★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부부 공동 신고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이상	미만	0	1	2	3	0	1	2	3
1	50	2	9	10	11	2	9	10	11
50	100	6	26	30	34	6	26	30	34
100	150	10	43	50	56	10	43	50	56
150	200	13	60	70	79	13	60	70	79
200	250	17	77	90	101	17	77	90	101
250	300	21	94	110	124	21	94	110	124
300	350	25	111	130	146	25	111	130	146
350	400	29	128	150	169	29	128	150	169
400	450	33	145	170	191	33	145	170	191
450	500	36	162	190	214	36	162	190	214
500	550	40	179	210	236	40	179	210	236
550	600	44	196	230	259	44	196	230	259
600	650	48	213	250	281	48	213	250	281
650	700	52	230	270	304	52	230	270	304
700	750	55	247	290	326	55	247	290	326
750	800	59	264	310	349	59	264	310	349
800	850	63	281	330	371	63	281	330	371
850	900	67	298	350	394	67	298	350	394
900	950	71	315	370	416	71	315	370	416
950	1,000	75	332	390	439	75	332	390	439
1,000	1,050	78	349	410	461	78	349	410	461
1,050	1,100	82	366	430	484	82	366	430	484
1,100	1,150	86	383	450	506	86	383	450	506
1,150	1,200	90	400	470	529	90	400	470	529
1,200	1,250	94	417	490	551	94	417	490	551
1,250	1,300	98	434	510	574	98	434	510	574
1,300	1,350	101	451	530	596	101	451	530	596
1,350	1,400	105	468	550	619	105	468	550	619
1,400	1,450	109	485	570	641	109	485	570	641
1,450	1,500	113	502	590	664	113	502	590	664
1,500	1,550	117	519	610	686	117	519	610	686
1,550	1,600	120	536	630	709	120	536	630	709
1,600	1,650	124	553	650	731	124	553	650	731
1,650	1,700	128	570	670	754	128	570	670	754
1,700	1,750	132	587	690	776	132	587	690	776
1,750	1,800	136	604	710	799	136	604	710	799
1,800	1,850	140	621	730	821	140	621	730	821
1,850	1,900	143	638	750	844	143	638	750	844
1,900	1,950	147	655	770	866	147	655	770	866
1,950	2,000	151	672	790	889	151	672	790	889
2,000	2,050	155	689	810	911	155	689	810	911
2,050	2,100	159	706	830	934	159	706	830	934
2,100	2,150	163	723	850	956	163	723	850	956
2,150	2,200	166	740	870	979	166	740	870	979
2,200	2,250	170	757	890	1,001	170	757	890	1,001
2,250	2,300	174	774	910	1,024	174	774	910	1,024
2,300	2,350	178	791	930	1,046	178	791	930	1,046
2,350	2,400	182	808	950	1,069	182	808	950	1,069
2,400	2,450	186	825	970	1,091	186	825	970	1,091
2,450	2,500	189	842	990	1,114	189	842	990	1,114
2,500	2,550	193	859	1,010	1,136	193	859	1,010	1,136
2,550	2,600	197	876	1,030	1,159	197	876	1,030	1,159
2,600	2,650	201	893	1,050	1,181	201	893	1,050	1,181
2,650	2,700	205	910	1,070	1,204	205	910	1,070	1,204
2,700	2,750	208	927	1,090	1,226	208	927	1,090	1,226
2,750	2,800	212	944	1,110	1,249	212	944	1,110	1,249
2,800	2,850	216	961	1,130	1,271	216	961	1,130	1,271
2,850	2,900	220	978	1,150	1,294	220	978	1,150	1,294
2,900	2,950	224	995	1,170	1,316	224	995	1,170	1,316
2,950	3,000	228	1,012	1,190	1,339	228	1,012	1,190	1,339
3,000	3,050	231	1,029	1,210	1,361	231	1,029	1,210	1,361
3,050	3,100	235	1,046	1,230	1,384	235	1,046	1,230	1,384
3,100	3,150	239	1,063	1,250	1,406	239	1,063	1,250	1,406
3,150	3,200	243	1,080	1,270	1,429	243	1,080	1,270	1,429
3,200	3,250	247	1,097	1,290	1,451	247	1,097	1,290	1,451
3,250	3,300	251	1,114	1,310	1,474	251	1,114	1,310	1,474
3,300	3,350	254	1,131	1,330	1,496	254	1,131	1,330	1,496
3,350	3,400	258	1,148	1,350	1,519	258	1,148	1,350	1,519
3,400	3,450	262	1,165	1,370	1,541	262	1,165	1,370	1,541
3,450	3,500	266	1,182	1,390	1,564	266	1,182	1,390	1,564
3,500	3,550	270	1,199	1,410	1,586	270	1,199	1,410	1,586
3,550	3,600	273	1,216	1,430	1,609	273	1,216	1,430	1,609
3,600	3,650	277	1,233	1,450	1,631	277	1,233	1,450	1,631
3,650	3,700	281	1,250	1,470	1,654	281	1,250	1,470	1,654
3,700	3,750	285	1,267	1,490	1,676	285	1,267	1,490	1,676
3,750	3,800	289	1,284	1,510	1,699	289	1,284	1,510	1,699
3,800	3,850	293	1,301	1,530	1,721	293	1,301	1,530	1,721
3,850	3,900	296	1,318	1,550	1,744	296	1,318	1,550	1,744
3,900	3,950	300	1,335	1,570	1,766	300	1,335	1,570	1,766
3,950	4,000	304	1,352	1,590	1,789	304	1,352	1,590	1,789
4,000	4,050	308	1,369	1,610	1,811	308	1,369	1,610	1,811
4,050	4,100	312	1,386	1,630	1,834	312	1,386	1,630	1,834
4,100	4,150	316	1,403	1,650	1,856	316	1,403	1,650	1,856
4,150	4,200	319	1,420	1,670	1,879	319	1,420	1,670	1,879
4,200	4,250	323	1,437	1,690	1,901	323	1,437	1,690	1,901
4,250	4,300	327	1,454	1,710	1,924	327	1,454	1,710	1,924
4,300	4,350	331	1,471	1,730	1,946	331	1,471	1,730	1,946
4,350	4,400	335	1,488	1,750	1,969	335	1,488	1,750	1,969
4,400	4,450	339	1,505	1,770	1,991	339	1,505	1,770	1,991
4,450	4,500	342	1,522	1,790	2,014	342	1,522	1,790	2,014
4,500	4,550	346	1,539	1,810	2,036	346	1,539	1,810	2,036
4,550	4,600	350	1,556	1,830	2,059	350	1,556	1,830	2,059
4,600	4,650	354	1,573	1,850	2,081	354	1,573	1,850	2,081
4,650	4,700	358	1,590	1,870	2,104	358	1,590	1,870	2,104
4,700	4,750	361	1,607	1,890	2,126	361	1,607	1,890	2,126
4,750	4,800	365	1,624	1,910	2,149	365	1,624	1,910	2,149
4,800	4,850	369	1,641	1,930	2,171	369	1,641	1,930	2,171
4,850	4,900	373	1,658	1,950	2,194	373	1,658	1,950	2,194
4,900	4,950	377	1,675	1,970	2,216	377	1,675	1,970	2,216
4,950	5,000	381	1,692	1,990	2,239	381	1,692	1,990	2,239
5,000	5,050	384	1,709	2,010	2,261	384	1,709	2,010	2,261
5,050	5,100	388	1,726	2,030	2,284	388	1,726	2,030	2,284
5,100	5,150	392	1,743	2,050	2,306	392	1,743	2,050	2,306
5,150	5,200	396	1,760	2,070	2,329	396	1,760	2,070	2,329
5,200	5,250	400	1,777	2,090	2,351	400	1,777	2,090	2,351
5,250	5,300	404	1,794	2,110	2,374	404	1,794	2,110	2,374
5,300	5,350	407	1,811	2,130	2,396	407	1,811	2,130	2,396
5,350	5,400	411	1,828	2,150	2,419	411	1,828	2,150	2,419
5,400	5,450	415	1,845	2,170	2,441	415	1,845	2,170	2,441
5,450	5,500	419							

근로 소득 세액 공제(EITC)표 - 계속됨

(주의, 세액표가 아닙니다.)

이 작업표에서 찾고 있는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의 납세자 구분이-							
		미혼, 세대주, 또는 적격 생존 배우자*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부부 공동 신고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0	1	2	3	0	1	2	3
이상	미만	귀하의 세액공제는-				귀하의 세액공제는-			
5,600	5,650	430	1,913	2,250	2,531	430	1,913	2,250	2,531
5,650	5,700	434	1,930	2,270	2,554	434	1,930	2,270	2,554
5,700	5,750	438	1,947	2,290	2,576	438	1,947	2,290	2,576
5,750	5,800	442	1,964	2,310	2,599	442	1,964	2,310	2,599
5,800	5,850	446	1,981	2,330	2,621	446	1,981	2,330	2,621
5,850	5,900	449	1,998	2,350	2,644	449	1,998	2,350	2,644
5,900	5,950	453	2,015	2,370	2,666	453	2,015	2,370	2,666
5,950	6,000	457	2,032	2,390	2,689	457	2,032	2,390	2,689
6,000	6,050	461	2,049	2,410	2,711	461	2,049	2,410	2,711
6,050	6,100	465	2,066	2,430	2,734	465	2,066	2,430	2,734
6,100	6,150	469	2,083	2,450	2,756	469	2,083	2,450	2,756
6,150	6,200	472	2,100	2,470	2,779	472	2,100	2,470	2,779
6,200	6,250	476	2,117	2,490	2,801	476	2,117	2,490	2,801
6,250	6,300	480	2,134	2,510	2,824	480	2,134	2,510	2,824
6,300	6,350	484	2,151	2,530	2,846	484	2,151	2,530	2,846
6,350	6,400	488	2,168	2,550	2,869	488	2,168	2,550	2,869
6,400	6,450	492	2,185	2,570	2,891	492	2,185	2,570	2,891
6,450	6,500	495	2,202	2,590	2,914	495	2,202	2,590	2,914
6,500	6,550	499	2,219	2,610	2,936	499	2,219	2,610	2,936
6,550	6,600	503	2,236	2,630	2,959	503	2,236	2,630	2,959
6,600	6,650	507	2,253	2,650	2,981	507	2,253	2,650	2,981
6,650	6,700	511	2,270	2,670	3,004	511	2,270	2,670	3,004
6,700	6,750	514	2,287	2,690	3,026	514	2,287	2,690	3,026
6,750	6,800	518	2,304	2,710	3,049	518	2,304	2,710	3,049
6,800	6,850	522	2,321	2,730	3,071	522	2,321	2,730	3,071
6,850	6,900	526	2,338	2,750	3,094	526	2,338	2,750	3,094
6,900	6,950	530	2,355	2,770	3,116	530	2,355	2,770	3,116
6,950	7,000	534	2,372	2,790	3,139	534	2,372	2,790	3,139
7,000	7,050	537	2,389	2,810	3,161	537	2,389	2,810	3,161
7,050	7,100	541	2,406	2,830	3,184	541	2,406	2,830	3,184
7,100	7,150	545	2,423	2,850	3,206	545	2,423	2,850	3,206
7,150	7,200	549	2,440	2,870	3,229	549	2,440	2,870	3,229
7,200	7,250	553	2,457	2,890	3,251	553	2,457	2,890	3,251
7,250	7,300	557	2,474	2,910	3,274	557	2,474	2,910	3,274
7,300	7,350	560	2,491	2,930	3,296	560	2,491	2,930	3,296
7,350	7,400	564	2,508	2,950	3,319	564	2,508	2,950	3,319
7,400	7,450	568	2,525	2,970	3,341	568	2,525	2,970	3,341
7,450	7,500	572	2,542	2,990	3,364	572	2,542	2,990	3,364
7,500	7,550	576	2,559	3,010	3,386	576	2,559	3,010	3,386
7,550	7,600	579	2,576	3,030	3,409	579	2,576	3,030	3,409
7,600	7,650	583	2,593	3,050	3,431	583	2,593	3,050	3,431
7,650	7,700	587	2,610	3,070	3,454	587	2,610	3,070	3,454
7,700	7,750	591	2,627	3,090	3,476	591	2,627	3,090	3,476
7,750	7,800	595	2,644	3,110	3,499	595	2,644	3,110	3,499
7,800	7,850	599	2,661	3,130	3,521	599	2,661	3,130	3,521
7,850	7,900	602	2,678	3,150	3,544	602	2,678	3,150	3,544
7,900	7,950	606	2,695	3,170	3,566	606	2,695	3,170	3,566
7,950	8,000	610	2,712	3,190	3,589	610	2,712	3,190	3,589
8,000	8,050	614	2,729	3,210	3,611	614	2,729	3,210	3,611
8,050	8,100	618	2,746	3,230	3,634	618	2,746	3,230	3,634
8,100	8,150	622	2,763	3,250	3,656	622	2,763	3,250	3,656
8,150	8,200	625	2,780	3,270	3,679	625	2,780	3,270	3,679
8,200	8,250	629	2,797	3,290	3,701	629	2,797	3,290	3,701
8,250	8,300	632	2,814	3,310	3,724	632	2,814	3,310	3,724
8,300	8,350	632	2,831	3,330	3,746	632	2,831	3,330	3,746
8,350	8,400	632	2,848	3,350	3,769	632	2,848	3,350	3,769
8,400	8,450	632	2,865	3,370	3,791	632	2,865	3,370	3,791
8,450	8,500	632	2,882	3,390	3,814	632	2,882	3,390	3,814
8,500	8,550	632	2,899	3,410	3,836	632	2,899	3,410	3,836
8,550	8,600	632	2,916	3,430	3,859	632	2,916	3,430	3,859
8,600	8,650	632	2,933	3,450	3,881	632	2,933	3,450	3,881
8,650	8,700	632	2,950	3,470	3,904	632	2,950	3,470	3,904
8,700	8,750	632	2,967	3,490	3,926	632	2,967	3,490	3,926
8,750	8,800	632	2,984	3,510	3,949	632	2,984	3,510	3,949
8,800	8,850	632	3,001	3,530	3,971	632	3,001	3,530	3,971
8,850	8,900	632	3,018	3,550	3,994	632	3,018	3,550	3,994
8,900	8,950	632	3,035	3,570	4,016	632	3,035	3,570	4,016
8,950	9,000	632	3,052	3,590	4,039	632	3,052	3,590	4,039
9,000	9,050	632	3,069	3,610	4,061	632	3,069	3,610	4,061
9,050	9,100	632	3,086	3,630	4,084	632	3,086	3,630	4,084
9,100	9,150	632	3,103	3,650	4,106	632	3,103	3,650	4,106
9,150	9,200	632	3,120	3,670	4,129	632	3,120	3,670	4,129

* 귀하의 납세자 구분이 부부 개별 신고이며 EIC에 적격할 경우 이열을 사용하십시오.

(계속됨)

근로 소득 세액 공제(EITC)표 - 계속됨

(주의, 세액표가 아닙니다.)

이 작업표에서 찾고 있는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의 납세자 구분이-								이 작업표에서 찾고 있는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의 납세자 구분이-									
	미혼, 세대주, 또는 적격 생존 배우자*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부부 공동 신고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미혼, 세대주, 또는 적격 생존 배우자*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부부 공동 신고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이상	미만	귀하의 세액공제는-				귀하의 세액공제는-				이상	미만	귀하의 세액공제는-				귀하의 세액공제는-			
12,800	12,850	441	4,213	5,130	5,771	632	4,213	5,130	5,771	16,400	16,450	166	4,213	6,570	7,391	632	4,213	6,570	7,391
12,850	12,900	437	4,213	5,150	5,794	632	4,213	5,150	5,794	16,450	16,500	162	4,213	6,590	7,414	632	4,213	6,590	7,414
12,900	12,950	433	4,213	5,170	5,816	632	4,213	5,170	5,816	16,500	16,550	158	4,213	6,610	7,436	632	4,213	6,610	7,436
12,950	13,000	430	4,213	5,190	5,839	632	4,213	5,190	5,839	16,550	16,600	154	4,213	6,630	7,459	632	4,213	6,630	7,459
13,000	13,050	426	4,213	5,210	5,861	632	4,213	5,210	5,861	16,600	16,650	150	4,213	6,650	7,481	632	4,213	6,650	7,481
13,050	13,100	422	4,213	5,230	5,884	632	4,213	5,230	5,884	16,650	16,700	147	4,213	6,670	7,504	632	4,213	6,670	7,504
13,100	13,150	418	4,213	5,250	5,906	632	4,213	5,250	5,906	16,700	16,750	143	4,213	6,690	7,526	632	4,213	6,690	7,526
13,150	13,200	414	4,213	5,270	5,929	632	4,213	5,270	5,929	16,750	16,800	139	4,213	6,710	7,549	632	4,213	6,710	7,549
13,200	13,250	411	4,213	5,290	5,951	632	4,213	5,290	5,951	16,800	16,850	135	4,213	6,730	7,571	632	4,213	6,730	7,571
13,250	13,300	407	4,213	5,310	5,974	632	4,213	5,310	5,974	16,850	16,900	131	4,213	6,750	7,594	632	4,213	6,750	7,594
13,300	13,350	403	4,213	5,330	5,996	632	4,213	5,330	5,996	16,900	16,950	127	4,213	6,770	7,616	632	4,213	6,770	7,616
13,350	13,400	399	4,213	5,350	6,019	632	4,213	5,350	6,019	16,950	17,000	124	4,213	6,790	7,639	632	4,213	6,790	7,639
13,400	13,450	395	4,213	5,370	6,041	632	4,213	5,370	6,041	17,000	17,050	120	4,213	6,810	7,661	632	4,213	6,810	7,661
13,450	13,500	391	4,213	5,390	6,064	632	4,213	5,390	6,064	17,050	17,100	116	4,213	6,830	7,684	632	4,213	6,830	7,684
13,500	13,550	388	4,213	5,410	6,086	632	4,213	5,410	6,086	17,100	17,150	112	4,213	6,850	7,706	632	4,213	6,850	7,706
13,550	13,600	384	4,213	5,430	6,109	632	4,213	5,430	6,109	17,150	17,200	108	4,213	6,870	7,729	632	4,213	6,870	7,729
13,600	13,650	380	4,213	5,450	6,131	632	4,213	5,450	6,131	17,200	17,250	105	4,213	6,890	7,751	632	4,213	6,890	7,751
13,650	13,700	376	4,213	5,470	6,154	632	4,213	5,470	6,154	17,250	17,300	101	4,213	6,910	7,774	630	4,213	6,910	7,774
13,700	13,750	372	4,213	5,490	6,176	632	4,213	5,490	6,176	17,300	17,350	97	4,213	6,930	7,796	626	4,213	6,930	7,796
13,750	13,800	368	4,213	5,510	6,199	632	4,213	5,510	6,199	17,350	17,400	93	4,213	6,950	7,819	622	4,213	6,950	7,819
13,800	13,850	365	4,213	5,530	6,221	632	4,213	5,530	6,221	17,400	17,450	89	4,213	6,960	7,830	619	4,213	6,960	7,830
13,850	13,900	361	4,213	5,550	6,244	632	4,213	5,550	6,244	17,450	17,500	85	4,213	6,960	7,830	615	4,213	6,960	7,830
13,900	13,950	357	4,213	5,570	6,266	632	4,213	5,570	6,266	17,500	17,550	82	4,213	6,960	7,830	611	4,213	6,960	7,830
13,950	14,000	353	4,213	5,590	6,289	632	4,213	5,590	6,289	17,550	17,600	78	4,213	6,960	7,830	607	4,213	6,960	7,830
14,000	14,050	349	4,213	5,610	6,311	632	4,213	5,610	6,311	17,600	17,650	74	4,213	6,960	7,830	603	4,213	6,960	7,830
14,050	14,100	346	4,213	5,630	6,334	632	4,213	5,630	6,334	17,650	17,700	70	4,213	6,960	7,830	599	4,213	6,960	7,830
14,100	14,150	342	4,213	5,650	6,356	632	4,213	5,650	6,356	17,700	17,750	66	4,213	6,960	7,830	596	4,213	6,960	7,830
14,150	14,200	338	4,213	5,670	6,379	632	4,213	5,670	6,379	17,750	17,800	62	4,213	6,960	7,830	592	4,213	6,960	7,830
14,200	14,250	334	4,213	5,690	6,401	632	4,213	5,690	6,401	17,800	17,850	59	4,213	6,960	7,830	588	4,213	6,960	7,830
14,250	14,300	330	4,213	5,710	6,424	632	4,213	5,710	6,424	17,850	17,900	55	4,213	6,960	7,830	584	4,213	6,960	7,830
14,300	14,350	326	4,213	5,730	6,446	632	4,213	5,730	6,446	17,900	17,950	51	4,213	6,960	7,830	580	4,213	6,960	7,830
14,350	14,400	323	4,213	5,750	6,469	632	4,213	5,750	6,469	17,950	18,000	47	4,213	6,960	7,830	577	4,213	6,960	7,830
14,400	14,450	319	4,213	5,770	6,491	632	4,213	5,770	6,491	18,000	18,050	43	4,213	6,960	7,830	573	4,213	6,960	7,830
14,450	14,500	315	4,213	5,790	6,514	632	4,213	5,790	6,514	18,050	18,100	40	4,213	6,960	7,830	569	4,213	6,960	7,830
14,500	14,550	311	4,213	5,810	6,536	632	4,213	5,810	6,536	18,100	18,150	36	4,213	6,960	7,830	565	4,213	6,960	7,830
14,550	14,600	307	4,213	5,830	6,559	632	4,213	5,830	6,559	18,150	18,200	32	4,213	6,960	7,830	561	4,213	6,960	7,830
14,600	14,650	303	4,213	5,850	6,581	632	4,213	5,850	6,581	18,200	18,250	28	4,213	6,960	7,830	557	4,213	6,960	7,830
14,650	14,700	300	4,213	5,870	6,604	632	4,213	5,870	6,604	18,250	18,300	24	4,213	6,960	7,830	554	4,213	6,960	7,830
14,700	14,750	296	4,213	5,890	6,626	632	4,213	5,890	6,626	18,300	18,350	20	4,213	6,960	7,830	550	4,213	6,960	7,830
14,750	14,800	292	4,213	5,910	6,649	632	4,213	5,910	6,649	18,350	18,400	17	4,213	6,960	7,830	546	4,213	6,960	7,830
14,800	14,850	288	4,213	5,930	6,671	632	4,213	5,930	6,671	18,400	18,450	13	4,213	6,960	7,830	542	4,213	6,960	7,830
14,850	14,900	284	4,213	5,950	6,694	632	4,213	5,950	6,694	18,450	18,500	9	4,213	6,960	7,830	538	4,213	6,960	7,830
14,900	14,950	280	4,213	5,970	6,716	632	4,213	5,970	6,716	18,500	18,550	5	4,213	6,960	7,830	534	4,213	6,960	7,830
14,950	15,000	277	4,213	5,990	6,739	632	4,213	5,990	6,739	18,550	18,600	*	4,213	6,960	7,830	531	4,213	6,960	7,830
15,000	15,050	273	4,213	6,010	6,761	632	4,213	6,010	6,761	18,600	18,650	0	4,213	6,960	7,830	527	4,213	6,960	7,830
15,050	15,100	269	4,213	6,030	6,784	632	4,213	6,030	6,784	18,650	18,700	0	4,213	6,960	7,830	523	4,213	6,960	7,830
15,100	15,150	265	4,213	6,050	6,806	632	4,213	6,050	6,806	18,700	18,750	0	4,213	6,960	7,830	519	4,213	6,960	7,830
15,150	15,200	261	4,213	6,070	6,829	632	4,213	6,070	6,829	18,750	18,800	0	4,213	6,960	7,830	515	4,213	6,960	7,830
15,200	15,250	258	4,213	6,090	6,851	632	4,213	6,090	6,851	18,800	18,850	0	4,213	6,960	7,830	512	4,213	6,960	7,830
15,250	15,300	254	4,213	6,110	6,874	632	4,213	6,110	6,874	18,850	18,900	0	4,213	6,960	7,830	508	4,213	6,960	7,830
15,300	15,350	250	4,213	6,130	6,896	632	4,213	6,130	6,896	18,900	18,950	0	4,213	6,960	7,830	504	4,213	6,960	7,830
15,350	15,400	246	4,213	6,150	6,919	632	4,213	6,150	6,919	18,950	19,000	0	4,213	6,960	7,830	500	4,213	6,960	7,830
15,400	15,450	242	4,213	6,170	6,941	632	4,213	6,170	6,941	19,000	19,050	0	4,213	6,960	7,830	496	4,213	6,960	7,830
15,450	15,500	238	4,213	6,190	6,964	632	4,213	6,190	6,964	19,050	19,100	0	4,213	6,960	7,830	492	4,213	6,960	7,830
15,500	15,550	235	4,213	6,210	6,986	632	4,213	6,210	6,986	19,100	19,150	0	4,213	6,960	7,830	489	4,213	6,960	7,830
15,550	15,600	231	4,213	6,230	7,009	632	4,213	6,230	7,009	19,150	19,200	0	4,213	6,960	7,830	485	4,213	6,960	7,830
15,600	15,650	227	4,213	6,250	7,031	632	4,213	6,250	7,031	19,200	19,250	0	4,213	6,960	7,830	481	4,213	6,960	7,830
15,650	15,700	223	4,213	6,270	7,054	632	4,213	6,270	7,054	19,250	19,300	0	4,213	6,960	7,830	477	4,213	6,960	7,830
15,700	15,750	219	4,213	6,290	7,076	632	4,2												

근로 소득 세액 공제(EITC)표 - 계속됨

(주의, 세액표가 아닙니다.)

이 작업표에서 찾고 있는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의 납세자 구분이-								이 작업표에서 찾고 있는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의 납세자 구분이-																	
		미혼, 세대주, 또는 적격 생존 배우자★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부부 공동 신고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미혼, 세대주, 또는 적격 생존 배우자★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부부 공동 신고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이상	미만	귀하의 세액공제는-				귀하의 세액공제는-				이상	미만	귀하의 세액공제는-				귀하의 세액공제는-													
20,000	20,050	0	4,213	6,960	7,830	420	4,213	6,960	7,830	23,200	23,250	0	4,132	6,854	7,724	175	4,213	6,960	7,830	23,250	23,300	0	4,124	6,843	7,713	171	4,213	6,960	7,830
20,050	20,100	0	4,213	6,960	7,830	416	4,213	6,960	7,830	23,300	23,350	0	4,116	6,833	7,703	167	4,213	6,960	7,830	23,350	23,400	0	4,108	6,822	7,692	163	4,213	6,960	7,830
20,100	20,150	0	4,213	6,960	7,830	412	4,213	6,960	7,830	23,400	23,450	0	4,100	6,812	7,682	160	4,213	6,960	7,830	23,450	23,500	0	4,092	6,801	7,671	156	4,213	6,960	7,830
20,150	20,200	0	4,213	6,960	7,830	408	4,213	6,960	7,830	23,500	23,550	0	4,084	6,790	7,660	152	4,213	6,960	7,830	23,550	23,600	0	4,076	6,780	7,650	148	4,213	6,960	7,830
20,200	20,250	0	4,213	6,960	7,830	404	4,213	6,960	7,830	23,600	23,650	0	4,068	6,769	7,639	144	4,213	6,960	7,830	23,650	23,700	0	4,060	6,759	7,629	140	4,213	6,960	7,830
20,250	20,300	0	4,213	6,960	7,830	401	4,213	6,960	7,830	23,700	23,750	0	4,052	6,748	7,618	137	4,213	6,960	7,830	23,750	23,800	0	4,044	6,738	7,608	133	4,213	6,960	7,830
20,300	20,350	0	4,213	6,960	7,830	397	4,213	6,960	7,830	23,800	23,850	0	4,036	6,727	7,597	129	4,213	6,960	7,830	23,850	23,900	0	4,028	6,717	7,587	125	4,213	6,960	7,830
20,350	20,400	0	4,213	6,960	7,830	393	4,213	6,960	7,830	23,900	23,950	0	4,020	6,706	7,576	121	4,213	6,960	7,830	23,950	24,000	0	4,012	6,696	7,566	118	4,213	6,960	7,830
20,400	20,450	0	4,213	6,960	7,830	389	4,213	6,960	7,830	24,000	24,050	0	4,004	6,685	7,555	114	4,213	6,960	7,830	24,050	24,100	0	3,996	6,675	7,545	110	4,213	6,960	7,830
20,450	20,500	0	4,213	6,960	7,830	385	4,213	6,960	7,830	24,100	24,150	0	3,988	6,664	7,534	106	4,213	6,960	7,830	24,150	24,200	0	3,980	6,654	7,524	102	4,213	6,960	7,830
20,500	20,550	0	4,213	6,960	7,830	381	4,213	6,960	7,830	24,200	24,250	0	3,972	6,643	7,513	98	4,213	6,960	7,830	24,250	24,300	0	3,965	6,633	7,503	95	4,213	6,960	7,830
20,550	20,600	0	4,213	6,960	7,830	378	4,213	6,960	7,830	24,300	24,350	0	3,957	6,622	7,492	91	4,213	6,960	7,830	24,350	24,400	0	3,949	6,611	7,481	87	4,213	6,960	7,830
20,600	20,650	0	4,213	6,960	7,830	374	4,213	6,960	7,830	24,400	24,450	0	3,941	6,601	7,471	83	4,213	6,960	7,830	24,450	24,500	0	3,933	6,590	7,460	79	4,213	6,960	7,830
20,650	20,700	0	4,213	6,960	7,830	370	4,213	6,960	7,830	24,500	24,550	0	3,925	6,580	7,450	75	4,213	6,960	7,830	24,550	24,600	0	3,917	6,569	7,439	72	4,213	6,960	7,830
20,700	20,750	0	4,213	6,960	7,830	366	4,213	6,960	7,830	24,600	24,650	0	3,909	6,559	7,429	68	4,213	6,960	7,830	24,650	24,700	0	3,901	6,548	7,418	64	4,213	6,960	7,830
20,750	20,800	0	4,213	6,960	7,830	362	4,213	6,960	7,830	24,700	24,750	0	3,893	6,538	7,408	60	4,213	6,960	7,830	24,750	24,800	0	3,885	6,527	7,397	56	4,213	6,960	7,830
20,800	20,850	0	4,213	6,960	7,830	359	4,213	6,960	7,830	24,800	24,850	0	3,877	6,517	7,387	53	4,213	6,960	7,830	24,850	24,900	0	3,869	6,506	7,376	49	4,213	6,960	7,830
20,850	20,900	0	4,213	6,960	7,830	355	4,213	6,960	7,830	24,900	24,950	0	3,861	6,496	7,366	45	4,213	6,960	7,830	24,950	25,000	0	3,853	6,485	7,355	41	4,213	6,960	7,830
20,900	20,950	0	4,213	6,960	7,830	351	4,213	6,960	7,830	25,000	25,050	0	3,845	6,475	7,345	37	4,213	6,960	7,830	25,050	25,100	0	3,837	6,464	7,334	33	4,213	6,960	7,830
20,950	21,000	0	4,213	6,960	7,830	347	4,213	6,960	7,830	25,100	25,150	0	3,829	6,454	7,324	30	4,213	6,960	7,830	25,150	25,200	0	3,821	6,443	7,313	26	4,213	6,960	7,830
21,000	21,050	0	4,213	6,960	7,830	343	4,213	6,960	7,830	25,200	25,250	0	3,813	6,432	7,302	22	4,213	6,960	7,830	25,250	25,300	0	3,805	6,422	7,292	18	4,213	6,960	7,830
21,050	21,100	0	4,213	6,960	7,830	339	4,213	6,960	7,830	25,300	25,350	0	3,797	6,411	7,281	14	4,213	6,960	7,830	25,350	25,400	0	3,789	6,401	7,271	10	4,213	6,960	7,830
21,100	21,150	0	4,213	6,960	7,830	336	4,213	6,960	7,830	25,400	25,450	0	3,781	6,390	7,260	7	4,213	6,960	7,830	25,450	25,500	0	3,773	6,380	7,250	3	4,213	6,960	7,830
21,150	21,200	0	4,213	6,960	7,830	332	4,213	6,960	7,830	25,500	25,550	0	3,765	6,369	7,239	*	4,213	6,960	7,830	25,550	25,600	0	3,757	6,359	7,229	0	4,213	6,960	7,830
21,200	21,250	0	4,213	6,960	7,830	328	4,213	6,960	7,830	25,600	25,650	0	3,749	6,348	7,218	0	4,213	6,960	7,830	25,650	25,700	0	3,741	6,338	7,208	0	4,213	6,960	7,830
21,250	21,300	0	4,213	6,960	7,830	324	4,213	6,960	7,830	25,700	25,750	0	3,733	6,327	7,197	0	4,213	6,960	7,830	25,750	25,800	0	3,725	6,317	7,187	0	4,213	6,960	7,830
21,300	21,350	0	4,213	6,960	7,830	320	4,213	6,960	7,830	25,800	25,850	0	3,717	6,306	7,176	0	4,213	6,960	7,830	25,850	25,900	0	3,709	6,296	7,166	0	4,213	6,960	7,830
21,350	21,400	0	4,213	6,960	7,830	316	4,213	6,960	7,830	25,900	25,950	0	3,701	6,285	7,155	0	4,213	6,960	7,830	25,950	26,000	0	3,693	6,274	7,144	0	4,213	6,960	7,830
21,400	21,450	0	4,213	6,960	7,830	313	4,213	6,960	7,830	26,000	26,050	0	3,685	6,264	7,134	0	4,213	6,960	7,830	26,050	26,100	0	3,677	6,253	7,123	0	4,213	6,960	7,830
21,450	21,500	0	4,213	6,960	7,830	309	4,213	6,960	7,830	26,100	26,150	0	3,669	6,243	7,113	0	4,213	6,960	7,830	26,150	26,200	0	3,661	6,232	7,102	0	4,213	6,960	7,830
21,500	21,550	0	4,213	6,960	7,830	305	4,213	6,960	7,830	26,200	26,250	0	3,653	6,222	7,092	0	4,213	6,960	7,830	26,250	26,300	0	3,645	6,211	7,081	0	4,213	6,960	7,830
21,550	21,600	0	4,213	6,960	7,830	301	4,213	6,960	7,830	26,300	26,350	0	3,637	6,201	7,071	0	4,213	6,960	7,830	26,350	26,400	0	3,629	6,190	7,060	0	4,213	6,960	7,830
21,600	21,650	0	4,213	6,960	7,830	297	4,213	6,960	7,830	26,400	26,450	0	3,621	6,180	7,050	0	4,213	6,960	7,830	26,450	26,500	0	3,613	6,169	7,039	0	4,213	6,960	7,830
21,650	21,700	0	4,213	6,960	7,830	293	4,213	6,960	7,830	26,500	26,550	0	3,605	6,169	7,039	0	4,213	6,960	7,830	26,550	26,600	0	3,597	6,158	7,028	0	4,213	6,960	7,830
21,700	21,750	0	4,213	6,960	7,830	290	4,213	6,960	7,830	26,600	26,650	0	3,589	6,148	7,018	0	4,213	6,960	7,830	26,650	26,700	0	3,581	6,137	7,007	0	4,213	6,960	7,830
21,750	21,800	0	4,213	6,960	7,830	286	4,213	6,960	7,830	26,700	26,750	0	3,573	6,127	7,007	0	4,213	6,960	7,830	26,750	26,800	0	3,565	6,116	6,996	0	4,213	6,960	7,830
21,800	21,850	0	4,213	6,960	7,830	282	4,213	6,960	7,830	26,800	26,850	0	3,557	6,116	6,996	0	4,213	6,960	7,830	26,850	26,900	0	3,549	6,105	6,985	0	4,213	6,960	7,830
21,850	21,900	0	4,213	6,960	7,830	278	4,213	6,960	7,830	26,900	26,950	0	3,541	6,105	6,985	0	4,213	6,960	7,830	26,950	27,000	0	3,533	6,094	6,974	0	4,213	6,960	7,830
21,900	21,950	0	4,213	6,960	7,830	274	4,213	6,960	7,830	27,000	27,050	0	3,525	6,094	6,974	0	4,213	6,960	7,830	27,050	27,100	0	3,517	6,083	6,963	0	4,213	6,960	7,830
21,950	22,000	0	4,213	6,960	7,830	271	4,213	6,960	7,830	27,100	27,150	0	3,509	6,073	6,953	0	4,213	6,960	7,830	27,150	27,200	0	3,501	6,062	6,942	0	4,213	6,960	7,830
22,000	22,050	0	4,213	6,960	7,830	267	4,213	6,960	7,830																				

근로 소득 세액 공제(EITC)표 - 계속됨

(주의, 세액표가 아닙니다.)

이 작업표에서 찾고 있는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의 납세자 구분이-																	
		미혼, 세대주, 또는 적격 생존 배우자*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부부 공동 신고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0	1	2	3	0	1	2	3										
이상	미만	귀하의 세액공제는-				귀하의 세액공제는-													
26,400	26,450	0	3,621	6,180	7,050	0	4,213	6,960	7,830	30,000	30,050	0	3,046	5,422	6,292	0	4,151	6,879	7,749
26,450	26,500	0	3,613	6,169	7,039	0	4,213	6,960	7,830	30,050	30,100	0	3,038	5,411	6,281	0	4,143	6,868	7,738
26,500	26,550	0	3,605	6,159	7,029	0	4,213	6,960	7,830	30,100	30,150	0	3,030	5,401	6,271	0	4,135	6,858	7,728
26,550	26,600	0	3,597	6,148	7,018	0	4,213	6,960	7,830	30,150	30,200	0	3,022	5,390	6,260	0	4,128	6,847	7,717
26,600	26,650	0	3,589	6,138	7,008	0	4,213	6,960	7,830	30,200	30,250	0	3,014	5,379	6,249	0	4,120	6,837	7,707
26,650	26,700	0	3,581	6,127	6,997	0	4,213	6,960	7,830	30,250	30,300	0	3,006	5,369	6,239	0	4,112	6,826	7,696
26,700	26,750	0	3,573	6,117	6,987	0	4,213	6,960	7,830	30,300	30,350	0	2,998	5,358	6,228	0	4,104	6,816	7,686
26,750	26,800	0	3,565	6,106	6,976	0	4,213	6,960	7,830	30,350	30,400	0	2,990	5,348	6,218	0	4,096	6,805	7,675
26,800	26,850	0	3,557	6,095	6,965	0	4,213	6,960	7,830	30,400	30,450	0	2,982	5,337	6,207	0	4,088	6,795	7,665
26,850	26,900	0	3,549	6,085	6,955	0	4,213	6,960	7,830	30,450	30,500	0	2,974	5,327	6,197	0	4,080	6,784	7,654
26,900	26,950	0	3,541	6,074	6,944	0	4,213	6,960	7,830	30,500	30,550	0	2,966	5,316	6,186	0	4,072	6,774	7,644
26,950	27,000	0	3,533	6,064	6,934	0	4,213	6,960	7,830	30,550	30,600	0	2,958	5,306	6,176	0	4,064	6,763	7,633
27,000	27,050	0	3,525	6,053	6,923	0	4,213	6,960	7,830	30,600	30,650	0	2,950	5,295	6,165	0	4,056	6,753	7,623
27,050	27,100	0	3,517	6,043	6,913	0	4,213	6,960	7,830	30,650	30,700	0	2,942	5,285	6,155	0	4,048	6,742	7,612
27,100	27,150	0	3,509	6,032	6,902	0	4,213	6,960	7,830	30,700	30,750	0	2,934	5,274	6,144	0	4,040	6,731	7,601
27,150	27,200	0	3,501	6,022	6,892	0	4,213	6,960	7,830	30,750	30,800	0	2,926	5,264	6,134	0	4,032	6,721	7,591
27,200	27,250	0	3,493	6,011	6,881	0	4,213	6,960	7,830	30,800	30,850	0	2,918	5,253	6,123	0	4,024	6,710	7,580
27,250	27,300	0	3,485	6,001	6,871	0	4,213	6,960	7,830	30,850	30,900	0	2,910	5,243	6,113	0	4,016	6,700	7,570
27,300	27,350	0	3,477	5,990	6,860	0	4,213	6,960	7,830	30,900	30,950	0	2,902	5,232	6,102	0	4,008	6,689	7,559
27,350	27,400	0	3,469	5,980	6,850	0	4,213	6,960	7,830	30,950	31,000	0	2,894	5,221	6,091	0	4,000	6,679	7,549
27,400	27,450	0	3,461	5,969	6,839	0	4,213	6,960	7,830	31,000	31,050	0	2,886	5,211	6,081	0	3,992	6,668	7,538
27,450	27,500	0	3,453	5,959	6,829	0	4,213	6,960	7,830	31,050	31,100	0	2,878	5,200	6,070	0	3,984	6,658	7,528
27,500	27,550	0	3,445	5,948	6,818	0	4,213	6,960	7,830	31,100	31,150	0	2,870	5,190	6,060	0	3,976	6,647	7,517
27,550	27,600	0	3,437	5,938	6,808	0	4,213	6,960	7,830	31,150	31,200	0	2,862	5,179	6,049	0	3,968	6,637	7,507
27,600	27,650	0	3,429	5,927	6,797	0	4,213	6,960	7,830	31,200	31,250	0	2,854	5,169	6,039	0	3,960	6,626	7,496
27,650	27,700	0	3,421	5,916	6,786	0	4,213	6,960	7,830	31,250	31,300	0	2,846	5,158	6,028	0	3,952	6,616	7,486
27,700	27,750	0	3,413	5,906	6,776	0	4,213	6,960	7,830	31,300	31,350	0	2,838	5,148	6,018	0	3,944	6,605	7,475
27,750	27,800	0	3,405	5,895	6,765	0	4,213	6,960	7,830	31,350	31,400	0	2,830	5,137	6,007	0	3,936	6,595	7,465
27,800	27,850	0	3,397	5,885	6,755	0	4,213	6,960	7,830	31,400	31,450	0	2,822	5,127	5,997	0	3,928	6,584	7,454
27,850	27,900	0	3,389	5,874	6,744	0	4,213	6,960	7,830	31,450	31,500	0	2,814	5,116	5,986	0	3,920	6,574	7,444
27,900	27,950	0	3,381	5,864	6,734	0	4,213	6,960	7,830	31,500	31,550	0	2,806	5,106	5,976	0	3,912	6,563	7,433
27,950	28,000	0	3,373	5,853	6,723	0	4,213	6,960	7,830	31,550	31,600	0	2,798	5,095	5,965	0	3,904	6,552	7,422
28,000	28,050	0	3,365	5,843	6,713	0	4,213	6,960	7,830	31,600	31,650	0	2,790	5,085	5,955	0	3,896	6,542	7,412
28,050	28,100	0	3,357	5,832	6,702	0	4,213	6,960	7,830	31,650	31,700	0	2,782	5,074	5,944	0	3,888	6,531	7,401
28,100	28,150	0	3,349	5,822	6,692	0	4,213	6,960	7,830	31,700	31,750	0	2,774	5,064	5,934	0	3,880	6,521	7,391
28,150	28,200	0	3,341	5,811	6,681	0	4,213	6,960	7,830	31,750	31,800	0	2,766	5,053	5,923	0	3,872	6,510	7,380
28,200	28,250	0	3,333	5,801	6,671	0	4,213	6,960	7,830	31,800	31,850	0	2,758	5,042	5,912	0	3,864	6,500	7,370
28,250	28,300	0	3,325	5,790	6,660	0	4,213	6,960	7,830	31,850	31,900	0	2,750	5,032	5,902	0	3,856	6,489	7,359
28,300	28,350	0	3,317	5,780	6,650	0	4,213	6,960	7,830	31,900	31,950	0	2,742	5,021	5,891	0	3,848	6,479	7,349
28,350	28,400	0	3,309	5,769	6,639	0	4,213	6,960	7,830	31,950	32,000	0	2,734	5,011	5,881	0	3,840	6,468	7,338
28,400	28,450	0	3,301	5,759	6,629	0	4,213	6,960	7,830	32,000	32,050	0	2,726	5,000	5,870	0	3,832	6,458	7,328
28,450	28,500	0	3,293	5,748	6,618	0	4,213	6,960	7,830	32,050	32,100	0	2,718	4,990	5,860	0	3,824	6,447	7,317
28,500	28,550	0	3,285	5,737	6,607	0	4,213	6,960	7,830	32,100	32,150	0	2,710	4,979	5,849	0	3,816	6,437	7,307
28,550	28,600	0	3,277	5,727	6,597	0	4,213	6,960	7,830	32,150	32,200	0	2,702	4,969	5,839	0	3,808	6,426	7,296
28,600	28,650	0	3,269	5,716	6,586	0	4,213	6,960	7,830	32,200	32,250	0	2,694	4,958	5,828	0	3,800	6,416	7,286
28,650	28,700	0	3,261	5,706	6,576	0	4,213	6,960	7,830	32,250	32,300	0	2,686	4,948	5,818	0	3,792	6,405	7,275
28,700	28,750	0	3,253	5,695	6,565	0	4,213	6,960	7,830	32,300	32,350	0	2,678	4,937	5,807	0	3,784	6,395	7,265
28,750	28,800	0	3,245	5,685	6,555	0	4,213	6,960	7,830	32,350	32,400	0	2,670	4,927	5,797	0	3,776	6,384	7,254
28,800	28,850	0	3,237	5,674	6,544	0	4,213	6,960	7,830	32,400	32,450	0	2,662	4,916	5,786	0	3,768	6,373	7,243
28,850	28,900	0	3,229	5,664	6,534	0	4,213	6,960	7,830	32,450	32,500	0	2,654	4,906	5,776	0	3,760	6,363	7,233
28,900	28,950	0	3,221	5,653	6,523	0	4,213	6,960	7,830	32,500	32,550	0	2,646	4,895	5,765	0	3,752	6,352	7,222
28,950	29,000	0	3,213	5,643	6,513	0	4,213	6,960	7,830	32,550	32,600	0	2,638	4,885	5,755	0	3,744	6,342	7,212
29,000	29,050	0	3,205	5,632	6,502	0	4,213	6,960	7,830	32,600	32,650	0	2,630	4,874	5,744	0	3,736	6,331	7,201
29,050	29,100	0	3,197	5,622	6,492	0	4,213	6,960	7,830	32,650	32,700	0	2,622	4,863	5,733	0	3,728	6,321	7,191
29,100	29,150	0	3,189	5,611	6,481	0	4,213	6,960	7,830	32,700	32,750	0	2,614	4,853	5,723	0	3,720	6,310	7,180
29,150	29,200	0	3,181	5,601	6,471	0	4,213	6,960	7,830	32,750	32,800	0	2,606	4,842	5,712	0	3,712	6,300	7,170
29,200	29,250	0	3,174	5,590	6,460	0	4,213	6,960	7,830	32,800	32,850	0	2,598	4,832	5,702	0	3,704	6,289	7,159
29,250	29,300	0	3,166	5,580	6,450	0	4,213	6,960	7,830	32,850	32,900	0	2,590	4,821	5,691	0	3,696	6,279	7,149
29,300	29,350	0	3,158	5,569	6,439	0	4,213	6,960	7,830	32,900	32,950	0	2,582	4,811	5,681	0	3,688	6,268	7,138
29,350	29,400	0	3,150	5,558	6,428	0	4,213	6,960	7,830	32,950	33,000	0	2,574	4,800	5,670	0	3,680	6,258	7,128
29,400	29,450	0	3,142	5,548	6,418	0	4,213	6,960	7,830	33,000	33,050	0	2,566	4,790	5,660	0	3,672	6,247	7,117
29,45																			

근로 소득 세액 공제(EITC)표 - 계속됨

(주의. 세액표가 아닙니다.)

이 작업표에서 찾고 있는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의 납세자 구분기-							
		미혼, 세대주, 또는 적격 생존 배우자*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부부 공동 신고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0	1	2	3	0	1	2	3
이상	미만	귀하의 세액공제는-				귀하의 세액공제는-			
33,600	33,650	0	2,470	4,663	5,533	0	3,576	6,121	6,991
33,650	33,700	0	2,462	4,653	5,523	0	3,568	6,110	6,980
33,700	33,750	0	2,454	4,642	5,512	0	3,560	6,100	6,970
33,750	33,800	0	2,446	4,632	5,502	0	3,552	6,089	6,959
33,800	33,850	0	2,438	4,621	5,491	0	3,544	6,079	6,949
33,850	33,900	0	2,430	4,611	5,481	0	3,536	6,068	6,938
33,900	33,950	0	2,422	4,600	5,470	0	3,528	6,058	6,928
33,950	34,000	0	2,414	4,590	5,460	0	3,520	6,047	6,917
34,000	34,050	0	2,406	4,579	5,449	0	3,512	6,037	6,907
34,050	34,100	0	2,398	4,569	5,439	0	3,504	6,026	6,896
34,100	34,150	0	2,390	4,558	5,428	0	3,496	6,015	6,885
34,150	34,200	0	2,382	4,548	5,418	0	3,488	6,005	6,875
34,200	34,250	0	2,375	4,537	5,407	0	3,480	5,994	6,864
34,250	34,300	0	2,367	4,527	5,397	0	3,472	5,984	6,854
34,300	34,350	0	2,359	4,516	5,386	0	3,464	5,973	6,843
34,350	34,400	0	2,351	4,505	5,375	0	3,456	5,963	6,833
34,400	34,450	0	2,343	4,495	5,365	0	3,448	5,952	6,822
34,450	34,500	0	2,335	4,484	5,354	0	3,440	5,942	6,812
34,500	34,550	0	2,327	4,474	5,344	0	3,432	5,931	6,801
34,550	34,600	0	2,319	4,463	5,333	0	3,424	5,921	6,791
34,600	34,650	0	2,311	4,453	5,323	0	3,416	5,910	6,780
34,650	34,700	0	2,303	4,442	5,312	0	3,408	5,900	6,770
34,700	34,750	0	2,295	4,432	5,302	0	3,400	5,889	6,759
34,750	34,800	0	2,287	4,421	5,291	0	3,392	5,879	6,749
34,800	34,850	0	2,279	4,411	5,281	0	3,384	5,868	6,738
34,850	34,900	0	2,271	4,400	5,270	0	3,376	5,858	6,728
34,900	34,950	0	2,263	4,390	5,260	0	3,368	5,847	6,717
34,950	35,000	0	2,255	4,379	5,249	0	3,360	5,836	6,706
35,000	35,050	0	2,247	4,369	5,239	0	3,352	5,826	6,696
35,050	35,100	0	2,239	4,358	5,228	0	3,344	5,815	6,685
35,100	35,150	0	2,231	4,348	5,218	0	3,336	5,805	6,675
35,150	35,200	0	2,223	4,337	5,207	0	3,328	5,794	6,664
35,200	35,250	0	2,215	4,326	5,196	0	3,320	5,784	6,654
35,250	35,300	0	2,207	4,316	5,186	0	3,312	5,773	6,643
35,300	35,350	0	2,199	4,305	5,175	0	3,304	5,763	6,633
35,350	35,400	0	2,191	4,295	5,165	0	3,296	5,752	6,622
35,400	35,450	0	2,183	4,284	5,154	0	3,288	5,742	6,612
35,450	35,500	0	2,175	4,274	5,144	0	3,280	5,731	6,601
35,500	35,550	0	2,167	4,263	5,133	0	3,272	5,721	6,591
35,550	35,600	0	2,159	4,253	5,123	0	3,264	5,710	6,580
35,600	35,650	0	2,151	4,242	5,112	0	3,256	5,700	6,570
35,650	35,700	0	2,143	4,232	5,102	0	3,248	5,689	6,559
35,700	35,750	0	2,135	4,221	5,091	0	3,240	5,678	6,548
35,750	35,800	0	2,127	4,211	5,081	0	3,232	5,668	6,538
35,800	35,850	0	2,119	4,200	5,070	0	3,224	5,657	6,527
35,850	35,900	0	2,111	4,190	5,060	0	3,216	5,647	6,517
35,900	35,950	0	2,103	4,179	5,049	0	3,208	5,636	6,506
35,950	36,000	0	2,095	4,168	5,038	0	3,200	5,626	6,496
36,000	36,050	0	2,087	4,158	5,028	0	3,192	5,615	6,485
36,050	36,100	0	2,079	4,147	5,017	0	3,184	5,605	6,475
36,100	36,150	0	2,071	4,137	5,007	0	3,176	5,594	6,464
36,150	36,200	0	2,063	4,126	4,996	0	3,168	5,584	6,454
36,200	36,250	0	2,055	4,116	4,986	0	3,160	5,573	6,443
36,250	36,300	0	2,047	4,105	4,975	0	3,152	5,563	6,433
36,300	36,350	0	2,039	4,095	4,965	0	3,144	5,552	6,422
36,350	36,400	0	2,031	4,084	4,954	0	3,136	5,542	6,412
36,400	36,450	0	2,023	4,074	4,944	0	3,128	5,531	6,401
36,450	36,500	0	2,015	4,063	4,933	0	3,120	5,521	6,391
36,500	36,550	0	2,007	4,053	4,923	0	3,112	5,510	6,380
36,550	36,600	0	1,999	4,042	4,912	0	3,104	5,499	6,369
36,600	36,650	0	1,991	4,032	4,902	0	3,096	5,489	6,359
36,650	36,700	0	1,983	4,021	4,891	0	3,088	5,478	6,348
36,700	36,750	0	1,975	4,011	4,881	0	3,080	5,468	6,338
36,750	36,800	0	1,967	4,000	4,870	0	3,072	5,457	6,327
36,800	36,850	0	1,959	3,989	4,859	0	3,064	5,447	6,317
36,850	36,900	0	1,951	3,979	4,849	0	3,056	5,436	6,306
36,900	36,950	0	1,943	3,968	4,838	0	3,048	5,426	6,296
36,950	37,000	0	1,935	3,958	4,828	0	3,040	5,415	6,285
37,000	37,050	0	1,927	3,947	4,817	0	3,032	5,405	6,275
37,050	37,100	0	1,919	3,937	4,807	0	3,024	5,394	6,264
37,100	37,150	0	1,911	3,926	4,796	0	3,016	5,384	6,254
37,150	37,200	0	1,903	3,916	4,786	0	3,008	5,373	6,243
37,200	37,250	0	1,895	3,905	4,775	0	3,000	5,363	6,233
37,250	37,300	0	1,887	3,895	4,765	0	2,992	5,352	6,222
37,300	37,350	0	1,879	3,884	4,754	0	2,984	5,342	6,212
37,350	37,400	0	1,871	3,874	4,744	0	2,976	5,331	6,201
37,400	37,450	0	1,863	3,863	4,733	0	2,968	5,320	6,190
37,450	37,500	0	1,855	3,853	4,723	0	2,960	5,310	6,180
37,500	37,550	0	1,847	3,842	4,712	0	2,952	5,299	6,169
37,550	37,600	0	1,839	3,832	4,702	0	2,944	5,289	6,159
37,600	37,650	0	1,831	3,821	4,691	0	2,936	5,278	6,148
37,650	37,700	0	1,823	3,810	4,680	0	2,928	5,268	6,138
37,700	37,750	0	1,815	3,800	4,670	0	2,920	5,257	6,127
37,750	37,800	0	1,807	3,789	4,659	0	2,912	5,247	6,117
37,800	37,850	0	1,799	3,779	4,649	0	2,904	5,236	6,106
37,850	37,900	0	1,791	3,768	4,638	0	2,896	5,226	6,096
37,900	37,950	0	1,783	3,758	4,628	0	2,888	5,215	6,085
37,950	38,000	0	1,775	3,747	4,617	0	2,880	5,205	6,075
38,000	38,050	0	1,767	3,737	4,607	0	2,872	5,194	6,064
38,050	38,100	0	1,759	3,726	4,596	0	2,864	5,184	6,054
38,100	38,150	0	1,751	3,716	4,586	0	2,856	5,173	6,043
38,150	38,200	0	1,743	3,705	4,575	0	2,848	5,163	6,033
38,200	38,250	0	1,735	3,695	4,565	0	2,840	5,152	6,022
38,250	38,300	0	1,727	3,684	4,554	0	2,832	5,141	6,011
38,300	38,350	0	1,719	3,674	4,544	0	2,824	5,131	6,001
38,350	38,400	0	1,711	3,663	4,533	0	2,816	5,120	5,990
38,400	38,450	0	1,703	3,653	4,523	0	2,808	5,110	5,980
38,450	38,500	0	1,695	3,642	4,512	0	2,800	5,099	5,969
38,500	38,550	0	1,687	3,631	4,501	0	2,792	5,089	5,959
38,550	38,600	0	1,679	3,621	4,491	0	2,784	5,078	5,948
38,600	38,650	0	1,671	3,610	4,480	0	2,776	5,068	5,938
38,650	38,700	0	1,663	3,600	4,470	0	2,768	5,057	5,927
38,700	38,750	0	1,655	3,589	4,459	0	2,760	5,047	5,917
38,750	38,800	0	1,647	3,579	4,449	0	2,752	5,036	5,906
38,800	38,850	0	1,639	3,568	4,438	0	2,744	5,026	5,896
38,850	38,900	0	1,631	3,558	4,428	0	2,736	5,015	5,885
38,900	38,950	0	1,623	3,547	4,417	0	2,728	5,005	5,875
38,950	39,000	0	1,615	3,537	4,407	0	2,720	4,994	5,864
39,000	39,050	0	1,607	3,526	4,396	0	2,712	4,984	5,854
39,050	39,100	0	1,599	3,516	4,386	0	2,704	4,973	5,843
39,100	39,150	0	1,591	3,505	4,375	0	2,696	4,962	5,832
39,150	39,200	0	1,583	3,495	4,365	0	2,688	4,952	5,822
39,200	39,250	0	1,575	3,484	4,354	0	2,680	4,941	5,811
39,250	39,300	0	1,568	3,474	4,344	0	2,672	4,931	5,801
39,300	39,350	0	1,560	3,463	4,333	0	2,664	4,920	5,790
39,350	39,400	0	1,552	3,452	4,322	0	2,656	4,910	5,780
39,400	39,450	0	1,544	3,442	4,312	0	2,648	4,899	5,769
39,450	39,500	0	1,536	3,431	4,301	0	2,640	4,889	5,759
39,500	39,550	0	1,528	3,421	4,291	0	2,632	4,878	5,748
39,550	39,600	0	1,520	3,410	4,280	0	2,624	4,868	5,738
39,600	39,650	0	1,512	3,400	4,270	0	2,616	4,857	5,727
39,650	39,700	0	1,504	3,38					

근로 소득 세액 공제(EITC)표 - 계속됨

(주의, 세액표가 아닙니다.)

이 작업표에서 찾고 있는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의 납세자 구분이-								이 작업표에서 찾고 있는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의 납세자 구분이-							
		미혼, 세대주, 또는 적격 생존 배우자*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부부 공동 신고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미혼, 세대주, 또는 적격 생존 배우자*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부부 공동 신고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이상	미만	귀하의 세액공제는-				귀하의 세액공제는-				이상	미만	귀하의 세액공제는-				귀하의 세액공제는-			
40,800	40,850	0	1,320	3,147	4,017	0	2,426	4,604	5,474	44,400	44,450	0	745	2,389	3,259	0	1,850	3,846	4,716
40,850	40,900	0	1,312	3,137	4,007	0	2,418	4,594	5,464	44,450	44,500	0	737	2,378	3,248	0	1,842	3,836	4,706
40,900	40,950	0	1,304	3,126	3,996	0	2,410	4,583	5,453	44,500	44,550	0	729	2,368	3,238	0	1,834	3,825	4,695
40,950	41,000	0	1,296	3,115	3,985	0	2,402	4,573	5,443	44,550	44,600	0	721	2,357	3,227	0	1,826	3,815	4,685
41,000	41,050	0	1,288	3,105	3,975	0	2,394	4,562	5,432	44,600	44,650	0	713	2,347	3,217	0	1,818	3,804	4,674
41,050	41,100	0	1,280	3,094	3,964	0	2,386	4,552	5,422	44,650	44,700	0	705	2,336	3,206	0	1,810	3,794	4,664
41,100	41,150	0	1,272	3,084	3,954	0	2,378	4,541	5,411	44,700	44,750	0	697	2,326	3,196	0	1,802	3,783	4,653
41,150	41,200	0	1,264	3,073	3,943	0	2,370	4,531	5,401	44,750	44,800	0	689	2,315	3,185	0	1,794	3,773	4,643
41,200	41,250	0	1,256	3,063	3,933	0	2,362	4,520	5,390	44,800	44,850	0	681	2,305	3,175	0	1,786	3,762	4,632
41,250	41,300	0	1,248	3,052	3,922	0	2,354	4,510	5,380	44,850	44,900	0	673	2,294	3,164	0	1,778	3,752	4,622
41,300	41,350	0	1,240	3,042	3,912	0	2,346	4,499	5,369	44,900	44,950	0	665	2,284	3,154	0	1,770	3,741	4,611
41,350	41,400	0	1,232	3,031	3,901	0	2,338	4,489	5,359	44,950	45,000	0	657	2,273	3,143	0	1,762	3,730	4,600
41,400	41,450	0	1,224	3,021	3,891	0	2,330	4,478	5,348	45,000	45,050	0	649	2,263	3,133	0	1,754	3,720	4,590
41,450	41,500	0	1,216	3,010	3,880	0	2,322	4,468	5,338	45,050	45,100	0	641	2,252	3,122	0	1,746	3,709	4,579
41,500	41,550	0	1,208	3,000	3,870	0	2,314	4,457	5,327	45,100	45,150	0	633	2,242	3,112	0	1,738	3,699	4,569
41,550	41,600	0	1,200	2,989	3,859	0	2,306	4,446	5,316	45,150	45,200	0	625	2,231	3,101	0	1,731	3,688	4,558
41,600	41,650	0	1,192	2,979	3,849	0	2,298	4,436	5,306	45,200	45,250	0	617	2,220	3,090	0	1,723	3,678	4,548
41,650	41,700	0	1,184	2,968	3,838	0	2,290	4,425	5,295	45,250	45,300	0	609	2,210	3,080	0	1,715	3,667	4,537
41,700	41,750	0	1,176	2,958	3,828	0	2,282	4,415	5,285	45,300	45,350	0	601	2,199	3,069	0	1,707	3,657	4,527
41,750	41,800	0	1,168	2,947	3,817	0	2,274	4,404	5,274	45,350	45,400	0	593	2,189	3,059	0	1,699	3,646	4,516
41,800	41,850	0	1,160	2,936	3,806	0	2,266	4,394	5,264	45,400	45,450	0	585	2,178	3,048	0	1,691	3,636	4,506
41,850	41,900	0	1,152	2,926	3,796	0	2,258	4,383	5,253	45,450	45,500	0	577	2,168	3,038	0	1,683	3,625	4,495
41,900	41,950	0	1,144	2,915	3,785	0	2,250	4,373	5,243	45,500	45,550	0	569	2,157	3,027	0	1,675	3,615	4,485
41,950	42,000	0	1,136	2,905	3,775	0	2,242	4,362	5,232	45,550	45,600	0	561	2,147	3,017	0	1,667	3,604	4,474
42,000	42,050	0	1,128	2,894	3,764	0	2,234	4,352	5,222	45,600	45,650	0	553	2,136	3,006	0	1,659	3,594	4,464
42,050	42,100	0	1,120	2,884	3,754	0	2,226	4,341	5,211	45,650	45,700	0	545	2,126	2,996	0	1,651	3,583	4,453
42,100	42,150	0	1,112	2,873	3,743	0	2,218	4,331	5,201	45,700	45,750	0	537	2,115	2,985	0	1,643	3,572	4,442
42,150	42,200	0	1,104	2,863	3,733	0	2,210	4,320	5,190	45,750	45,800	0	529	2,105	2,975	0	1,635	3,562	4,432
42,200	42,250	0	1,096	2,852	3,722	0	2,202	4,310	5,180	45,800	45,850	0	521	2,094	2,964	0	1,627	3,551	4,421
42,250	42,300	0	1,088	2,842	3,712	0	2,194	4,299	5,169	45,850	45,900	0	513	2,084	2,954	0	1,619	3,541	4,411
42,300	42,350	0	1,080	2,831	3,701	0	2,186	4,289	5,159	45,900	45,950	0	505	2,073	2,943	0	1,611	3,530	4,400
42,350	42,400	0	1,072	2,821	3,691	0	2,178	4,278	5,148	45,950	46,000	0	497	2,062	2,932	0	1,603	3,520	4,390
42,400	42,450	0	1,064	2,810	3,680	0	2,170	4,267	5,137	46,000	46,050	0	489	2,052	2,922	0	1,595	3,509	4,379
42,450	42,500	0	1,056	2,800	3,670	0	2,162	4,257	5,127	46,050	46,100	0	481	2,041	2,911	0	1,587	3,499	4,369
42,500	42,550	0	1,048	2,789	3,659	0	2,154	4,246	5,116	46,100	46,150	0	473	2,031	2,901	0	1,579	3,488	4,358
42,550	42,600	0	1,040	2,779	3,649	0	2,146	4,236	5,106	46,150	46,200	0	465	2,020	2,890	0	1,571	3,478	4,348
42,600	42,650	0	1,032	2,768	3,638	0	2,138	4,225	5,095	46,200	46,250	0	457	2,010	2,880	0	1,563	3,467	4,337
42,650	42,700	0	1,024	2,757	3,627	0	2,130	4,215	5,085	46,250	46,300	0	449	1,999	2,869	0	1,555	3,457	4,327
42,700	42,750	0	1,016	2,747	3,617	0	2,122	4,204	5,074	46,300	46,350	0	441	1,989	2,859	0	1,547	3,446	4,316
42,750	42,800	0	1,008	2,736	3,606	0	2,114	4,194	5,064	46,350	46,400	0	433	1,978	2,848	0	1,539	3,436	4,306
42,800	42,850	0	1,000	2,726	3,596	0	2,106	4,183	5,053	46,400	46,450	0	425	1,968	2,838	0	1,531	3,425	4,295
42,850	42,900	0	992	2,715	3,585	0	2,098	4,173	5,043	46,450	46,500	0	417	1,957	2,827	0	1,523	3,415	4,285
42,900	42,950	0	984	2,705	3,575	0	2,090	4,162	5,032	46,500	46,550	0	409	1,947	2,817	0	1,515	3,404	4,274
42,950	43,000	0	976	2,694	3,564	0	2,082	4,152	5,022	46,550	46,600	0	401	1,936	2,806	0	1,507	3,393	4,263
43,000	43,050	0	968	2,684	3,554	0	2,074	4,141	5,011	46,600	46,650	0	393	1,926	2,796	0	1,499	3,383	4,253
43,050	43,100	0	960	2,673	3,543	0	2,066	4,131	5,001	46,650	46,700	0	385	1,915	2,785	0	1,491	3,372	4,242
43,100	43,150	0	952	2,663	3,533	0	2,058	4,120	4,990	46,700	46,750	0	377	1,905	2,775	0	1,483	3,362	4,232
43,150	43,200	0	944	2,652	3,522	0	2,050	4,110	4,980	46,750	46,800	0	369	1,894	2,764	0	1,475	3,351	4,221
43,200	43,250	0	936	2,642	3,512	0	2,042	4,099	4,969	46,800	46,850	0	361	1,883	2,753	0	1,467	3,341	4,211
43,250	43,300	0	928	2,631	3,501	0	2,034	4,088	4,958	46,850	46,900	0	353	1,873	2,743	0	1,459	3,330	4,200
43,300	43,350	0	920	2,621	3,491	0	2,026	4,078	4,948	46,900	46,950	0	345	1,862	2,732	0	1,451	3,320	4,190
43,350	43,400	0	912	2,610	3,480	0	2,018	4,067	4,937	46,950	47,000	0	337	1,852	2,722	0	1,443	3,309	4,179
43,400	43,450	0	904	2,600	3,470	0	2,010	4,057	4,927	47,000	47,050	0	329	1,841	2,711	0	1,435	3,299	4,169
43,450	43,500	0	896	2,589	3,459	0	2,002	4,046	4,916	47,050	47,100	0	321	1,831	2,701	0	1,427	3,288	4,158
43,500	43,550	0	888	2,578	3,448	0	1,994	4,036	4,906	47,100	47,150	0	313	1,820	2,690	0	1,419	3,278	4,148
43,550	43,600	0	880	2,568	3,438	0	1,986	4,025	4,895	47,150	47,200	0	305	1,810	2,680	0	1,411	3,267	4,137
43,600	43,650	0	872	2,557	3,427	0	1,978	4,015	4,885	47,200	47,250	0	297	1,799	2,669	0	1,403	3,257	4,127
43,650	43,700	0	864	2,547	3,417	0	1,970	4,004	4,874	47,250	47,300	0	289	1,789	2,659	0	1,395	3,246	4,116
43,700	43,750	0	856	2,536	3,406	0	1,962	3,994	4,864	47,300	47,350	0	281	1,778	2,648	0	1,387	3,236	4,106
43,750	43,800	0	848	2,526	3,396	0	1,954	3,983	4,853	47,350	47,400	0	273	1,768	2,638	0	1,379	3,225	4,095
43,800	43,850	0	840	2,515	3,385	0	1,946	3,973	4,843	47,400	47,450	0	265	1,757	2,627	0	1,371	3,214	4,084
43,850	43,900	0	832	2,505</															

근로 소득 세액 공제(EITC) 표 - 계속됨

(주의, 세액표가 아닙니다.)

이 작업표에서 찾고 있는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의 납세자 구분-								이 작업표에서 찾고 있는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의 납세자 구분-									
	미혼, 세대주, 또는 적격 생존 배우자*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부부 공동 신고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미혼, 세대주, 또는 적격 생존 배우자*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부부 공동 신고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이상	미만	귀하의 세액공제는-				귀하의 세액공제는-				이상	미만	귀하의 세액공제는-				귀하의 세액공제는-			
48,000	48,050	0	169	1,631	2,501	0	1,275	3,088	3,958	51,200	51,250	0	0	957	1,827	0	764	2,414	3,284
48,050	48,100	0	161	1,620	2,490	0	1,267	3,078	3,948	51,250	51,300	0	0	946	1,816	0	756	2,404	3,274
48,100	48,150	0	153	1,610	2,480	0	1,259	3,067	3,937	51,300	51,350	0	0	936	1,806	0	748	2,393	3,263
48,150	48,200	0	145	1,599	2,469	0	1,251	3,057	3,927	51,350	51,400	0	0	925	1,795	0	740	2,383	3,253
48,200	48,250	0	137	1,589	2,459	0	1,243	3,046	3,916	51,400	51,450	0	0	915	1,785	0	732	2,372	3,242
48,250	48,300	0	129	1,578	2,448	0	1,235	3,035	3,905	51,450	51,500	0	0	904	1,774	0	724	2,362	3,232
48,300	48,350	0	121	1,568	2,438	0	1,227	3,025	3,895	51,500	51,550	0	0	894	1,764	0	716	2,351	3,221
48,350	48,400	0	113	1,557	2,427	0	1,219	3,014	3,884	51,550	51,600	0	0	883	1,753	0	708	2,340	3,210
48,400	48,450	0	105	1,547	2,417	0	1,211	3,004	3,874	51,600	51,650	0	0	873	1,743	0	700	2,330	3,200
48,450	48,500	0	97	1,536	2,406	0	1,203	2,993	3,863	51,650	51,700	0	0	862	1,732	0	692	2,319	3,189
48,500	48,550	0	89	1,525	2,395	0	1,195	2,983	3,853	51,700	51,750	0	0	852	1,722	0	684	2,309	3,179
48,550	48,600	0	81	1,515	2,385	0	1,187	2,972	3,842	51,750	51,800	0	0	841	1,711	0	676	2,298	3,168
48,600	48,650	0	73	1,504	2,374	0	1,179	2,962	3,832	51,800	51,850	0	0	830	1,700	0	668	2,288	3,158
48,650	48,700	0	65	1,494	2,364	0	1,171	2,951	3,821	51,850	51,900	0	0	820	1,690	0	660	2,277	3,147
48,700	48,750	0	57	1,483	2,353	0	1,163	2,941	3,811	51,900	51,950	0	0	809	1,679	0	652	2,267	3,137
48,750	48,800	0	49	1,473	2,343	0	1,155	2,930	3,800	51,950	52,000	0	0	799	1,669	0	644	2,256	3,126
48,800	48,850	0	41	1,462	2,332	0	1,147	2,920	3,790	52,000	52,050	0	0	788	1,658	0	636	2,246	3,116
48,850	48,900	0	33	1,452	2,322	0	1,139	2,909	3,779	52,050	52,100	0	0	778	1,648	0	628	2,235	3,105
48,900	48,950	0	25	1,441	2,311	0	1,131	2,899	3,769	52,100	52,150	0	0	767	1,637	0	620	2,225	3,095
48,950	49,000	0	17	1,431	2,301	0	1,123	2,888	3,758	52,150	52,200	0	0	757	1,627	0	612	2,214	3,084
49,000	49,050	0	9	1,420	2,290	0	1,115	2,878	3,748	52,200	52,250	0	0	746	1,616	0	604	2,204	3,074
49,050	49,100	0	*	1,410	2,280	0	1,107	2,867	3,737	52,250	52,300	0	0	736	1,606	0	596	2,193	3,063
49,100	49,150	0	0	1,399	2,269	0	1,099	2,856	3,726	52,300	52,350	0	0	725	1,595	0	588	2,183	3,053
49,150	49,200	0	0	1,389	2,259	0	1,091	2,846	3,716	52,350	52,400	0	0	715	1,585	0	580	2,172	3,042
49,200	49,250	0	0	1,378	2,248	0	1,083	2,835	3,705	52,400	52,450	0	0	704	1,574	0	572	2,161	3,031
49,250	49,300	0	0	1,368	2,238	0	1,075	2,825	3,695	52,450	52,500	0	0	694	1,564	0	564	2,151	3,021
49,300	49,350	0	0	1,357	2,227	0	1,067	2,814	3,684	52,500	52,550	0	0	683	1,553	0	556	2,140	3,010
49,350	49,400	0	0	1,346	2,216	0	1,059	2,804	3,674	52,550	52,600	0	0	673	1,543	0	548	2,130	3,000
49,400	49,450	0	0	1,336	2,206	0	1,051	2,793	3,663	52,600	52,650	0	0	662	1,532	0	540	2,119	2,989
49,450	49,500	0	0	1,325	2,195	0	1,043	2,783	3,653	52,650	52,700	0	0	651	1,521	0	532	2,109	2,979
49,500	49,550	0	0	1,315	2,185	0	1,035	2,772	3,642	52,700	52,750	0	0	641	1,511	0	524	2,098	2,968
49,550	49,600	0	0	1,304	2,174	0	1,027	2,762	3,632	52,750	52,800	0	0	630	1,500	0	516	2,088	2,958
49,600	49,650	0	0	1,294	2,164	0	1,019	2,751	3,621	52,800	52,850	0	0	620	1,490	0	508	2,077	2,947
49,650	49,700	0	0	1,283	2,153	0	1,011	2,741	3,611	52,850	52,900	0	0	609	1,479	0	500	2,067	2,937
49,700	49,750	0	0	1,273	2,143	0	1,003	2,730	3,600	52,900	52,950	0	0	599	1,469	0	492	2,056	2,926
49,750	49,800	0	0	1,262	2,132	0	995	2,720	3,590	52,950	53,000	0	0	588	1,458	0	484	2,046	2,916
49,800	49,850	0	0	1,252	2,122	0	987	2,709	3,579	53,000	53,050	0	0	578	1,448	0	476	2,035	2,905
49,850	49,900	0	0	1,241	2,111	0	979	2,699	3,569	53,050	53,100	0	0	567	1,437	0	468	2,025	2,895
49,900	49,950	0	0	1,231	2,101	0	971	2,688	3,558	53,100	53,150	0	0	557	1,427	0	460	2,014	2,884
49,950	50,000	0	0	1,220	2,090	0	963	2,677	3,547	53,150	53,200	0	0	546	1,416	0	452	2,004	2,874
50,000	50,050	0	0	1,210	2,080	0	955	2,667	3,537	53,200	53,250	0	0	536	1,406	0	444	1,993	2,863
50,050	50,100	0	0	1,199	2,069	0	947	2,656	3,526	53,250	53,300	0	0	525	1,395	0	436	1,982	2,852
50,100	50,150	0	0	1,189	2,059	0	939	2,646	3,516	53,300	53,350	0	0	515	1,385	0	428	1,972	2,842
50,150	50,200	0	0	1,178	2,048	0	932	2,635	3,505	53,350	53,400	0	0	504	1,374	0	420	1,961	2,831
50,200	50,250	0	0	1,167	2,037	0	924	2,625	3,495	53,400	53,450	0	0	494	1,364	0	412	1,951	2,821
50,250	50,300	0	0	1,157	2,027	0	916	2,614	3,484	53,450	53,500	0	0	483	1,353	0	404	1,940	2,810
50,300	50,350	0	0	1,146	2,016	0	908	2,604	3,474	53,500	53,550	0	0	472	1,342	0	396	1,930	2,800
50,350	50,400	0	0	1,136	2,006	0	900	2,593	3,463	53,550	53,600	0	0	462	1,332	0	388	1,919	2,789
50,400	50,450	0	0	1,125	1,995	0	892	2,583	3,453	53,600	53,650	0	0	451	1,321	0	380	1,909	2,779
50,450	50,500	0	0	1,115	1,985	0	884	2,572	3,442	53,650	53,700	0	0	441	1,311	0	372	1,898	2,768
50,500	50,550	0	0	1,104	1,974	0	876	2,562	3,432	53,700	53,750	0	0	430	1,300	0	364	1,888	2,758
50,550	50,600	0	0	1,094	1,964	0	868	2,551	3,421	53,750	53,800	0	0	420	1,290	0	356	1,877	2,747
50,600	50,650	0	0	1,083	1,953	0	860	2,541	3,411	53,800	53,850	0	0	409	1,279	0	348	1,867	2,737
50,650	50,700	0	0	1,073	1,943	0	852	2,530	3,400	53,850	53,900	0	0	399	1,269	0	340	1,856	2,726
50,700	50,750	0	0	1,062	1,932	0	844	2,519	3,389	53,900	53,950	0	0	388	1,258	0	332	1,846	2,716
50,750	50,800	0	0	1,052	1,922	0	836	2,509	3,379	53,950	54,000	0	0	378	1,248	0	324	1,835	2,705
50,800	50,850	0	0	1,041	1,911	0	828	2,498	3,368	54,000	54,050	0	0	367	1,237	0	316	1,825	2,695
50,850	50,900	0	0	1,031	1,901	0	820	2,488	3,358	54,050	54,100	0	0	357	1,227	0	308	1,814	2,684
50,900	50,950	0	0	1,020	1,890	0	812	2,477	3,347	54,100	54,150	0	0	346	1,216	0	300	1,803	2,673
50,950	51,000	0	0	1,009	1,879	0	804	2,467	3,337	54,150	54,200	0	0	336	1,206	0	292	1,793	2,663
51,000	51,050	0	0	999	1,869	0	796	2,456	3,326	54,200	54,250	0	0	325	1,195	0	284	1,782	2,652
51,050	51,100	0	0	988	1,858	0	788	2,446	3,316	54,250	54,300	0	0	315	1,185	0	276	1,772	2,642
51,100	51,150	0	0	978	1,848	0	780	2,435	3,305	54,300	54,350	0	0	304	1,174	0	268	1,761	2,631
51,150	51,200	0	0	967	1,837	0	772	2,425	3,295	54,350	54,400	0	0	293	1,163	0	260	1,751	2,621

* 귀하의 납세자 구분이 부부 개별 신고이며 EIC에 적격할 경우 이열을 사용하십시오.

* 이 작업표에서 찾는 금액이 \$49,05

근로 소득 세액 공제(EITC)표 - 계속됨

(주의, 세액표가 아닙니다.)

이 작업표에서 찾고 있는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의 납세자 구분기-								이 작업표에서 찾고 있는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의 납세자 구분기-							
		미혼, 세대주, 또는 적격 생존 배우자★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부부 공동 신고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미혼, 세대주, 또는 적격 생존 배우자★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부부 공동 신고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3
이상	미만	귀하의 세액공제는-				귀하의 세액공제는-				이상	미만	귀하의 세액공제는-				귀하의 세액공제는-			
60,000	60,050	0	0	0	0	0	0	561	1,431	63,200	63,250	0	0	0	0	0	0	0	757
60,050	60,100	0	0	0	0	0	0	550	1,420	63,250	63,300	0	0	0	0	0	0	0	746
60,100	60,150	0	0	0	0	0	0	540	1,410	63,300	63,350	0	0	0	0	0	0	0	736
60,150	60,200	0	0	0	0	0	0	529	1,399	63,350	63,400	0	0	0	0	0	0	0	725
60,200	60,250	0	0	0	0	0	0	519	1,389	63,400	63,450	0	0	0	0	0	0	0	715
60,250	60,300	0	0	0	0	0	0	508	1,378	63,450	63,500	0	0	0	0	0	0	0	704
60,300	60,350	0	0	0	0	0	0	498	1,368	63,500	63,550	0	0	0	0	0	0	0	694
60,350	60,400	0	0	0	0	0	0	487	1,357	63,550	63,600	0	0	0	0	0	0	0	683
60,400	60,450	0	0	0	0	0	0	477	1,347	63,600	63,650	0	0	0	0	0	0	0	673
60,450	60,500	0	0	0	0	0	0	466	1,336	63,650	63,700	0	0	0	0	0	0	0	662
60,500	60,550	0	0	0	0	0	0	456	1,326	63,700	63,750	0	0	0	0	0	0	0	652
60,550	60,600	0	0	0	0	0	0	445	1,315	63,750	63,800	0	0	0	0	0	0	0	641
60,600	60,650	0	0	0	0	0	0	435	1,305	63,800	63,850	0	0	0	0	0	0	0	631
60,650	60,700	0	0	0	0	0	0	424	1,294	63,850	63,900	0	0	0	0	0	0	0	620
60,700	60,750	0	0	0	0	0	0	413	1,283	63,900	63,950	0	0	0	0	0	0	0	610
60,750	60,800	0	0	0	0	0	0	403	1,273	63,950	64,000	0	0	0	0	0	0	0	599
60,800	60,850	0	0	0	0	0	0	392	1,262	64,000	64,050	0	0	0	0	0	0	0	589
60,850	60,900	0	0	0	0	0	0	382	1,252	64,050	64,100	0	0	0	0	0	0	0	578
60,900	60,950	0	0	0	0	0	0	371	1,241	64,100	64,150	0	0	0	0	0	0	0	567
60,950	61,000	0	0	0	0	0	0	361	1,231	64,150	64,200	0	0	0	0	0	0	0	557
61,000	61,050	0	0	0	0	0	0	350	1,220	64,200	64,250	0	0	0	0	0	0	0	546
61,050	61,100	0	0	0	0	0	0	340	1,210	64,250	64,300	0	0	0	0	0	0	0	536
61,100	61,150	0	0	0	0	0	0	329	1,199	64,300	64,350	0	0	0	0	0	0	0	525
61,150	61,200	0	0	0	0	0	0	319	1,189	64,350	64,400	0	0	0	0	0	0	0	515
61,200	61,250	0	0	0	0	0	0	308	1,178	64,400	64,450	0	0	0	0	0	0	0	504
61,250	61,300	0	0	0	0	0	0	298	1,168	64,450	64,500	0	0	0	0	0	0	0	494
61,300	61,350	0	0	0	0	0	0	287	1,157	64,500	64,550	0	0	0	0	0	0	0	483
61,350	61,400	0	0	0	0	0	0	277	1,147	64,550	64,600	0	0	0	0	0	0	0	473
61,400	61,450	0	0	0	0	0	0	266	1,136	64,600	64,650	0	0	0	0	0	0	0	462
61,450	61,500	0	0	0	0	0	0	256	1,126	64,650	64,700	0	0	0	0	0	0	0	452
61,500	61,550	0	0	0	0	0	0	245	1,115	64,700	64,750	0	0	0	0	0	0	0	441
61,550	61,600	0	0	0	0	0	0	234	1,104	64,750	64,800	0	0	0	0	0	0	0	431
61,600	61,650	0	0	0	0	0	0	224	1,094	64,800	64,850	0	0	0	0	0	0	0	420
61,650	61,700	0	0	0	0	0	0	213	1,083	64,850	64,900	0	0	0	0	0	0	0	410
61,700	61,750	0	0	0	0	0	0	203	1,073	64,900	64,950	0	0	0	0	0	0	0	399
61,750	61,800	0	0	0	0	0	0	192	1,062	64,950	65,000	0	0	0	0	0	0	0	388
61,800	61,850	0	0	0	0	0	0	182	1,052	65,000	65,050	0	0	0	0	0	0	0	378
61,850	61,900	0	0	0	0	0	0	171	1,041	65,050	65,100	0	0	0	0	0	0	0	367
61,900	61,950	0	0	0	0	0	0	161	1,031	65,100	65,150	0	0	0	0	0	0	0	357
61,950	62,000	0	0	0	0	0	0	150	1,020	65,150	65,200	0	0	0	0	0	0	0	346
62,000	62,050	0	0	0	0	0	0	140	1,010	65,200	65,250	0	0	0	0	0	0	0	336
62,050	62,100	0	0	0	0	0	0	129	999	65,250	65,300	0	0	0	0	0	0	0	325
62,100	62,150	0	0	0	0	0	0	119	989	65,300	65,350	0	0	0	0	0	0	0	315
62,150	62,200	0	0	0	0	0	0	108	978	65,350	65,400	0	0	0	0	0	0	0	304
62,200	62,250	0	0	0	0	0	0	98	968	65,400	65,450	0	0	0	0	0	0	0	294
62,250	62,300	0	0	0	0	0	0	87	957	65,450	65,500	0	0	0	0	0	0	0	283
62,300	62,350	0	0	0	0	0	0	77	947	65,500	65,550	0	0	0	0	0	0	0	273
62,350	62,400	0	0	0	0	0	0	66	936	65,550	65,600	0	0	0	0	0	0	0	262
62,400	62,450	0	0	0	0	0	0	55	925	65,600	65,650	0	0	0	0	0	0	0	252
62,450	62,500	0	0	0	0	0	0	45	915	65,650	65,700	0	0	0	0	0	0	0	241
62,500	62,550	0	0	0	0	0	0	34	904	65,700	65,750	0	0	0	0	0	0	0	230
62,550	62,600	0	0	0	0	0	0	24	894	65,750	65,800	0	0	0	0	0	0	0	220
62,600	62,650	0	0	0	0	0	0	13	883	65,800	65,850	0	0	0	0	0	0	0	209
62,650	62,700	0	0	0	0	0	0	*	873	65,850	65,900	0	0	0	0	0	0	0	199
62,700	62,750	0	0	0	0	0	0	0	862	65,900	65,950	0	0	0	0	0	0	0	188
62,750	62,800	0	0	0	0	0	0	0	852	65,950	66,000	0	0	0	0	0	0	0	178
62,800	62,850	0	0	0	0	0	0	0	841	66,000	66,050	0	0	0	0	0	0	0	167
62,850	62,900	0	0	0	0	0	0	0	831	66,050	66,100	0	0	0	0	0	0	0	157
62,900	62,950	0	0	0	0	0	0	0	820	66,100	66,150	0	0	0	0	0	0	0	146
62,950	63,000	0	0	0	0	0	0	0	810	66,150	66,200	0	0	0	0	0	0	0	136
63,000	63,050	0	0	0	0	0	0	0	799	66,200	66,250	0	0	0	0	0	0	0	125
63,050	63,100	0	0	0	0	0	0	0	789	66,250	66,300	0	0	0	0	0	0	0	115
63,100	63,150	0	0	0	0	0	0	0	778	66,300	66,350	0	0	0	0	0	0	0	104
63,150	63,200	0	0	0	0	0	0	0	768	66,350	66,400	0	0	0	0	0	0	0	94

★ 귀하의 납세자 구분기 부부 개별 신고이며 EIC에 적격할 경우 이열을 사용하십시오.

* 이 작업표에서 찾는 금액이 \$62,650 이상 \$62,688 미만이며 귀하에게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두명이 있는 경우 귀하의 세액공제는 \$4입니다.

이 작업표에서 찾는 금액이 \$62,688 이상이며 귀하에게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두명이 있는 경우,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속됨)

근로 소득 세액 공제(EITC)표 - 계속됨

(주의. 세액표가 아닙니다.)

이 작업표에서 찾고 있는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의 납세자 구분이-							
		미혼, 세대주, 또는 적격 생존 배우자★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부부 공동 신고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0	1	2	3	0	1	2	3
이상	미만	귀하의 세액공제는-				귀하의 세액공제는-			
66,400	66,450	0	0	0	0	0	0	0	83
66,450	66,500	0	0	0	0	0	0	0	73
66,500	66,550	0	0	0	0	0	0	0	62
66,550	66,600	0	0	0	0	0	0	0	51
66,600	66,650	0	0	0	0	0	0	0	41
66,650	66,700	0	0	0	0	0	0	0	30
66,700	66,750	0	0	0	0	0	0	0	20
66,750	66,800	0	0	0	0	0	0	0	9

이 작업표에서 찾고 있는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의 납세자 구분이-							
		미혼, 세대주, 또는 적격 생존 배우자★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부부 공동 신고이며 귀하의 적격 자녀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0	1	2	3	0	1	2	3
이상	미만	귀하의 세액공제는-				귀하의 세액공제는-			
66,800	66,850	0	0	0	0	0	0	0	**

★ 귀하의 납세자 구분이 부부 개별 신고이며 EIC에 적격할 경우 이열을 사용하십시오.

** 이 작업표에서 찾는 금액이 \$66,800 이상 \$66,819 미만이며 귀하에게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세명이 있는 경우 귀하의 세액공제는 \$2입니다. 이 작업표에서 찾는 금액이 \$66,819 이상이며 귀하에게 유효한 SSN을 보유한 적격 자녀가 세명이 있는 경우,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

EIC 불허 [17](#)
 EIC를 본인이 직접 산정 [16](#), [17](#)
 EITC 도우미 [3](#)

S

SSN [4](#), [10](#), [18](#)

ㄱ

간행물 (세금 관련 도움말 [참고](#))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ITIN) [4](#)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ITIN)를 가지고 있을 때 [10](#)
 거주지 테스트 (적격 자녀 [참고](#))
 공동 신고서 (적격 자녀 [참고](#))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혼자 [5](#)
 공동 재산 [4](#)
 관계 테스트 (적격 자녀 [참고](#))
 군대 [8](#), [10](#), [16](#)
 미국 외 지역 [10](#)
 비과세급여 [8](#)
 전투 수당 [8](#)
 근로 소득 [7](#)
 근로 소득이 아닌 소득 [8](#)
 근로자 상해보험 혜택 [8](#)
 근로장려금 [8](#)
 급여, 임금, 팁 [7](#), [16](#)
 기혼 자녀 [10](#)

L

납세자 구분:
 부부 개별 신고 [5](#)
 세대주 [5](#)
 납세자 식별 번호: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ITIN) [4](#)
 사회 보장 번호 (SSN) [4](#)
 입양 납세자 식별 번호 (ATIN) [10](#), [11](#)
 납세자의 사망 [14](#)
 네바다주 동거자 [8](#)
 노숙자 [10](#), [16](#)

ㄷ

동거자 [8](#)
 등록된 동거자 [8](#)

ㅁ

목사 [7](#), [16](#)
 미국 [10](#)

ㅂ

배당금 소득 [8](#)
 배우자의 사망 [14](#)
 법정 직원 [7](#), [16](#), [17](#)
 별거 중인 부모, 특별 규칙 [10](#)

보존유보계획 지급금 [8](#)

보훈 혜택 [8](#)
 복지 혜택 [8](#)
 부모, 이혼 또는 별거 [10](#), [12](#), [13](#)
 부부 공동 재산 [8](#)
 부식기본수당 (BAS) [8](#)
 비거주 외국인 [5](#), [19](#)

ㅅ

사기 [18](#), [19](#)
 사회 보장 번호 (SSN) [5](#)
 사회 보장 혜택 [8](#)
 상세한 예시 [19](#)
 성직자 [16](#)
 세금 관련 도움말 [19](#)
 세대주 [4](#), [8](#), [11](#)
 수감자 [8](#)
 순이익, 자영업 [7](#)
 스케줄:
 C [17](#)
 C-EZ [17](#)
 EIC [8](#), [10](#), [16](#), [17](#)
 SE [16](#), [17](#)
 실업 수당 [8](#)

ㅇ

알림 [3](#)
 양식:
 1040 [2](#), [4](#), [5](#)
 1040X [4](#)
 2555 [5](#)
 2555-EZ [5](#)
 4029 [7](#), [8](#)
 4361 [7](#), [8](#)
 4797 [2](#)
 8814 [2](#)
 8862 [18](#)
 연금 [8](#)
 연령 테스트 (적격 자녀 [참고](#))
 영구적이고 완전한 장애 [9](#)
 예시, 상세한 [19](#)
 온라인 도움말:
 EITC 도우미 [3](#)
 워싱턴주 동거자 [8](#)
 위자료 [8](#)
 위탁 자녀 [9](#), [13](#), [15](#)
 위탁 지급금 [8](#)
 위험 지역 특별 수당 [16](#)
 유괴된 자녀 [10](#)
 이자 [8](#)
 이혼한 부모, 특별 규칙 [13](#)
 임금, 급여, 팁 [7](#), [16](#)
 입양 납세자 식별 번호 (ATIN) [10](#), [11](#)
 입양 자녀 [9](#)

ㅈ

자녀:
 기혼 자녀 [10](#)
 위탁 자녀 [9](#), [13](#), [15](#)
 유괴된 자녀 [10](#)
 입양 자녀 [9](#)
 출생 또는 사망 [10](#)
 자녀 양육비 [8](#)
 자녀의 사망 [10](#)
 자녀의 출생 [10](#)
 자영업 세금 [17](#)
 자영업 소득 [16](#)
 자영업자 [7](#), [16](#), [17](#)
 작업표 1 [6](#)
 작업표 2 [7](#)
 장애 [9](#)
 장애 급여 [8](#)
 적격 자녀 [2](#), [8](#)
 거주지 테스트 [10](#)
 공동 신고서 테스트 [9](#)
 관계 테스트 [9](#)
 미국 [10](#)
 연령 테스트 [9](#)
 영구적이고 완전한 장애 [9](#)
 집 [10](#)
 주택기본수당 (BAH) [8](#)
 지원 (세금 관련 도움말 [참고](#))
 집:
 군대 [16](#)
 노숙자 보호소 [16](#)
 미국 [16](#)

ㅊ

철도퇴직 혜택 [8](#)

ㅋ

캘리포니아주 동거자 [8](#)

ㅌ

타이브레이커 규칙 [11](#)
 투자 소득 [5](#)
 팁, 임금, 급여 [7](#), [16](#)

ㅍ

파업 혜택 [7](#)
 파트너, 동거 [8](#)
 피동 활동 [6](#)

ㅎ

학교 [9](#)
 학생 [9](#)
 현역 복무 연장 [10](#), [16](#)